

발 간 등 록 번 호

11-1613000-000384-10

2020 도시업무편람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목 차

2020 도시 업무 편람

I. 일반현황	1
1. 현원 · 정원	3
2. 업무	3
3. 도시정책관 연혁	5
4. 역대 간부 및 직원현황	9
5. 주요 예산	12
6. 도시통계	13
7. 위원회 현황	17
8. 관련 협회 및 단체	24
9. 국제협력 업무	26
II. 소관법률	43
1. 법령현황	45
2. 법령 체계도	46
3. 법령의 주요내용	47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3-2.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60
3-3. 도시개발법	62
3-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65
3-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66
3-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68
3-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69
3-8. 조경진흥법	70

Ⅲ. 도시계획 분야 | 73

1. 광역도시계획	75
2. 도시·군기본계획	78
3. 도시·군관리계획	81
4. 용도지역·지구·구역	84
5. 지구단위계획	96
6. 도시·군계획시설	104
7.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108
8. 개발행위허가	112

Ⅳ. 주요 업무내용 | 115

● 도시정책 분야 11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마련	119
2. 저성장시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정책 마련	120
3.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122
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123
5. 성장관리방안	125
6.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130
7. 토지적성평가	134
8. 스마트시티 국제협력	139

● 도시경제 분야 149

1.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	151
2. 스마트도시 법령 및 제도개선	156
3.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및 고도화	159
4.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	165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분야	169
1.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개요	171
2. 세종 국가시범도시 추진현황	174
3. 부산 국가시범도시 추진현황	177
4. 국가시범도시 민·관 SPC 추진현황	180
● 도시활력지원 분야	183
1. 수소 시범도시 조성	185
2. 도시개발법령 운용 및 사업	196
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01
4. 새뜰마을사업	210
5. 기반시설부담구역제 운영	219
6.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223
7.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228
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238
9.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246
● 녹색도시 분야	251
1.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그간의 제도개선	253
2. 개발제한구역 주요 정책	260
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가능한 시설물	266
4.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68
5.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	269
6.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70
7.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272
8. 도시공원·녹지 종류 및 현황	273
9. 도시공원·녹지 제도 및 정책	276

V.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 	281
1. 국토공간 계획체계	283
2. 개별법상의 토지이용계획	284
3.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행위제한	286
 VI. 기타 참고자료 	 291
1. 기타 참고자료	293

2020 도시업무편람

I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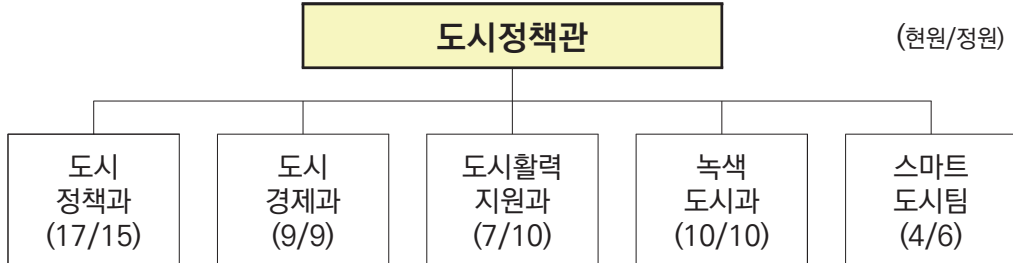
일반현황



1. 현원·정원	3
2. 업무	3
3. 도시정책관 연혁	5
4. 역대 간부 및 직원현황	9
5. 주요 예산	12
6. 도시통계	13
7. 위원회 현황	17
8. 관련 협회 및 단체	24
9. 국제협력 업무	26

1. 현원 · 정원

□ 조직표 : 4과 1팀(중도위), 정원 50명(현원 47명)



2. 업무

가. 도시정책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개정 및 운영
- 고령화 및 기후변화 등 미래 도시정책의 연구 및 제도개선
- 도시계획제도의 운영(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 도시·군계획시설의 제도운영 및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소
- 지구단위계획제도, 토지적성평가, 개발행위허가제도,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 용도지역·지구·구역 제도 운영
-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 도시계획분야 국제협력(스마트시티 해외사업 지원 등 포함)
- 도시정책관실 인사·예산·조직관리

나. 도시경제과

-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지자체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 스마트도시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연구·발전
-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 및 지원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 관련 연구·개발
- 스마트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
- 스마트도시 전문인력 양성
-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지원

다. 도시활력지원과

- 수소 시범도시 조성
- 도시개발법령 및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정책의 입안 및 연구·발전
- 국가 지정 도시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 지정 도시개발사업 협의
- 전국 도시개발사업 통계조사 및 분석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운영 및 관리
- 주거 취약지역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의 운영 및 관리
- 도시 낙후지역에 대한 민관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개정 및 운영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및 토지이용규제평가단 운영

- 지역·지구등의 지정·운영실적 평가 및 행위제한내용 조사·평가
-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운영 및 관리
- 도시내 유희부지 및 공동구, 도시방재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토지이용규제 정보화사업 운영 및 관리

라. 녹색도시과

- 개발제한구역 법령의 개정
-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연구 및 개발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토지매수제도·실태조사 등 법령의 운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운영
- 조경진흥법령 개정 운영
- 개발제한구역 정보화 사업의 운영 및 관리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 도시정책관 연혁

- 1948. 11. : 내무부 건설국 산하 도시계획과로 발족
 - 도시계획과, 건축과, 수리과, 도로과, 항만과 등
- 1961. 7. : 경제기획원 산하 국토건설청을 두어 업무 관할
- 1962. 6. 18 : 국토건설청 해체되고 건설부 국토보전국 도시과
 - 도시과, 도로과, 항만과, 주택건설과
- 1966. 11. 8. : 국토보전국에서 특정지역국을 신설하여 업무 관할
 - 도시계획과, 주택과, 상하수도과, 입지과, 단지조성과
- 1968. 7. 24 : 특정지역국 폐지하고 주택도시국 신설
 - 도시계획과, 주택과, 상하수도과, 단지조성과

- 1970. 3. 25. : 주택도시국 내에 건축과 신설
- 1973. 3. 14 : 주택도시국 내에 기술지원과 신설하고 단지과를 도시개발과로
상하수도과를 수도과로 명칭 변경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수도과, 주택과, 기술지도과, 건축과
- 1976. 12. 31 : 주택국과 도시국으로 분리
 - 도시국 :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녹지관리과, 상하수도과
 - 주택국 :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기술지도과,
- 1980. 12. : 상하수도과를 이관시키고 녹지관리과를 녹지공원과로 명칭 변경
 -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
- 1981. 11. : 상하수도국 폐지로 하수도과를 이관 받음
 - 도시정책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 하수도과
- 1984. 12. 27 : 도시국에 도시정책과를 도시시설계획과로 변경하여 업무 조정
 - 도시시설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녹지공원과
- 1990. 3. 26 : 도시국장 밑에 건축기획관(3급) 신설하고, 주택국의 건축과를
도시국의 건축과로 조정
 - 주택국(5개 과) :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주택기금과, 주택개발과, 택지개발과
 - 도시국(건축심의관 및 5개 과) :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녹지공원과,
건축계획과, 건축행정과
- 1994.12. 23 : 건설부와 교통부 통합과 함께 주택도시국으로 개편
 - 주택도시국(주택심의관, 건축기획관) : 주택정책과, 주택관리과, 택지개발과,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 1998. 2. 28 : 주택심의관 폐지
 - 건축기획관을 도시건축심의관으로 명칭 변경
- 1999. 5. 24. : 과명칭 변경
 - 도시계획과 → 도시정책과
- 2000. 8. 29 : 국토체계개선팀 운영

- 2003. 7. 26 : 주택도시국을 주택국과 도시국으로 분리
 - 주택국 : 주택정책과, 주거복지과(신설), 공공주택과, 주거환경과
 - 도시국 :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 2005. 9. 1 : 본부장제 및 팀장제 도입으로 개편
 -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으로 명칭 변경
 - 과에서 팀으로 명칭변경 : 도시정책팀, 도시환경팀, 건축기획팀
 - 팀신설 : 복합도시기획팀, 복합도시개발팀
- 2006. 7. 3 : 도시환경기획관 산하 도시계획팀 신설
- 2007. 7. 6 : 복합도시기획팀, 복합도시개발팀 도시환경기획관 소관으로부터 국토균형발전본부 직할로 이동
- 2008. 2. 26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으로 명칭 변경
 - 4개팀에서 4과2팀으로 개편 :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도시환경과, 건축기획과, 도시규제정비팀, 건축문화팀
- 2009. 5. 6 : 조직개편(대국대과)
 - 4과2팀에서 4과1팀으로 개편 :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녹색도시과, 건축기획과, 건축문화팀
- 2010. 3. 30 : 업무이관(경관업무)에 따른 팀명 변경
 -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녹색도시과, 건축기획과, 건축문화경관팀
- 2012. 3. 30 :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건축물 보급활성화를 위한 녹색법이 제정(2012.2.23)되고 이를 전담할 부서의 필요성에 따라 녹색건축과 신설
 -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녹색도시과, 건축기획과, 녹색건축과, 건축문화경관팀
- 2013. 1. 22 : 녹색건축물 관련 업무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축정책관 신설(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대통령령 제24324호, 2013.1.22 공포 및 시행))

- 도시정책관 :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녹색도시과
- 건축정책관 : 건축기획과, 녹색건축과, 건축문화경관팀
- 2013. 3. 25 : 정부조직법 개정(11690호)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신설(국토정책국→국토도시실, 건축문화경관팀→건축문화
경관과)
- 도시정책관 :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녹색도시과
- 건축정책관 : 건축기획과, 녹색건축과, 건축문화경관과
- 2016. 5. 11 : 조직개편(도시경제과 신설)
- 도시정책관 :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도시경제과, 녹색도시과
- 2018. 3. 30 :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시정책관내 부서간 업무분장을
조정·시행
- 업무분장조정 : 토지이용규제·공동구·도시방재(도시정책과→도시재생과),
도시정책관 예산 총괄(도시재생과→도시정책과)
- 직제상 순위 조정 : 도시정책과, 도시경제과(3→2순위),
도시재생과(2→3순위), 녹색도시과
- ※ 재생법령 및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업무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18.4.3, 국토교통부훈령 제988호) 개정·시행에
따라 재생기획단에 이관
- 2019. 3. 19 :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활력지원과로
과명 변경
- 2020. 2. 25 :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시경제과로부터 스마트시티 업무 중
국가시범도시 등 일부업무를 분리하여 스마트도시팀 신설

4. 역대 간부 및 직원현황

가. 도시정책관

직위	성명	재임기간	직위	성명	재임기간
도시정책관	이영근	08. 3.13 ~09. 2.19	도시정책관	박민우	13. 4.12 ~14. 7.10
도시정책관	박기풍	09. 2.20 ~10. 2. 2	도시정책관	윤성원	14. 7.11 ~15.10.19
도시정책관	김병수	10. 2. 3 ~11. 4.11	도시정책관	진현환	15.10.20 ~17. 2.12
도시정책관	유병권	11. 4.13 ~12. 6.24	도시정책관	정경훈	17. 2.13 ~18. 4.24
도시정책관	김일평	12. 6.25 ~13. 2.14	도시정책관	이성해	18. 4.25 ~19.1.29
도시정책관	김재정	13. 2.18 ~13. 4.11 (지원근무)	도시정책관	권혁진	19. 1.30 ~현재

나. 도시정책과장

직위	성명	재임기간	직위	성명	재임기간
도시정책과장	박민우	06. 6. 5 ~07. 7. 5	도시정책과장	최임락	12. 1.18 ~14. 7.10
도시정책과장	유병권	07. 7. 6 ~08. 3.11	도시정책과장	김흥진	14. 7.16 ~15. 3.15
도시정책과장	박무익	08. 3.12 ~09. 3.29	도시정책과장	김규현	15. 3.16 ~17. 3.15
도시정책과장	전병국	09. 3.30 ~10. 2.24	도시정책과장	정의경	17. 3.16 ~19. 2.17
도시정책과장	유성용	10. 2.25 ~11. 8. 7	도시정책과장	이상주	19. 2.18 ~현재
도시정책과장	진현환	11. 8. 8 ~11.12.26			

다. 도시경제과장

직위	성명	재임기간	직위	성명	재임기간
도시경제과장	代정진훈	16. 5.11 ~16. 5.22	도시경제과장	배성호	19. 2.18 ~20. 3.9
도시경제과장	김기대	16. 5.23 ~17. 9.10	도시경제과장	이익진	20. 3.10 ~현재
도시경제과장	이정희	17. 9.11 ~19. 2.17			

라. 도시재생과장 → 도시활력지원과장('19.3.19~)

직위	성명	재임기간	직위	성명	재임기간
도시재생과장	김철홍	08. 3.12 ~09. 5.10	도시재생과장	박승기	13.10.17 ~16. 2.29
도시재생과장	윤현수	09. 5.11 ~11. 2.23	도시재생과장	代김태형	16. 3.1 ~16. 6.12
도시재생과장	이상훈	11. 3.17 ~12. 7.17	도시재생과장	이홍수	16. 6.13 ~18. 7.10
도시재생과장	길병우	12. 7.18 ~13. 1. 6	도시재생과장 →도시활력 지원과장	김남균	18. 9.3 ~현재
도시재생과장	백원국	13. 3.28 ~13.10.16			

마. 녹색도시과장

직위	성명	재임기간	직위	성명	재임기간
녹색도시과장	서훈택	07. 1. 8 ~08. 3.11	녹색도시과장	김정희	13. 3.28 ~14. 9.14
녹색도시과장	손태락	08. 3.12 ~08. 4. 6	녹색도시과장	이동민	14. 9. 15 ~15. 9. 6
녹색도시과장	김정렬	08. 4. 7 ~09.10.25	녹색도시과장	김수상	15. 9. 7 ~16.11. 6
녹색도시과장	권병윤	09.10.26 ~10.02.16	녹색도시과장	김명준	16.11. 7 ~18. 5.28
녹색도시과장	이원식	10. 2.17 ~12. 7.26	녹색도시과장	안경호	18. 5.29 ~19.12.31
녹색도시과장	강희업	12. 8.13 ~13. 3.24	녹색도시과장	성호철	20. 1.1 ~현재

바. 스마트도시팀장

직위	성명	재임기간	직위	성명	재임기간
스마트도시팀장	박진호	20. 2.25 ~현재			

사. 도시정책과 직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주무계	윤성배 書 양승길 主	임월시 事 양승길 主	〈정책1계〉 임월시 事 양승길 主 김은향 主	〈정책1계〉 임월시 書 양승길 主 김은향 主	〈정책1계〉 유혜령 書 양승길 主 김은향 主	〈정책1계〉 유혜령 書 신용섭 主 (지원)	〈정책1계〉 안세희 書 최문갑 主 신용섭 主 김은향 主
정책계	남 일 主 김은향 主	남 일 主 김은향 主	〈정책2계〉 - 남 일 主	〈정책2계〉 이중현 事 손상희 主	〈정책2계〉 최보람 事 손상희 主	〈정책2계〉 박정현 事 손상희 主 신용섭 主 김은향 主	〈정책2계〉 이중현 事 박준호 主 김종원 主
법령계	박희민 事 안윤상 主 유원환 主	박희민 書 안윤상 主 유원환 主	박용선 事 안윤상 主 이원이 主	박용선 事 양승길 主 이원이 主	박용선 書 양승길 主 김은진 主	천재민 事 양승길 主 신덕희 主	오원택 事 김기환 主
시설계	이병민 事 임호수 主	이병민 事 임호수 主	심재문 事 김경일 主 한상윤 主	오원택 事 하성무 主	오원택 事 김홍길 主 이의강 主	최보람 事 김홍길 主 한윤탁 主	장혁 事 백철순 主 한윤탁 主
방재계	-	-	-	최점돌 事 김경일 主	손상영 事 이의강 主	-	-
개발계	오현석 事 이주동 主 최용제 主 전병훈 위원	오현석 事 이주동 主 최용제 主 전병훈 위원	오현석 事 이주동 主 최용제 主 전병훈 위원	오현석 書 이주동 主 남 일 主 전병훈 위원	오현석 書 이주동 主 김대영 主	오원택 事 최문갑 主 김대영 主	이용식 事 김대영 主
도시 규제 정비	장순재 팀장 김우현 事 김현기 事 임은숙 主 김정희 主 김득년 主	장순재 팀장 김우현 事 김현기 事 임은숙 主 김경일 主 김민석 主	〈규제계〉 김우현 事 조영동 主	〈규제계〉 김우현 事 김현성 主	〈규제계〉 김우현 事 조철래 主	-	-
			〈정보계〉 이승훈 事 김상현 主	〈정보계〉 이승훈 事 기진영 主	〈정보계〉 정현철 事 기진영 主	〈정보계〉 윤동영 事 기진영 主	-
중도위 운영 지원팀	백병호 팀장 박성호 主 김중은 위원 윤은주 위원	김동현 팀장 박성호 主 변안희 위원 안종천 위원	김동현 팀장 김홍길 主 최은희 위원 안종천 위원	이부영 팀장 박종국 主 김홍길 主 배유진 위원 이지은 위원	이부영 팀장 박종국 主 김숙자 主 배유진 위원 최민아 위원	김상호 팀장 정연수 主 구성진 主 김남정 위원 송지은 위원	김문성 팀장 박순신 主 임재빈 위원 김수진 위원

5. 주요 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19예산 (①)	'20예산 (②)	증 감 (②-①)	%
〈도시정책관〉	2,322.4	3,389.0	1,066.6	45.9
□ 일반회계	762.9	1655.0	892.1	116.9
○ 국토이용정보화	31.3	44.1	12.8	40.9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	31.3	44.1	12.8	40.9
○ 국토교통행정지원	1.5	1.0	△0.5	△33.3
기타국제기구분담금	1.5	1.0	△0.5	△33.3
○ 도시정책	590.0	1,417	827.0	140.2
도시정책종합연구	7.1	6.8	△0.3	△4.2
유엔 해비타트 개도국 도시지원	6.5	6.5	-	-
용산공원조성사업지원	10.9	14.3	3.4	31.2
스마트시티기반구축	112.8	206.9	94.1	83.4
스마트시티확산사업	427.2	981.2	554	129.7
스마트시티산업육성	23.6	74.3	50.7	214.8
토지이용규제개선	1.9	1.8	△0.1	△5.3
수소도시지원	-	125.2	125.2	-
○ 국토교통연구개발	140.1	192.9	52.8	37.7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R&D)	140.1	127.9	△12.2	△8.7
수소시범도시 인프라기술개발(R&D)	-	40	40	-
스마트시티 국제표준화 기반조성(R&D)	-	25	25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559.5	1,734.0	174.5	11.2
○ 도시정책	83.1	226.7	143.6	172.8
기반시설부담금운영	4.0	5.4	1.4	35
장기미집행 공원보상비 지방채 이자지원	79.1	221.3	142.2	179.8
○ 지역개발	1,476.4	1,507.3	30.9	2.1
개발제한구역관리	1,476.4	1,507.3	30.9	2.1

6. 도시통계

가. 도시지역인구비율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국	90.3	90.5	90.5	90.8	90.9	91.1	91.0	91.6	91.7	91.8	91.82	91.82	91.84
서 울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 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 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93	99.79	99.79
인 천	97.9	97.7	97.7	97.5	97.6	97.6	97.6	97.9	97.9	97.5	97.35	97.54	97.74
광 주	99.8	99.8	100.0	100.0	99.9	99.9	100.0	100.0	99.9	99.9	100.0	100.0	100.0
대 전	99.8	99.8	98.3	98.3	99.8	99.6	99.6	100.0	100.0	99.7	99.71	99.71	99.65
울 산	93.8	93.9	100.0	100.0	100.0	99.7	99.8	99.8	99.8	99.8	99.82	99.82	99.82
세 종	-	-	-	-	-	-	78.2	78.2	83.4	83.4	85.74	86.96	88.86
경 기	89.4	90.5	91.0	91.6	91.9	92.1	92.0	93.0	93.1	93.3	93.23	93.09	92.86
강 원	80.6	81.2	79.5	79.6	81.1	81.4	80.5	81.4	81.2	81.8	81.04	81.41	81.45
충 북	78.8	80.4	81.1	79.6	79.5	79.3	80.0	83.2	82.8	82.7	82.77	80.44	80.01
충 남	64.8	64.7	64.2	63.7	64.2	65.0	65.3	67.8	69.4	70.5	70.59	72.89	73.81
전 북	77.6	75.9	77.1	77.3	77.9	78.8	78.7	78.7	79.7	79.5	80.12	79.91	80.24
전 남	69.5	69.5	69.5	68.7	69.4	70.1	69.4	70.2	70.6	71.3	71.46	71.86	71.66
경 북	77.4	77.5	77.2	76.9	76.6	78.0	76.8	77.1	76.8	77.4	77.87	78.14	78.29
경 남	84.6	84.9	81.2	85.3	84.5	84.6	84.6	84.8	84.4	84.8	85.48	85.59	85.80
제 주	89.4	89.4	89.5	89.7	89.6	89.9	90.6	90.6	90.6	90.6	90.81	90.70	90.66

주) 1. 비율 = (도시지역 기준 도시인구/전국인구)*100,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을 말함

2. 시도인구 = 주민등록상 인구기준

3. 도시지역 기준 도시인구 = 도시지역내 거주하는 인구

4.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도시계획현황('19.7)

나. 지역별 도시지역 인구 비중

구 분	인구(명)	비율(%) ^(주1) [전국인구대비]	도시지역인구(명)	비율(%) ^(주2) [전국도시지역인구대비]
2018년	51,826,059	100.00	47,596,436	100.00
특 · 광역시	22,728,382	43.90	22,649,117	47.60
서 울	9,765,623	18.80	9,765,623	20.50
부 산	3,441,453	6.60	3,441,453	7.20
대 구	2,461,769	4.80	2,456,722	5.20
인 천	2,954,642	5.70	2,887,841	6.10
광 주	1,459,336	2.80	1,459,336	3.10
대 전	1,489,936	2.90	1,484,652	3.10
울 산	1,155,623	2.20	1,153,490	2.40
세 종	314,126	0.60	279,118	0.60
경 기	13,077,153	25.20	12,143,441	25.50
강 원	1,543,052	3.00	1,256,813	2.60
충 북	1,599,252	3.10	1,279,616	2.70
충 남	2,126,282	4.10	1,569,458	3.30
전 북	1,836,832	3.50	1,473,946	3.10
전 남	1,882,970	3.60	1,349,392	2.80
경 북	2,676,831	5.20	2,095,784	4.40
경 남	3,373,988	6.50	2,894,899	6.10
제 주	667,191	1.30	604,852	1.30

주) 1. 전국인구 = 도시인구와 비도시인구의 합

2. 비율 = (개별시도의 도시지역내 인구 / 전국인구) × 100

3.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도시계획현황(19.7)

다. 지역별 도시지역 인구 변화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인구	49,269	49,540	49,773	50,516	50,734	50,948	51,141	51,328	51,529	51,696	51,779	51,826
도시 인구	44,610	44,836	45,183	45,933	46,231	46,382	46,838	47,048	47,298	47,469	47,543	47,596
도시인구 비율(%)	90.5	90.5	90.8	90.9	91.1	91.0	91.6	91.66	91.79	91.82	91.82	91.84
특·광역시	22,794	22,880	22,891	23,162	23,144	23,236	23,247	23,257	23,032	23,135	22,799	22,649
서울	10,193	10,201	10,208	10,313	10,250	10,195	10,144	10,103	10,022	9,931	9,857	9,766
부산	3,587	3,565	3,543	3,568	3,551	3,538	3,528	3,519	3,514	3,499	3,471	3,441
대구	2,493	2,492	2,489	2,511	2,507	2,505	2,501	2,493	2,488	2,483	2,470	2,457
인천	2,604	2,631	2,644	2,691	2,733	2,775	2,819	2,841	2,852	2,865	2,876	2,888
광주	1,411	1,423	1,433	1,453	1,462	1,469	1,473	1,474	1,471	1,469	1,464	1,459
대전	1,473	1,456	1,459	1,501	1,510	1,519	1,533	1,532	1,514	1,510	1,498	1,485
울산	1,033	1,112	1,115	1,126	1,132	1,145	1,155	1,164	1,171	1,170	1,163	1,153
세종	-	-	-	-	-	88	96	130	176	208	244	279
경기	10,049	10,280	10,495	10,828	10,990	11,119	11,382	11,509	11,688	11,856	11,976	12,143
강원	1,220	1,199	1,205	1,241	1,250	1,239	1,255	1,254	1,268	1,257	1,262	1,257
충북	1,211	1,233	1,216	1,232	1,239	1,253	1,309	1,308	1,310	1,317	1,282	1,280
충남	1,291	1,295	1,298	1,332	1,366	1,325	1,388	1,431	1,464	1,480	1,543	1,569
전북	1,413	1,431	1,433	1,456	1,477	1,474	1,474	1,491	1,487	1,494	1,482	1,474
전남	1,342	1,334	1,313	1,330	1,342	1,326	1,338	1,346	1,361	1,360	1,363	1,349
경북	2,077	2,065	2,054	2,060	2,105	2,072	2,081	2,073	2,092	2,103	2,103	2,096
경남	2,713	2,617	2,772	2,780	2,800	2,809	2,826	2,829	2,854	2,884	2,893	2,895
제주	500	502	505	512	518	529	538	550	566	583	596	605

주) 1. 전국인구는 도시인구와 비도시인구의 합이며, 도시인구는 도시지역내 인구

2.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도시계획현황(19.7)

라. 도시지역 면적 변화추이

(단위 : km²)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행정구역 면적	99,720	99,828	99,897	100,033	100,148	100,188	100,266	100,284	100,295	100,339	100,364	100,377
도시지역 면적	17,190	17,317	17,420	17,492	17,559	17,587	17,593	17,597	17,614	17,610	17,636	17,789
도시면적비율(%)	17.2	17.3	17.4	17.5	17.5	16.6	17.5	17.5	16.6	16.6	16.6	16.7
특 · 광 역 시	4,796	4,636	4,649	4,664	4,663	4,800	4,798	4,793	4,791	4,800	4,797	4,798
경기	3,189	3,236	3,239	3,264	3,330	3,331	3,340	3,348	3,358	3,367	3,371	3,376
강원	993	993	995	1,010	1,012	1,017	1,022	1,022	1,023	1,027	1,027	1,029
충북	687	703	701	713	720	721	722	723	725	729	731	731
충남	960	1,055	1,068	1,041	1,050	911	901	901	903	905	904	905
전북	871	888	889	891	890	894	886	886	886	886	886	886
전남	1,663	1,670	1,738	1,747	1,726	1,729	1,731	1,728	1,729	1,698	1,699	1,718
경북	1,771	1,773	1,768	1,831	1,835	1,843	1,847	1,850	1,850	1,855	1,857	1,867
경남	1,853	1,957	1,964	1,877	1,880	1,888	1,894	1,893	1,896	1,890	1,893	2,008
제주	407	407	408	453	453	453	453	453	453	453	470	471

주) 1. 2018년 행정구역면적 및 도시면적은 “2018 도시계획현황”자료의 행정구역면적 및 도시지역 면적

마. 용도지역 현황

(단위 : km²)

구 분	도시 지역	비 도 시 지 역							
		계	관 리 지 역(km ² , %)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계	계획	생산	보전	미세분		
계	17,789	88,497	27,223	12,066	4,947	10,193	17	49,351	11,923
(106,286)	16.7%	83.3%	25.6%	11.4%	4.7%	9.6%	0.0%	46.4%	11.2%
서울	606	-	-	-	-	-	-	-	-
부산	941	53	-	-	-	-	-	-	53
대구	798	86	-	-	-	-	-	37	48
인천	580	577	316	155	27	131	3	261	-
광주	480	21	18	6	6	6	-	4	-
대전	496	44	9	3	1	5	-	28	7
울산	756	389	62	9	13	41	-	283	44
세종	143	323	174	78	20	77	-	146	3
경기	3,376	7,005	3,020	1,418	428	1,173	1	3,552	434
강원	1,029	15,873	3,265	1,732	505	1,027	-	10,867	1,741
충북	731	6,676	2,258	899	393	966	-	3,587	832
충남	905	7,839	3,141	1,544	616	980	1	4,004	694
전북	886	7,245	2,560	893	721	944	1	4,003	682
전남	1,718	13,716	3,440	1,280	747	1,409	4	6,357	3,918
경북	1,867	17,262	4,979	2,267	695	2,016	-	11,152	1,131
경남	2,008	9,808	2,896	1,147	528	1,214	7	4,962	1,950
제주	471	1,581	1,086	635	247	204	-	108	387

7. 위원회 현황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토지이용허가조정위원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노후거점산단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산업부 공동) 5개 위원회

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설치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 구 성 : 총 30인(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0인 이내)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위 원 : 민간 위촉위원 10인 이상, 임기 2년
 - ※ 당연직 위원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 민간인 위원 임기 : 2년(연임 가능)
- 위원회의 기능
 - 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심의
 -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심의
 - 도시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 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소집
- 위원 위촉기준
 -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1) 분과위원회구성 및 기능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2이상의 분과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음
- 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

○ 기 능

<제 1 분과>

- 지역지구지정(GB제외) 심의
- 지역지구지정(GB제외) 심의
- 타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승인 심의
-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심의
-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

<제 2 분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 GB관련 안전 사전조사(현장조사 등)
- GB관리계획 변경 중 군부대 안전(위임) 심의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위임) 사항 심의

※ 다만, 공공주택지구,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뉴스테이 사업지구지정), 도시개발 구역 지정 등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이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의제 되는 경우 전체회의에서 심의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실적('02~'19)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 운영실적〉

년도	합계	안건내용						심의결과			
		도시 기본· 광역 계획	도시 계획 구역 변경	개발제한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기타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협의 상정	소위 회부 등
				해제	관리 계획						
2019	80		22	2	17	1	38	13	30	15	22
2018	73		33	3	34	2	1	14	36	14	9
2017	72	-	-	7	60	1	4	5	53	9	5
2016	42	-	1	7	25	-	9	3	25	12	2
2015	70	-	4	10	32	-	24	17	31	15	7
2014	82	-	-	14	48	2	18	24	41	9	8
2013	41	-	-	8	16	1	16	8	27	-	6
2012	33	-	1	10	13	2	7	9	13	-	11
2011	46	3	-	19	-	1	23	8	22	1	15
2010	36	-	-	7	16	2	11	2	6	-	28
2009	54	5	-	8	5	3	33	19	20	-	15
2008	92	30	24	19	8	4	7	40	-	6	46
2007	87	49	7	7	11	1	12	37	8	-	42
2006	88	41	5	9	16	1	16	42	3	3	40
2005	72	17	5	14	24	4	8	16	22	3	31
2004	71	28	1	13	16	3	15	40	3	3	30
2003	69	11	2	27	19	-	10	28	23	1	17
2002	48	15	10	5	13	-	5	17	11	1	19

※ 보고 안건 제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실적〉

년도	합계	도시·군기본 계획	도시·군계획 시설결정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관리	도시개발 (재개발)	기타
2019	46		14	13		19
2018	31		11	4		16
2017	18	-	-	3	9	6
2016	24	-	-	3	4	17
2015	33	-	5	4		24
2014	21	-	-	8	2	11
2013	21	-	-	9	-	12
2012	28	-	-	11	4	13
2011	76	-	-	50	1	25
2010	73	-	-	31	-	42
2009	44	-	-	13	-	31
2008	171	73	-	27	-	71
2007	203	95	-	32	-	76
2006	174	115	3	9	-	47
2005	152	24	-	32	-	96
2004	98	31	-	25	-	42
2003	70	14	22	21	1	12
2002	32	14	-	16	-	2

나.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의와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토지이용규제심의 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안에 설치
- 위원회의 구성 : 20인 이내(총19인)
 - 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 부위원장 : 환경부차관
 - 공무원인 위원(9인) : 9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
 - ※ 9개 중앙행정기관 :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6.6.30까지는 소속 1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 '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분리로 해양수산부에서 당연직 위원 1인 추가
 - 민간인 위원(8인) :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8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
 - ※ 8개 중앙행정기관 : 기획재정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 ※ '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분리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천하는 민간인 위원 1인 추가
- 위원회의 심의사항
 -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 위원회 구성

- 근거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 위원장 : 국토부 장관이 임명
- 인원 : 20인(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3명)
 - 정부위원(7)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장,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 민간위원(13) : 교수, 연구원 등
- ※ 개최실적이 없어 위원회 폐지 추진 중이며, 임기 종료('20.4.6.) 이후 미구성
- 임 기 : 1년(연임가능)

○ 위원회 기능

-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허가시 발생한 기관간 이견이 지자체 단계에서 조율되지 못한 경우 조정하고, 조정안을 각 기관에 권고
- 지자체가 기관간 이견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합동조정회의(이견 발생 기관 등이 참석)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될 경우 “인허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

○ 위원회 절차

- 합동조정회의(3회 이상) → 조정안 도출 불가 → 국토부에 설치된 토지이용 인허가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 → 위원회의 조정안을 관계기관에 통보 → 관계기관은 조정안 수락여부 결정(15일 이내) 후 국토부에 통보

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 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위촉한 1명
- 부위원장(3명) : 국토교통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정부·민간위원 30명 이내
- 위원회 기능 :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등 스마트시티 관련 주요 정책사항 심의
 - 국가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사항
 -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에 관한 사항
 - 국가시범도시의 지정·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 스마트혁신사업·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8. 관련 협회 및 단체

단체명	주 소	설립일자	설립 형태	설립목적	대표자 성 명
도시 및 지역계획 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역삼동) 과충 303호	1971.02.10	사단법인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문제 조사·연구	최상철
한국도시행정학회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전농동) 서울시립대 도시 행정학과	1988.05.04	사단법인	도시행정학의 이론적 연구를 통한 도시행 정학의 발전 도모, 도시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	오동훈
한국지하공간협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0 롯데캐슬 메가몰 2084호	1993.01.19	사단법인	산·학·관 협동의 공조체제로써 지하공 간 및 활용에 대한 합리적 계획수립 및 관련기술 개발 도모	임승남
한국도시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12 (신문로1가) 신문로빌딩 1006	1994.10.01	사단법인	도시지역의 토지, 주택, 산업문제 등에 대 한 연구와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발전적이 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생활환경 조성	최병두
한국도시계획 기술사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과학기술회관) 본관 611호	1996.06.20	사단법인	도시계획 실무분야 기술의 발전과 정 보교환	정우철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경실련회관	1998.04.21	사단법인	참다운 도시만들기 위한 연구개발 및 도시개혁 운동	최봉문
한국도시설계학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7, 1113호(문정동, 현대지식산업 센터 C동)	2000.12.06	사단법인	도시설계 및 관련분야의 발전과도 분야 종사자의 전문가적 자질을 향상하여 도시 발전 및 도시문화창달에 기여	김영환
사람의 도시연구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 로 358-25(백석동 1324 동문 굿모닝타워III 615호)	2004.12.30	사단법인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수립 및 도시조성에 기여	엄성은
한국도시지리학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봉천동) 관악센츄리티타워 914	2005.03.08	사단법인	도시발전 및 각종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	류연택
한국도시경영 관리연구원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28 (용답동) 신재빌딩 4층	2006.06.27	사단법인	도시경영관리에 관한 이론체계화 및 경영 기법 제공	오병호
미래도시포럼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2007. 1.12	사단법인	도시계획 경영 등에 대한 학술조사 및 연 구, 도시발전에 기여	최두호
도시정책학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사 대로 1150(파장동 179)	2009.10.15	사단법인	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도시교통, 지역개발, 부동산, 도시문화, 공 간디자인 및 기타 도시 관련 학제간의 다양 한 연구 활동을 통한 도시정책분야의 발전 을 도모	이승일
한국조경학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본관 608	1972.12.29	사단법인	조경전문가의 기술습득 및 상호 정보교환	이상석

단체명	주 소	설립일자	설립 형태	설립목적	대표자 성 명
스마트도시협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98 1동 911호(가산동, 롯데IT캐슬)	2018.01.08	사단법인	스마트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조근환
스마트도시건축 학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60길 23-4, 형일빌딩 203호	2019.08.19.	사단법인	스마트 도시와 건축에 관련된 전문지식 을 활용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국내외에 전파	한만희
도시경영포럼	서울시 강동구 암사13길 23 (암사동) 1층 101호	2009.11.6	사단법인	시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인간중심의 미래도시 개발 및 구현을 위한 전문연구	박연수
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협회	서울시 은평구 대서문길 42-15 (진관동)	1997.09	사단법인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권익옹호	배병현
국토환경재단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68 (독산동) 용구빌딩 6층	2006.12.01	재단법인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보전(개발제한 구역 포함) 등	이경율
새만금유시티포럼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8 (역삼동)	2010.8.19	사단법인	세계적인 명품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학·연·관·민· 전문가들이 정보 및 역량을 공유하여 새만금지 역의 u-City 관련 기술 정책 및 신 기술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새만금 경제발전과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이승우
(사)도시환경 문제연구소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 538-2	2012.08.13.	사단법인	도시슬럼화,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에 따른 도시 환경문제의 대안을 제시하여 도시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김희철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동관 901호	2003.02.20	사단법인	미래 지향적이며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사업 및 정비사업 등을 위한 법제와 실무를 연구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전연구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HIT 525호	2013.02.18	사단법인	도시계획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 여를 증진시키고, 도시계획가의 윤 리강화 및 품위 보전과 권익을 보호 하며, 도시문화와 전통을 발굴하여 시대	안정근
도시지식산업집단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64(역삼동 680-1) 더라움 7층	2014.05.01	사단법인	도시에 관련된 지식을 활용하여 국 가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세계에 전 파함을 목적으로써 성공적인 도시지 식산업화 모델의 확산 및 품격 높은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	한만희
한국블록협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봉은사로 129-1 715호(논현동 751빌딩)	2016.01.11	사단법인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지 재해재난 최소화 및 사전예방을 위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도시정책을 지원하고, 블록에 대한 설계·시공기준 정립 및 기술력 향상을 통한 블록산업의 저 변 확대에 기여	조윤호

9. 국제협력 업무

가. UN-HABITAT(유엔인간정주계획)

*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 개요

-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활동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77년 UN산하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02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인간정주계획으로 승격
-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주거환경과 문화적 발전 기회 보장목적으로 국제연합 인간거주회의의 행동계획에 따라 각국 정부에 기술원조

○ 참가국 : 58개 Habitat 이사국 정부대표, 옵서버 국가, UN기구 및 NGO 등이 참가

○ 우리나라의 참여 상황

- 우리나라는 옵서버 자격으로 '84년 제7차 회의부터 참가하였으며, '08년 집행 이사국으로 진출하였음

* '04~'16년도까지 UN HABITAT에 기여금 약 9.3억원 제공, '20년 1억원 납부 예정

- '16.10월 HABITAT III 회의에서 국토부-UN HABITAT 간 개도국 도시지원에 관한 MOU 체결을 계기로 '17~'21년까지 5년간 30억원(ODA) 지원

* 지원 대상 개발도상국으로 이란, 나이지리아, 미얀마 3개국 선정

- '17.5.8~12 제26차 집행이사회에 도시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참석

<UN HABITAT III 회의>

- 20년마다 개최되는 주택과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UN 정상회의로 제3차 회의가 '16.10.17~20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되었음
- 중앙정부, 지자체, 학계, 민간단체 등이 모여 향후 20년간 도시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채택
 - * HABITAT I('76, 캐나다 밴쿠버)을 통해 UN차원에서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77년 UN-Habitat 전신인 유엔인간정주센터(UNCHS)를 설치
 - * HABITAT II('96, 터키 이스탄불)를 통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계획인 '범지구적 실천계획(Habitat Agenda)' 채택
 - * HABITAT III('16, 에콰도르 키토)를 통해 도시 빈곤근절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포용성·복원력·자연친화 성 등이 강화된 도시조성 제시
- 우리 정부 대표단도 참가하여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우리의 도시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나. 세계도시포럼(World Urban Forum, WUF)

○ 개요

- 참가국의 도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2001. 6월 뉴욕 특별총회에서 채택된 UN-HABITAT 위원회 결의에 따라 운영
- 기존의 「도시환경포럼」 및 「도시빈곤 해결을 위한 국제포럼」을 「세계도시포럼」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되, UN-HABITAT 집행이사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해에 격년제로 개최함

○ 참가목적

- 비정부대표기구로서 지방정부와 다른 HABITAT 의제 파트너 등도 참석하여 UN-HABITAT 사무총장에게 자문기구 역할을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하고, HABITAT 의제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

○ 개최현황

- 1회 : 2002년, 케냐 나이로비
- 2회 : 2004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 3회 : 2006년, 캐나다 벤쿠버
- 4회 : 2008년, 중국 난징
- 5회 : 2010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6회 : 2012년, 이탈리아 나폴리
- 7회 : 2014년, 콜롬비아 메델린(Medellin)
- 8회 : 2016년, 에콰도르 키토(HABITATⅢ 회의로 대체)
- 9회 : 2018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10회 : 2020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Abu Dhabi)
- 11회(예정) : 2022년, 폴란드 카토비체(Katowice)

* 우리나라는 제3차 포럼('06년)부터 참가.

최근 행사에는 '12년 도시정책과장, '14년 주택정책과장('16년 해비타트Ⅲ회의로 대체, 제1차관 수석대표), '18년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20년 도시정책과장이 대표로 참가

다. 한·일 도시개발 협력회의

○ 목적

- 한·일 양국간 도시정책, 도시개발, 공원·녹지, 하수도 등 도시분야의 현안 사항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증진

○ 개요

- 개최시기 : '83년부터 매년 양국을 번갈아가면서 개최
* '18년~'19년 미개최
- 대표단 구성 : 양국의 국장급이 단장이며 통상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 학회, 국책연구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으로 구성
(한국 : 도시정책관, 일본 : 국토교통성 도시국)
- 회의진행 :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실시
 - 전체회의 : 기조연설, 전체회의 의제발표
 - 분과회의 : 도시정책및교통, 도시개발, 공원·녹지, 하수도등 4개 분과위
* 다만, 양국 협의하에 제30회 회의(일본 도쿄)부터 하수도 분과는 제외하기로 결정

○ 역대 도시개발협력회의 의제('83~'15)

구 분		도시정책 및 교통	도시개발	공원·녹지	하 수 도	기타
'83 제 1 회	한국	· 도시현황 및 개발정책 (도계)	· 택지개발 및 공급계획 (토공)	· 개발제한구역현황 (녹지)	· 한국의 하수도(하수)	
	일본	· 일본의 도시정책			· 일본의 하수도 · 동경의 하수도 실례 · 횡병시의 하수도 실례 · 해안지역의 하수도 사업 실시	
'84 제 2 회	한국		· 도시재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도개)	· 한국의 공원·녹지 (녹지)	· 하수도 현황과 과제 (하수)	
	일본		· 도시개발	· 도시의 OPEN SPACE	· 하수도 정비의 현황과 과제	
'85 제 3 회	한국		· 반월신도시 개발 (도개) · 도시재개발(주공) · 공영개발(토공) · 토지구획정리(국토)	· 한국의 개발제한구역 (녹지) · 공원·녹지(국토)	· 한국의 하수도(하수) · 대전의 하수도(대전)	
	일본		· 시가지 정비촉진 · 도시재개발 촉진	·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등 · 공원녹지 정비와 공단의 역할	· 하수도 정비에 있어서 신기술의 개발 · 동경도에 있어서의 하수도 정비 · 경도시에 있어서의 하수도 정비	
'86 제 4 회	한국	· 도시정책 및 행정(시설) · 도시교통(부산)	· 도시재개발(토공) · 토지구획정리 · 신시가지 건설(주공)	· 역사유산 및 도시경관의 보전(도계) · 도시공원(토공) · 녹지지역의 개발 허가(국토)	· 6차5개년계획기간중의 하수도정책(하수) · 금호강의 수질개선사업(대구)	
	일본	· 도시정책 및 행정 · 도시교통	· 시가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 신도시거점 정비사업	· 역사적 풍토보존구역의 지정 및 도시공간 형성 · 제4차 도시공원정비 5개년 계획 · 주택·도시정비공단의 공원사무 · 국제꽃 및 녹화박람회	· 제6차 하수도정비 5개년계획 · 하수도의 유지관리 · 하수도정비에 있어서 일본 하수도사업단의 역할	

구 분		도시정책 및 교통	도시개발	공원·녹지	하 수 도	기타
'87 제5회	한국	· 도시가로망 체계개선방안(시설) · 서울시 교통처리 대책(서울) · 대구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대구)	· 도시개발대책(도개) · 도시개발제원(국토) · 도심재개발(서울) · 서울 불량주택 재개발(서울) · 공영개발과 토지구획 정리사업비교(토공, 국토)	· 민자유치에 따른 공원개발(녹지) · 경주지역 역사 환경 보전과 개발(경북) · 관광도시의 정비(제주)	·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하수) · 서울시의 하수처리대책(서울) · 활성스러지 처리대책(건기)	
	일본	· 도시교통계획 및 가로사업의 개요 · 도시고속도로의 정비	· 도시개발에 있어서의 주민참가 ·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재원마련 · 도시재개발 · 국제화·정보화에 대응한 도시정비 · 도시방재 대책	· 국제꽃과 녹음박람회 계획 · 역사적 도시의 도시경관 및 공원행정	· 하수와 광역처리사업 · 횡병시의 하수도	
'88 제6회	한국	· 시가지 도로노선번호 체계(시설) · 수원 도시교통 정비방안(경기) · 대전 도시교통 정비방안(대전)	· 민간활력을 이용한 도시정비(도계) ·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과 발전방향(토공)	·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정책방향(국토) · 시가지개발사업과 공원, 녹지계획(토공)	· 지방도시 하수처리장건설 순위결정모델(하수) · 창원분류식하수관망계획(경남) · 한국의 적합 하수처리 시스템(건기)	
	일본	· 도시내 도로정비의 관제와 추진방향	· 민간활력을 이용한 도시정비 · 도시재개발, 토지구획정리	· 도시공원정비사업의 개요 · 녹화추진 제3차 5개년 계획 · 국제꽃과 녹음박람회	· 하수정비의 현황과 전망 · 일본 하수도사업단이 시행하는 소규모 하수도 사업 · 동경의 하수도	

구 분		도시정책 및 교통	도시개발	공원·녹지	하 수 도	기타
'89 제7회	한국	· 도시규모에 따른 교통계획(시설) · 지하공간활용방안 (지하도)(대전)	· 도시재개발 제도개선방향(도개) · 공동체식 형성을 위한 주거단지 계획(토공) · 관광도시개발(강릉시) (강원)	· 개발제한구역의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녹지) · 근린공원의 이용도 증진방안(국토)	· 합류식 하수관거 개선방향(하수) · 소규모 하수처리시스템 개발(건기) · 하수도사용료 징수와 오수량 측정(서울)	· 지자체 체에서 중앙 정부 역할 (도개)
	일본	· 도시규모에 따른 교통계획 · 지하공간활용방안 (지하도)	· 도시재개발 제도 개선 방향 · 공동체식 형성을 위한 주거단지 계획 · 관광도시개발	· 개발제한구역의 휴식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 · 근린공원의 이용도 증진방안	· 합류식 하수관거 개선방향 · 소규모 하수처리시스템 개발 · 합병시의 하수오니처리 처분	· 지자체 체에서의 중앙 정부 역할
'90 제8회	한국	· 주차장대책(도개) ·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광역교통계획(국토)	· 대도시내 택지공급 방안(서울)	· 신도시의 공원, 녹지계획(경기) · 대단위택지개발지에서의 야생수림활용방안 (토공)	· 맑은 물 공급대책(하수) · 분뇨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악취제거대책(서울) · 하수처리의 효율적인 운전대책(건기)	· 한국의 토지공 개념법 (도정)
	일본	· 주차장 대책 · 도시고속도로의 정비	· 대도시지역 도시 개발정비 주택지등 공급 촉진 · 도시재개발의 의의와 시가지 재개발 사업 · 철도정비와 택지 개발의 일체적인 추진수법	· 시민농원의 정비 · 중심시가지에서의 도시공원의 정비	· 하수도 정비 5개년계획 · 하수오니의 처리, 처분, 유효활용 · 동경도에서의 하수관의 갱신	
'91 제9회	한국	·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도시정책방향 (광역도시중심)(도개) · 도시정책의 방향과 대책(3차국토종합계획 중심) (도개) · 신도시 대중교통 환승 주차장계획 (국토)	· 수도권 신도시 개발 파급 효과분석(도정) · 해상신도시건설계획 (부산)	· 개발제한구역의 휴식공간 활용(녹지) · 민자유치에 의한 도시공원 개발(서울)	· 하수도정비방향 (하수관거중심) (하수) · 하수도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연계 처리방안(건기)	
	일본	· 수도권에 있어서 대규모 도시개발 PROJECT · 도시교통조사 · 도시내도로정비의 과제와 추진방법	· 상업지를 활성화하는 도시정비의 추진 · 도시재개발에 있어서의 주차장 정비의 추진	· 일본의 공원정비사업 장기계획 · 도시공원 등을 중핵으로 한 THEME	· 일본 하수도사업의 장기계획 · 일본의 하수도 기술자 양성	

구 분	도시정책 및 교통	도시개발	공원·녹지	하 수 도	기타	
'92 제10회	한국	· 지방중·소도시 실태와 육성방안 (도계) · 한국의 테크노폴리스 (국토) · 대도시 교통난 완화 대책(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도정)	· 대도시 부도심 개발계획(광주) · 신시가지 조성계획(토공)	· 시민휴식공간조성 계획(서울) · 문예공원 조성계획(대전)	· 하수도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하수) · 하수도 유지운영 관리방안(대구)	
	일본	· 지방거점도시지역 정비추진 정책 · 도시계획법 일부 개정 · 특색있는 가로망 정비에 대하여 · 자동차 교통의 적정화에 대하여	· 도시거점의 종합적 정비 · 최근 도시재개발동향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시가지 정비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도시공원의 기본방향 · 도시녹화 추진 시책의 전개	· 일본의 고도처리 현황 및 하수처리의 재이용 · 하수도 사업의 지원체제 · 동경도에 있어서 하수오니의 자원화	
'93 제11회	한국	· 지하공간 개발 체계구축(도계) · 수도권 5개신도시 건설과 교통 대책(도계)	· 한국의 중·장기 도시계획 수립제도(국토) ·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선 방안(정비)	· 체육공원의 기능정립과 조성방향(녹지) · 가로수 식재방법개선(서울)	· 합리식지역 하수관의 정비 방안(하수) · 하수 SLUDGE 처리·처분방안(건기)	· 도시계획 과 사유재 산권 제한 (도계)
	일본	· 가로사업제 관한 최근의 화제 · 일본에 있어서 APM의 역할	· 대도시지역에 있어서 주택지공급 촉진방안 · 시가지정비의 새로운 전개와 구획정리 사업의 역할 · 도시재개발에 있어서 주택·도시정비 공단의 역할	· 경제사회의 변화에 입각한 도시공원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 도시녹지기술의 현상과 향후방향	· 일본에 있어서의 중소규모 시정촌 하수도정비의 제도적 기술적 연구 · 동경도에 있어서의 하수도 자원의 유효이용 · 횡병시의 하수도와 미아용 ENERGY	· 도시환경 정책의 추진 에 대하여 · 개정도시 계획법의 운용에 대 하여
'94 제12회	한국	·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하여(정비) · 서울 지하철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조기구축(서울) · 청주권 광역교통 개발 전략(충북)	· 도시계획의 종합성과 도시계획체계의 발전방향(국토) · 민자유치를 통한 신도시건설 촉진방안(충남) · 해면매립과 어업보상의 과제(정비)	· 신도시의 문화환경 조성방향(토공) · 한국의 도시공원조성 동향과 금후의 방향설정(경남)	· 하수처리구역내 공장폐수의 합리적 처리방안(환경) · 하수슬러지 고품화 처리방안(광주) · 합류식 차집관거내 토사유입에 따른 하수처리 개선방안(대전)	
	일본	· 앞으로의 도시계획 · 일본의 도시개발과 신교통시스템 · 일본의 주차정책	· 지방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 재개발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조성	· 도시의 녹지보전과 녹화의 추진 · 숙박수용에 대응한 공원녹지의 정비추진(오토 캠프장등의 추진)	· 하수도의 다목적 이용 · 일본하수도사업단의 기술개발 · 100% 보급후의 동경 · 동경도에 있어서의 하수도	

구 분	도시정책 및 교통	도시개발	공원·녹지	하 수 도	기타
'95 제13회	한국	·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제도 개선방향 · 대중교통 환승센타의 건립 현황과 개선방안	· 광역도시개발 계획	· 한국의 도시공원의 현황과 개선방안	· 하수도 처리의 합리적 방안
	일본	· 최근 도시행정의 과제 · 한신·아와지대 대지진의 복구·부흥 대책 · 주택도시정비공단의 한신·아와지대 대지진의 부흥등에 관련한 대처 · 가로사업의 신전개 · 도시교통의 적정화	· 고오베시 지진 부흥 토지구획정리사업 · 도심부 활성화 대책으로써의 도시재개발	· 지진시 공원녹지의 방재적 기능 · 녹의 정책 대강과 민간 활력에 의한 도시녹화의 추진	· 일본 하수도시설의 개축·보수 · 합류식 하수도의 개선
'96 제14회	한국	·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도시환경 발전방안 · 도심지 대중교통지구의 설치방안 · 소도시 교통체계 발전방향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 주상 복합개발의 활성화 방안	· 도시공원 조성축진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 신도시내 친수환경 창출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 소규모 하수도의 정비시책 ·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오수처리 선정방법 · 청주시 하수도 정비 촉진시책
	일본	· 도시계획에 대한 지방공공단체와의 역할분담 · 단거리 교통시스템에 대하여 · 여유와 정감있는 도시만들기에 공여 하는 가로사업	· 시가지 개배발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 활성화된 복지사회의 형성을 위한 시가지 정비	· 제6차 도시공원등 정비 5개년 계획 · 도시 녹화의 보전방안에 대한 새로운 전개에 대하여	· 제8차 하수도 정비 5개년 계획(안)에 대하여 · 하수도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97 제15회	한국	· 친수형단지 조성사례연구 ·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시행 · 교통측면에서 본 한국신도시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신국제공항입지에 따른 21세기 인천도시발전 전망 발표·토의 · 도심재개발의 활성화 방안	· 서울시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 · 경기도에서의 도시녹지 네트워크 조성계획	· 한국의 하수도시설 사업 시행방안 · 종량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증량계획
	일본	· 도시교통정책의 새로운 전개 · 대규모 개발지구 관련 교통계획에 대하여	· 도심주거의 촉진에 이바지할 시가지 재개발사업의 현황과 향후대책 · 진재복구사업의 진척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 장수복지사회의 공원조성에 대해서 ·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녹지의 방재기능에 대해서	· 소규모 하수도의 정비촉진과 기술동향 · 하수도관거의 재구축

구 분	도시정책 및 교통	도시개발	공원·녹지	하 수 도	기타	
'98 제16회	한국	· 도시개발과 녹지보전 · 인천광역시 송도 텔레포트 건설구상과 도시계획 · 한국의 미니 신도시 개발 · 연담도시(마산,창원,진해시)의 균형발전 방향	·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효율적 관리방안	· 도시개발과 녹지보전	· 우리나라의 하수도사업 추진방향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기술지원	
	일본	· 새로운 도시정비의 전개 · 지하 공간 이용과 관련한 대응책에 대하여 · 구획정리의 새로운 전개 (신시가지에서 기성시가지로 등) · 민간 활력에 의한 시가지 재개발의 촉진에 대해서	·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교통 시책 · 가로사업 정비 효과	· 고도에서의 역사적 풍토의 보존에 대해서 · 국영공원등에서의 정보화의 성과에 대해서	· 하수도사업에서의 비용 축감의 대응책 · 하수도 광fiber를 활용한 하수도사업의 효율화와 정보통신기반의 정비	
'99 제17회	한국	· 21세기 새서울타운 기획발표·토의 · 수도권 5개신도시개발에 대한 종합평가	· 교통영향평가제도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발표·토의 · 지속가능한 교통의 정책사례와 향후 추진방향 · 도시교통정비계획의 시행현황과 발전방향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발표·토의 ·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심기 · 도시녹지지역의 관리현황 및 과제	· 한국의 하수도사업 하수처리장의 슬러지 감량 및 재활용 방안 · 하수도 기술선진화사업의 추진현황	
	일본	· 구획정리에 의한 기성시가지 재생·재건축 · 일본의 재개발사업동향과 도시기반정비공단의 역할	· 우리나라 사회실험도입에 대하여 · 동경도시권 개인통행 조사	· 국립공원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 · 요코하마시 녹지보전시책의 전개와 과제	· 하수도사업에서의 ISO 14001의 도입에 대하여 · 일본 하수도사업단에서의 모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대응	

구 분		도시정책 및 교통	도시개발	공원·녹지	하 수 도	기타
'00 제18회	한 국	· 부산 도시재개발 사례 분석 · 한국의 도시정비사업 추진사례 및 특성분석 · 지방자치단체 도시 정보화 구축사례	· 교통혼잡 특별관리 지구 지정제도 도입 · 도시철도건설과 도시계획 · 지속적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철도 확충 방안	·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의 내용 · 사업지구내 Green Network 조성방안 · 광역도시계획과 개발 제한구역의 조정	· 한국의 21C 정책방향 · 하수고도처리개발현황 및 향후계획	
	일 본	· 민간활력을 활용한 도시개발 추진 · 도시의 재생, 재구축을 향한 토지 계획정리사업의 추진	· 동경도시권이 종합적 교통시책의 가는 방향 · 공공교통을 지원하는 가로사업	· 도시공원의 Universal Design에 대하여 · 도시녹화의 보급 개발방책에 대하여	· 소규모 하수도사업의 지원에 대해서 · 물순환에 있어서 하수도의 역할	
'01 제19회	한 국	·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운영결과 및 향후 발전 방향 · 한국의 도시계획 정보 체계 구축방안	·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 · 부산시 도시개발 정책의 평가와 과제	· 서울시 도시생태 현황도 제작 및 활용 · 도시경관의 효율적 관리방안 (강원도 경관중심)	· 한국의 하수도 정책 방향 · 친환경도시를 향한 서울시 하수도의 역할과 전망	· 한국 의 광역 도시계획 추진 현황
	일 본	· 도시계획 정보 시스템 현황 · 교통 결절점 정비에 대하여	· 도시기반정비공단의 새로운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 계획정리사업과 도시의 재생	· 새로운 녹지보전 기법 · 국영공원사업의 전개	· 하수도 기술개발 동향 · 오사카시의 침수 대책에 대하여	
'02 제20회	한 국	· 지리영상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시행정 효율성 강화방안 · 한국의 도시고속도로 현황	·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 서울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상암 신도시 조성 계획」 ·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를 통한 도심재개발 방향	· 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련 주요쟁점사항 · 숲을 통한 기온 저감 사례	· 수질개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유역별 하수도 설치·운영방안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정책방향	· 국토 이용체계 개편 방향
	일 본	· 철도에 의한 시가지 분단 해소책 · 도시 고속도로 정책의 새로운 전개(환경 Road Pricing제도 등)	· 민간활력에 의한 시가지 재개발 촉진 · 주민참가의 도시계획	· 장래의 공원녹지 시책방향 · 도시공원의 안전 확보 대책	· 합류식 하수도 개선의 실행동계획 · 요코하마 국제경기장의 하수 처리수 유효이용	· 도시 재생에 관하여

구 분	전체회의	도시정책 및 교통	도시개발	공원·녹지	하 수 도
'03 제21회 (한국)	한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도 개편내용 · 건축행정정보화소개 · 토지적성평가의 도입 현황 · 도시교통조사 방법의 개요 및 추진 현황	· 청계천 복원사업 · 난개발방지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의 쟁점과 제언 · 대도시 도심지역 재생방안	· 개항기 근대건축물 보전 및 주변지역 경관정비 방안 ·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의 권역별특성	·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 시설 통합 관리계획 ·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
	일본	· 도시재생에 대하여 · 가로의 정비로 인한 도시의 경관 형성 · 동경도시권의 물 자유동량 조사	· 방재공원 가구 정비사업 · 밀집시가지 대책	· 공원녹지 행정을 둘러싼 최근의 화재 · 오상·벽면·특수 녹화기술의 동향	· 유역관리 및 하수도 비와호 수질보전에 기여하는 하수도 사업
'04 제22회 (일본)	한국	·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 · 토지적성평가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 도시공통안 해소를 위한 대중 교통 육성방안	· 역사도시로서의 서울 개발 · 지속가능한 도심 재개발 방향	· 유흥지 관련 제도 및 사례 · 도시경관 관리방안	·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 수자원 분야의 국제협력
	일본	· 도시철도 건널목 대책 · 교통행동 특성에 대하여	· 마을 만들기 교부금 활용방안 · 츠쿠바 연구학원 도시 조성사업	· 도시 녹지보전법 개정에 대하여 · 옥외 광고물 개발에 대하여	· 모리가사키 수재생 센터 발전사업 · 하수오니 자원화 프로젝트
'05 제23회 (한국)	한국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방안 ·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군관리계획의 연계방안 · 서울 도심부 관리 정책의 변화와 향후 과제	· 청계천 복원사업 · 택지개발 주체별 주거단지특성 비교	· 서울시 경관관리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 · 경관생태계획 기법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 도시개발	·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추진방향 · 기존하수처리시설의 고효율 집적화
	일본	·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구축을 향해 · 일본에 있어서의 중량고속 교통시스템 · 관민의 제후에 의한 민간도시 개발의 추진에 대해	· 대도시권 교외부의 정비방책에 대해 · 도쿄 임해부의 마을 만들기과 도시경쟁 기구의 역할	· 방재공원 정비의 추진 · 지구온난화 및 히트 아일랜드 대책에 이바지하는 도시녹지	· 하수도에 있어서의 도시침수 대책의 새로운 전개 ·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의 신기술
'06 제24회 (일본)	한국	· U-city 도입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 토지개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방안	·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 서울의 뉴타운 사업추진방안	·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향 · 한국의 도시공원 조성현황과 개선방안	· 한국의 자연형하천 현황과 개선방안 · 합류식 하수관거의 퇴적방지를 위한 비굴착 단면변형 공법
	일본	· 중심시가지의 현상, 향후 지역만들기의 방향성 및 중심 시가지 활성화에 대하여 · 향후 도시교통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 교통결절점과 주변 시가지정비에 대해	· 대심도지하사용 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 · 큰 마을에 있어서 연쇄형 도시재생 노력에 대해	· 도시공원의 정비 및 관리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 공원녹지관련 법제에 대해	· 하수도분야 에너지 자립 지구온난화 대책 · 소화가스의 바이오 천연가스화에 대해

구 분		전체회의	도시정책 및 교통	도시개발	공원·녹지	하 수 도
'07 제25회 (한국)	한 국	· 국토균형발전과 혁신 도시 건설 추진	· 도시 포탈의 구축· 운영 사례 · 각종 건축시설물의 교통유발 특성과 관련제도 현황	· U-ECHO 시범도시 개발방향 · 한국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 및 과제	· 경관보호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종합개발제도 · 도시디자인 및 경관 관리 대상	· 다목적댐 상류 상수도 시설설치사업 추진현황 · 다중센서를 이용한 하수관거의 오점 조사 방법
	일 본	· 대도시권 정비에 대하여	· 집약형위구조의 재편을 지향하는 도시·지역 총합 교통전략의 추진 · 도시개발과 관련한 교통계획에 대하여	· 전국 도시재생의 추진에 대하여 · 민간 도시재생의 추진에 대하여	· 도시공원제도 등을 활용한 역사적· 문화적 자산 및 주변환경 보존·활용 · 사회·환경 공여 녹지평가시스템에 대하여	· 하수도의 노후화 대상(노령화 대상의 전체상) · 하수도의 노후화 대상(대처사례)
'08 제26회 (일본)	한 국	· 신청부의 주요 도시정책 이슈	· 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 문제 · 기후변화 대응 도시공간구조 측면의 정책방향	· 지속가능한 신도시 개발 추진 · 한국 중소도시의 도시재생 방안	· 개발제한구역의 사회적 효용 · 한강 르네상스 추진 방안	· 하수슬러지 저감 및 재활용 확대 방안 ·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관리현황
	일 본	· 저탄소형 도시지역 조성 추진과「환경 모델 도시」의 선정	· 도시계획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 종합 교통 전략과 전략적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추진	· 시가지 정비에 지역 매니지먼트 대응 · 중심시가지 활성화와 지역 조성 회사	· 역사·경관지역 조성을 위한 정책 사례 · 민간 참여를 포함한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공원 녹지 시책	· 하수도 자원·에너지 순환 형성 · 합류식 하수도 개선에 의한 수계리스크 저감
'09 제27회 (한국)	한 국	·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정책 추진방향	·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 한국의 BRT 추진 현황	· 우리나라의 U-city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 · 도시개발법 체계 및 추진현황	· 공원녹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 옥외광고물 규제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 댐상류지역 환경 기초시설 통합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 4대강 살리기를 위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CSOs) 관리 방안 및 투자계획
	일 본	· 새로운 도시정책의 기본적 방향	· 주차장시책 및 자전거 시책의 현황과 향후의 대책에 대하여 · 도시 환경시책의 통합화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도시간 연계의 추진	· 저탄소도시 만들기의 추진 · 柏崎市에서의 진재 부흥지부 사례에서 보는 UR(도시재생 기구)의 토털 코디 네이터	· 공원녹지·경관 행정에 대하여 · 「緑의 基本計画」 제도와 그 책정현황에 대하여 연계	· 재생수 이용의 추진 · 하수도분야에 관한 국제협력의 연계에 대하여

구 분		전체회의	도시정책 및 교통	도시개발	공원·녹지	하 수 도
'11 제28회 (일본)	한 국	· 한국의 도시재생 현황과 발전전략	·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현황 ·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현황	· 국토포럼 향상을 위한 국가건축정책 방향 · 도시개발제도 개선 방향 및 기대효과	· 도시공원 현황과 활성화방안 · 북서울꿈의숲조성과 영사례	· 하수 슬러지 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 방향 · 한국의 하수 재이용 추진현황
	일 본	· 환경공생형 도시 개발에 대하여	· 저탄소 도시조성 추진 - 저탄소 도시조성 가이드라인, 선도적 환경형성 촉진사업을 중심으로 · 집약형 도시구조의 실현을 향한 종합 교통 전략의 추진	· 유통업무단지 재정비 현황 및 발전방향 · 가와사키市の 환경 공생형 도시조성	· 도시의 녹지의 보전 및 녹화의 추진 · 국영 소와기념공원 개요	· 하수도의 물·자원· 에너지이용 · 하수도 분야 국제협력 연계방안
'12 제29회 (한국)	한 국	· 기후변화 재해에 안전한 도시 구축 방안	· Compact-City의 한국적 적용 및 논의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제도	· 자연과 문화를 보전 하는 도시개발방안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	· 개발제한구역 40년 : 성과와 과제 ·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 일본측 요청으로 제외 -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관련
	일 본	· 동일본 대지진 재해 대응에 대하여	· 일본의 저탄소 도시만들기 · 일본의 공공교통을 중심으로 한 마을 만들기와 그 평가	· 도시재생의 추진에 대하여 · 저탄소 마을 만들기 추진에 대하여 - 도시의 저탄소화 추진에 관한 법률안	· 녹지보전 제도와 생물다양성보전의 대처 · 국영공원의 정비 유지· 관리와 공원 녹지의 다양한 기능	
'13 제30회 (일본)	한 국	· 한국의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 배경 및 운영방안	·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관리방안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후관리 제도 도입	·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방안 · U-CITY 추진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 미래를 지향하는 치유의 공원, 용산 공원 · 개발제한구역 여가 공간 확충방안	* 한·일측 협의로 하수도분과는 제외
	일 본	· 도시구조의 재구축에 대하여	· 미래 도시 모습 실현을 향한 도시 교통 대응에 대하여 · 도시교통 조사수법의 개선을 향하여	·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대응 · 안심·안전한 마을 만들기	· 도시의 민유지 녹화추진 · 도시공원 노후화 대책과 국영공원의 정비·유지관리	

구 분	전체회의	도시정책 및 교통	도시개발	공원·녹지	비고
'14 제31회 (한국)	한국 · 도시의 녹색 공간을 활용한 저류공원 조성 방안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정책	-	-	-	· 한·일측 협의로 분과회의 없이 전체회의만 운영
	일본 · 도시재해에 대비하는 공원녹지 · 방재·안전마을 만들기	-	-	-	
'15 제32회 (일본)	한국 · 한국의 도시재생 사업과 금융지원 · 민간투자를 통한 공원조성 방안 및 융산국가공원 조성 · 한국의 도시방재 정책	-	-	-	· 한·일측 협의로 분과회의 없이 전체회의만 운영
	일본 · 콤팩트시티의 본격적 실시와 지역활성화 · 관민 연계한 공원 녹지의 정비, 관리, 운영 · 환경공생형 도시 개발의 해외전개	-	-	-	
'17 제33회 (한국)	한국 ·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과 지원정책 ·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	-	-	· 한·일측 협의로 분과회의 없이 전체회의만 운영
	일본 · 도시재생사업의 금융 지원	-	-	-	

라. 한·중 도시정책협력회의

○ 목적

- 한·중 양국 간 도시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분야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증진

* 제12차 한·중 경제장관회의('13.12.30)에서 국장급 회의를 신설하기로 합의

○ 개요

- 개최시기 : '15년부터 매년 양국을 번갈아가면서 개최
- 대표단 구성 : 양국의 국장급이 단장이며 통상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 학회, 국책연구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으로 구성 (한국 : 도시정책관, 중국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전규획사)
- 회의진행 :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등 실시

* 구체적인 회의 형태 등을 위해 양국 협의중

○ 역대 도시정책협력회의 의제('15~계속)

구 분		의 제	기 타
'15 제1회 (중국)	한국	· 한국의 도시정책과 한·중 협력방안	
	중국	· 신형도시화 중점전략 및 정책방향	

※ 한·중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 현황

(민간) 韓 스마트도시협회 - 中 스마트도시발전연맹 MOU 체결 (15년)

(공공) 韓 한국토지주택공사 - 中 CCUD(도시개혁센터) MOU 체결 (16년)

(정부) 韓 국토교통부 - 中 발전개혁위원회(스마트시티 담당) MOU 체결 (18년)

본 MOU 후속 조치로 '한·중 도시정책협력회의'를 '한·중 스마트시티 협력회의'로 개편하여 '20년 상반기 중 제1회 한·중 스마트시티 협력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사태로 인해 '20. 7월 현재 개최시기 미정

마. 한·인니 스마트시티 협력회의

○ 목적

- 한·인니 양국 간 스마트시티 분야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환을 위한 "스마트시티 분야 공동 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협의

* '16.10월 HABITATⅢ 회의에서 “한-인니 간 수자원·도로·스마트시티 관련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 추진 중

○ 개요

- 개최시기 : 제1회는 '17년 한국(일산 킨텍스, '17.9)에서,
제2회는 '18년 인니(자카르타, '18.7)에서 각각 개최
* '19년 미개최
- 대표단 구성 : 양국의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여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 학회, 국책연구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이 참여
(한국 : 도시정책관, 인도네시아 : 공공사업부 국장급)
- 회의진행 :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등을 실시하고, 현장 답사

○ 의제(안)

구 분		의 제	기 타
'17 제1회 (한국)	한국	·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소개 · 한국의 주택·택지개발 경험에 대한 소개	(한) 도시정책관 (인) 공공사업부 주거청
	인니	· 인도네시아의 스마트시티 정책 현황 · 인도네시아의 도시 개발 계획	
'18 제2회 (인니)	한국	· 한국의 도시, 스마트시티 및 녹색도시 정책 소개 · 한국의 TOD 사업경험 소개	(한) 도시정책관 (인) 공공사업부 주거총국장
	인니	· 인니의 도시, 주거인프라 정책 소개 · 인니의 TOD 및 저소득층 주택정책 등 소개	

바. 한·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협력회의

○ 목적

- 한·말레이시아간 스마트시티 분야 상호 협력체계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예상성과 등을 공유

*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위해 말레이를 우선협력대상으로 선정('18.9), 정상순방 계기 장관급 협력 MOU를 체결('19.3)하고, 코타키나발루에 스마트시티 신도시(LH) 및 스마트 물관리(K-water) 도입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추진

○ 개요

- 개최시기 : WSCE 계기 일산 킨텍스에서 제1회 협력회의를 개최(19.9.4.)
- 대표단 구성 : 양국 중앙정부·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
(한국 : 도시정책관, 말레이시아 : 주택지방정부부 차관보, 코타키나발루시 국장 등)
- 회의진행 : 전체회의 실시

○ 의제(안)

구 분	의 제	기 타
'19 제1회 (한국)	· 코타키나발루 협력사업 추진현황 보고	LH, K-water
	· 11월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 계기 발표 성과 검토	
	· 스마트시티 분야 향후 협력방안	

2020 도시업무편람



II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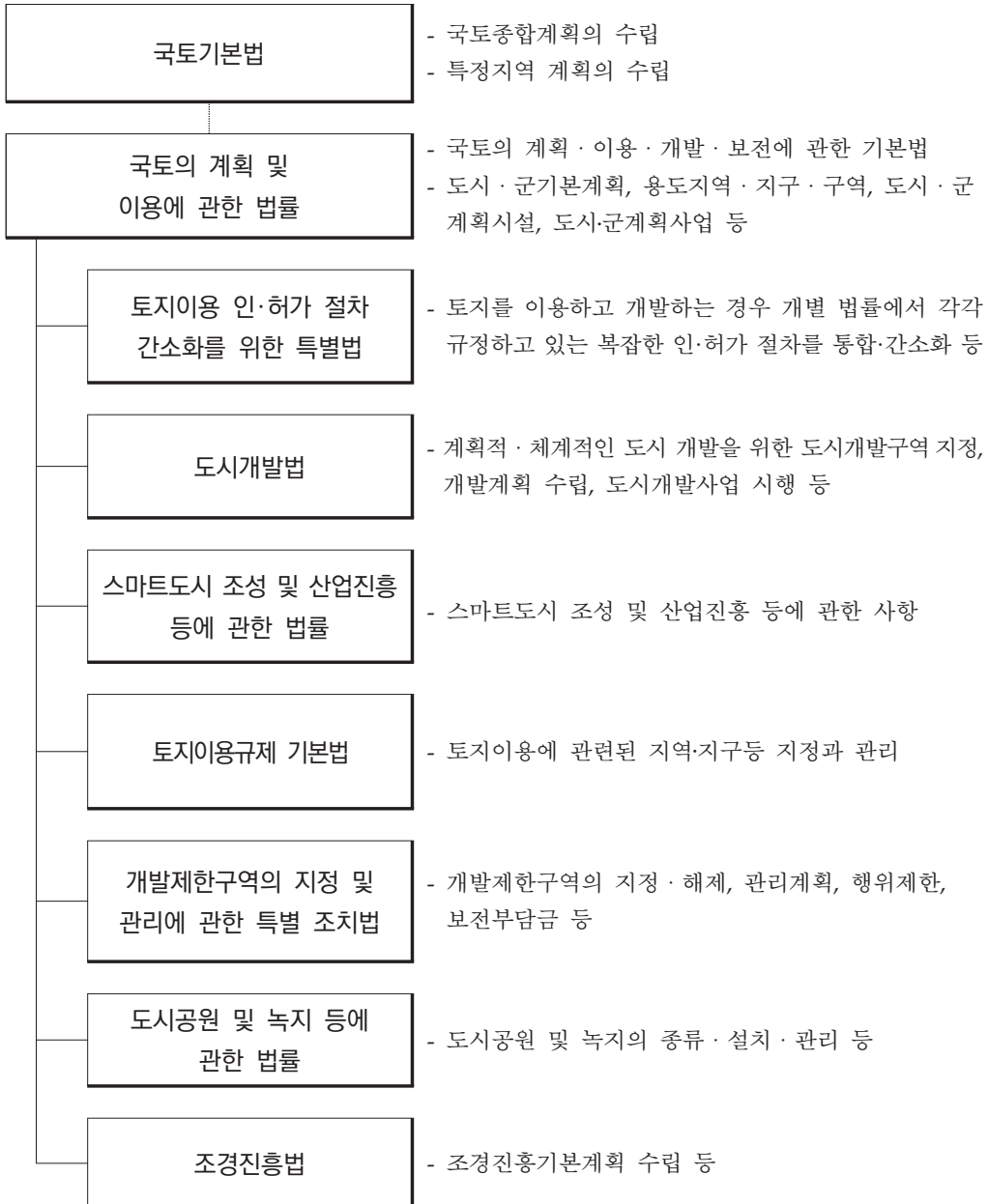
소관법률

- 1. 법령현황 45
- 2. 법령 체계도 46
- 3. 법령의 주요내용 47

1. 법령현황

법률명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훈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동법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 •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 성장관리방안수립지침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 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위한도시계획수립지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운영세칙 •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및 운영 규정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동법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 토지이용 안하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지침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동법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수립지침 •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 유비쿼터스도시 기술 가이드라인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세칙 •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공모에 의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시행지침
• 도시개발법	• 동법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 도시개발업무지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동법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동법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자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규정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규정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 동법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 •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지침 • 도시자연공원구역의지정변경등에관한지침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등에 관한지침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 조경진흥법	• 동법시행령	• 동법 시행규칙	• 조경 설계기준

2. 법령 체계도



3. 법령의 주요내용

법률명	제정일자	주요내용	비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2. 2. 4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의 통합)	·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시 · 국토의 이용을 위한 용도 구분 · 용도지역별 관리의 의무규정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변경 제한	2003.1.1 시행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2015. 1. 20	·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개발행위, 건축, 공장설립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	2016.1.21 시행
· 도시개발법	2000. 1. 28	·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및 정의 · 개발계획의 수립 등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등	2000.7.1 시행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2008. 3. 28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지원 등 · 스마트도시 규제특례제도	2008.9.29 시행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05. 12. 07	· 토지이용에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주민의견 청취절차 및 지형도면 고시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활용	2006.6.8 시행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1. 1. 28	· 개발제한구역 관리원칙 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 등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등	2000.7.1. 시행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980. 1. 14	· 공원녹지기본계획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도시자연공원구역 · 녹지의 설치 및 관리	1980.6.1 시행
· 조경진흥법	2015. 1. 6.	· 조경진흥기본계획 · 전문인력양성기관 ·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 · 조경진흥센터 등	2016.1.7. 시행.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추진배경

- '94년에 도입된 준농림지역 제도는 부족한 주택·공장용지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계획기법의 부족으로 난개발을 초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여 도시적 용지가 부족하므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개발을 해소하는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구축 필요성 제기
- 준농림지역 등 90년대부터 완화된 토지이용규제는 200만호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공급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난개발 등 부작용 초래
- 도시적 용지가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지속적인 국토개발도 필요
 - 도시적 용지비율 : 5.3% ⇒ 9.1% (2020년, 제4차국토종합계획)
 - (선진국의 도시적 용지비율 : 일본 7%, 영국 13%)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난개발방지 종합대책」(2000.5.30) 발표
- 우선 난개발의 주요 원인인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
-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

나. 추진경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 제정추진
 - 관계기관 협의 : 2000.9.9~10.10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00.9.29
 - 법률(안) 입법예고 : 2000.10.13~11.3
 - 법제처 심사 : 2000.11월~2001.10월

- 국무회의 심의 : 2001.10.23
- 국회 제출 : 2001.10.29
- 국회 본회의 의결 : 2001.12.7
- 제정 · 공포 : 2002.2.4
- 국토계획법 하위규정 제정추진
 -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운영방안 공청회 개최 : 2002.3.15
 - 관계기관 협의 : 4~6월
 - 지자체 공무원 회의 개최 : 4.11~12
 - 시행령 ·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5.17~6.7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7.22~10.2
 - 법제처 심사 : 10~12월
 - 국무회의 심의 및 제정공포 : 12월
 - 지침(안) 관계기관 협의 · 확정 : 9~12월
 - 조례표준안 설명회(국토도시학회 주관) : 10.23
 - 지자체 공무원 교육 : 12월~2003.1월
- 국토계획법령 시행 : 2003.1.1
- 지자체 조례 제정 : 2003.1월~6월

다. 주요개편내용

□ 계획체계의 개편

- 전국토를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에는 도종합계획을 수립(국토기본법)
 -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도종합계획을 갈음
-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각 시 · 군이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계획(郡지역은 郡계획)을 수립

- 도시(郡)기본계획 : 시·군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제시
- 도시(郡)관리계획 : 집행적 계획으로서 5년마다 재정비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개편

- 종전 5개 용도지역 → 4개 용도, 9개 지역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
⇒ 도시(4개지역), 관리(3개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

-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기존체제 유지)
- 준도시 + 준농림 →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
 - 관리지역의 객관적 세분기준 제시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제도 도입
- 관리지역의 관리방안
 - 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Negative → Posi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개발밀도를 녹지지역 수준으로 강화
 - 원활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계획수립전까지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강화 운영
- 용도지구·구역의 지정 등 도시계획수법 다양화
 - 경관지구·미관지구 등 도시지역에만 지정하던 각종 용도지구를 비도시지역에도 지정·운영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행위제한을 별도로 규정

라. 친환경적·계획적 개발 유도

- 종전의 준농림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하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 도입
 - 준농림지역의 소규모·산발적 개발을 집단화
 -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부담하도록 하되, 건폐율·용적률·건축제한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 「개발행위허가제」를 강화하여, 법령에 맞더라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발을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허가

- 개발행위허가대상 : 건축물건축,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 기반시설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불허가·조건부 허가를 결정하되, 일정규모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 기반시설용량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기반시설연동제」 도입
 - 도심지와 같이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개발밀도를 제한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 도입
 -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마.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강화

-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이용계획심의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대폭 강화
- 택지개발촉진법 등 타법령에 의한 지구지정이나 대규모 개발사업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는 등 전문가 참여를 확대
- 위원회 심의사항의 확대를 감안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
-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배치·형태 등 건축관련사항은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

바. 최근 국토계획법 개정 내용

<'17.4. 법률 제14795호>

□ 개정이유

- 현행법에서는 토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경관지구 등을 비롯하여 크게 10개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정비하는 동시에 복잡하게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화하는 한편, 복합용도지구를 도입하여 최근의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사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당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제3호).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심의는 도시계획·건축 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완화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각각 통합하여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간소화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 신설되는 복합용도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5항 및 제76조제5항제1호의3 신설).
-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제5항).

- 소규모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적용기준을 완화함(안 제84조제3항).
-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자가 공공시설관리자에게 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비용의 계량화가 어렵고 실제 활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폐지하여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03조).

〈'19.8. 법률 제16492호〉

□ 개정이유

-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은 2012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정 당시의 내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새로운 도시정책 방향이 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되게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행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2019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고, 스마트도시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법에서는 도로·공원·철도 등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없도록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기가 도래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으면서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된 후 실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에 저출산 대응 등을 추가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 및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을 추가함(제3조제9호 신설).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유효기간을 2019년에서 2024년까지로 5년 연장함(현행 제29조제2항제5호 삭제, 제40조의2 및 법률 제1297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
-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력,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따르도록 함(제63조제4항 신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 실시계획을 작성되거나 인가 받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 그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 그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제88조제7항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실시계획 인가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거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제137조 제1항).

사. 최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내용

<'16.12. 대통령령 제27744호>

□ 개정이유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신청의 절차 및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용도지구 정비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재검토 기준을 도입하고,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용도지구 정비를 위한 재검토 기준(제29조제1항제2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여부, 해당 용도지구와 중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 해당 용도지구 존치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도록 함.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대(제35조제1항제1호)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주차장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함.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방법 등(제42조의2 신설)

- 1) 토지의 소유자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하는 경우 입안권자가 입안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으로 정함.
- 2)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입안권자가 입안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외의 사유로 해제 입안을 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한 경우 또는 입안권자가 해제 입안을 하였으나 해당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으로 정함.
- 3) 토지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결정권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등으로 정함.
- 4)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하면 지방의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 이전 단계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함.
- 5)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을 하기로 입안권자가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할 것을 권고받은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거나 권고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되, 이전 단계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함.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예외(제83조제7항 신설)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제한은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건축제한 중 일부 사항만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17.12. 대통령령 제28553호〉

□ 개정이유

- 토지이용 체계의 간소화·합리화 및 다양한 토지수요의 대응을 목적으로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여 경관지구·미관지구 등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95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구 체계에 맞추어 용도지구의 종류를 개편하고 건축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도시방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할 때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확대를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 확대(제21조제2항제4호다목)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 단계에서 시행하는 재해취약성 분석의 대상에 시·도지사 등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하는 경우를 추가함.
- 용도지구 종류의 통·폐합 및 세분화(제31조제1항 신설, 제31조제2항 및 제3항)
 - 미관지구·경관지구가 통합된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세분화하고, 기존의 시설보호지구·보존지구가 통합된 보호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하는 등 세부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함.

- 복합용도지구의 지정가능 지역 및 지정기준 규정(제31조제6항, 제31조제7항 신설)
 -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도록 지정기준을 정함.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 마련(제85조제3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해당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19.8. 대통령령 제30031호>

□ 개정이유

- 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에 민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농림지역에 대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건축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등 선형(線型) 기반시설을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에 포함하며,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조례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을 추가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을 낮추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모든 종류의 기반시설을 시장 및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절토·성토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방화지구 지정을 장려하기 위해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고, 법령의 명확한 집행을 위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농림지역에 대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건축제한 요건 완화(제19조의2 제3항 및 제79조제3항)
 -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농림지역을 추가함.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농림지역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 요건을 완화함.
- 선형 기반시설을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에 포함[현행 제21조제2항제4호라목2) 삭제]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인 재해취약성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던 도시지역 외의 지역 내 도로·철도·가스 등 선형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을 재해취약성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여 선형 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도모함.
- 조례를 통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추가 세분화 및 용도지역별 용적률 유연화(제30조제2항 신설, 제85조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등은 법령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추가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음.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등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하한을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한 시장 및 군수의 결정 권한 확대(제45조제3항)
 -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모든 종류의 기반시설을 시장 및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되, 철도·항만·공항 등 다수의 시·군과 연계된 기반시설 중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시장 및 군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서 제외함.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 강화(제51조제2항)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도 옹벽의 설치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함.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등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상향(제84조제6항제1호)
- 공업지역에 대한 방화지구 지정을 장려하기 위해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 70퍼센트인 건폐율의 상한을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함.

3-2.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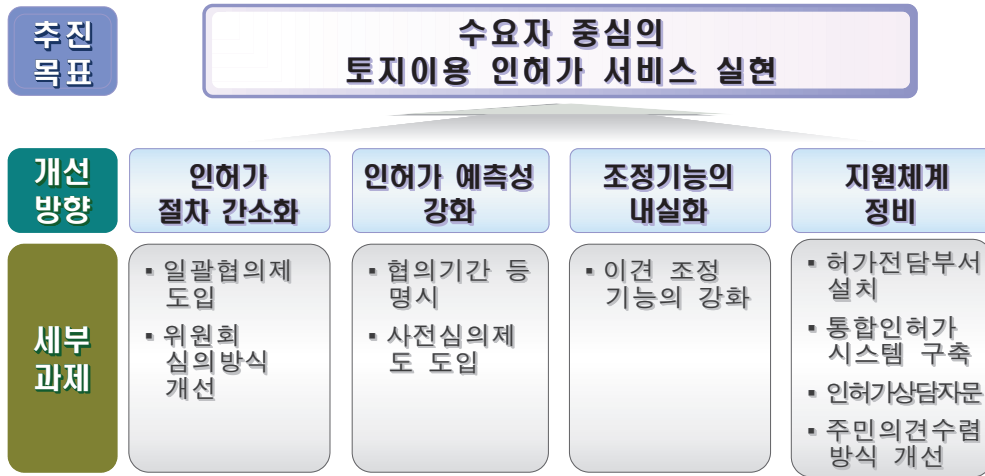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 국민들은 토지이용 인허가가 복잡하고, 인허가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지원체계가 부족하다고 인식
 - * 최근 1년('12.7~'13.6) 국토부 접수 개발행위허가 민원 : 2,216건(도시 관련 민원의 24%)
- 특히, 건축물 건축(건축법), 공장설립(산집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등 소규모 인허가 사업은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항
 - * '12년 전국 개발행위허가(건축, 공장설립 의제포함) : 89,209건, 약 413km²
- ⇒ 인허가 절차 개선 및 OneStop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15.1.20) * 16.1.21 시행
 - *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5.1) 등에 포함

【그간의 경위】

- 대통령 공약 과제로 '토지이용 관련 통합 인·허가제 도입' 발표
-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인허가 간소화 방안** 논의('13.5~)
- '13.10월 국가정책조정회의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안 필요성에 공감**
 - * (총리 지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실시
- '14.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시 **30대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으로 선정

나. 기본 방향



다. 주요 내용

세부과제	개선방안	추진시 성과
일괄협의제 도입	▪ 관계기관 협의기간 약 3~4개월 소요 ⇒ 관계기관 협의를 모두 동시에 진행	최소 60일 인허가 기간 단축
개별 위원회 통합심의 등	▪ 인허가시 개별 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함 ⇒ 위원회의 통합운영 추진	최소 60일 이상 단축
인허가 협의 기간 등 명시	▪ 인허가 협의기간 장기화 ⇒ 협의기간 및 서류 보완회수 등을 명시	인허가 장기화 요인 제거
사전심의 제도 도입	▪ 모든 인허가 조건 충족 후 인허가 신청 가능 ⇒ 요건 미충족 사전심의제도 도입	불필요한 투자비용 손실 예방
이건 조정기능 강화	▪ 민원인이 직접 조정하여 조정 장기화 ⇒ 행정기관 주도의 조정 추진	조정의 실효성 제고
허가전담부서 설치	▪ 인허가 전담조직 부재 ⇒ 허가전담부서 설치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서비스 등 제공
통합인허가지원 시스템 구축 등	▪ 시스템 미비 ⇒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대국민 인허가 서비스 제공

3-3. 도시개발법

가. 제정이유

- 그 동안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등과 같은 단일목적의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어 신도시의 개발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는 바,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함(법 제3조)
-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도 조합, 순수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 등의 형태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
-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부문에서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조제5항, 제6항)
- 도시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환지방식 또는 양자 혼용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
-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민간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 하되,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용권을 갖게 함으로써 수용권의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함
(법 제22조제1항 단서)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 되는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기대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어 토지소유자는 아무런 노력 없이 개발이익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지정 시점을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시점으로 보아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지가에 반영되기 전의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제3항)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23조)
-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과 개발부담금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함(법 제60조 내지 제61조)

다. 목적

도시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토록 함

- 연 혁
도시개발법은 구)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시가지 조성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제도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제도를 통합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도시개발법의 제정으로 구)도시계획법(시가지조성 사업 제도 등)에 의한 각종 개발사업과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폐지되었음

- 도시개발법 제정 2000. 1. 28. 법률 제 6242호
 - 도시개발법 전부개정 2008. 3. 21 법률 제 8970호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12. 1. 17 법률 제 11186호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13. 3. 22 법률 제 11650호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13. 7. 16 법률 제 11923호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14. 5. 21 법률 제 12641호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15. 8. 11 법률 제 13479호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18. 4. 17 법률 제 15600호
-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정 2000. 8. 2 대통령령 제 16933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8. 9. 22 대통령령 제 21019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7. 17 대통령령 제 23957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3. 9. 17 대통령령 제 24757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11. 4 대통령령 제 25703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5.11. 4 대통령령 제 26618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8. 16 대통령령 제 27454호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12. 5 대통령령 제 28459호
-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정 2000. 8. 30 건설교통부령 제 260호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8. 9. 22 국토해양부령 제 53호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 7. 18 국토해양부령 제 498호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9. 10 국토교통부령 제 26호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11. 3 국토교통부령 제 243호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12. 29 국토교통부령 제 475호
-
- 도시개발업무지침 제정 2000. 10.
 -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2012. 9.
 -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2014. 9.
 -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2015. 6.
 -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2016. 11.
 -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2020. 2.

○ 구 성

본법은 6장 85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제정·구성 되어 있음

3-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가. 제정이유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을 도시의 기반 시설 등에 결합시켜 도시의 주요 기능에 관한 정보를 서로 연계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017.3.21.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법률 명칭 변경

나. 주요내용

-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스마트도시의 기본방향, 단계별 추진전략, 사업추진체계,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등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여 작성하도록 함
-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법 제14조)
 -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시행기간,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시행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법 제19조)
 -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로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설치·운영(법 제23조)
 -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국가시범도시,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2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스마트도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시책(법 제25조)
 -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진흥 등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지원 등(법 제35조~제46조)
 -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예산, 각종 특례(개인정보, 자율차, 공유차 등) 적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운영 및 특례(법 제47조~제53조)
 -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을 통해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일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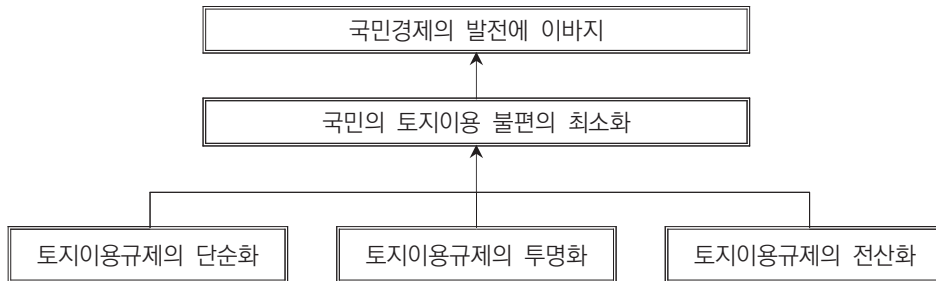
3-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가. 추진배경

- 경제적·사회적인 발전과 더불어 토지이용규제제도가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유사내용의 지역·지구가 중첩적으로 지정되는 등 복잡·다기화 됨
 - 따라서,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의 원칙으로 토지이용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토지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됨
- '04.2.20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토지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 '04.3월 재정부에 총괄T/F를 두고, 관계부처 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토지구제 합리화반 등 실무작업반을 구성
- '04. 6.25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방안을 확정하고 규제개혁추진회의('04.8.27)에 보고
- '05. 1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공포(시행 '06. 6.8)되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포('06. 6.7)됨

나. 제정 목표



다. 주요 내용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을 제한하고, 기존의 지역·지구등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 지역·지구등의 지정·운영실적 및 행위제한 내용·절차 평가 •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강화 제한 • 사업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규정방식 일원화 • 유사목적·중첩규제 지역·지구등의 통·폐합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지역·지구등을 지정시 일반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주민 의견청취 및 지형도면등 고시 등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토지 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 주민의견 청취절차 의무화 • 지역·지구등 지정시 지형도면등의 고시 의무화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토지이용규제의 정보화를 통한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과 국민의 토지이용편의 제고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발급 • 규제안내서 제공

3-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 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규제를 함에 따라 주민생활환경의 상대적 낙후와 각종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미비로 그 지정근거인 도시계획법 관련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절차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정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위헌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근거 및 절차를 도시계획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화 함(법 제3조 내지 제9조)
-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이용 및 보전, 건축물의 건축·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등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11조).
- 종전에 하위법령에 규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근거와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체육시설 및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함(법 제11조).
- 개발제한구역안의 집단취락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일정 호수이상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취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취락지구 안에 건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에서 그 소요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등에 대하여 당해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법 제17조 내지 제19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함(법 제21조).

3-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가. 제정이유

-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역사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묘지공원·체육공원·도시농업공원 및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으로 구분함.
-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죽목의 벌채·재식이나 토석채취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함.
- 일정기준이상의 시설을 갖춘 도시공원은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공원제도 변천

- 도시계획법(1962년) → 공원법(1967년) → 도시공원법(1980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년)
- 도시계획법(1962년~) 우리나라의 공원과 관련된 최초의 법, 공원을 도시계획시설의 한 종류에 포함, 공원계획 수립근거 등 규정
- 공원법(1967년~) 공원만을 위한 최초의 모법, 국립공원 · 도립공원 ·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으로 구분, 도시공원 개념에 녹지를 포함
- 도시공원법(1980년~) 종전 공원법을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분리
 - 자연공원법은 전국토 대상, 도시공원법은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함
 - 도시공원 종류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구분
 - 녹지를 공원에서 분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년~)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공원의 종류에서 제외,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도입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공원일몰제 도입 등

3-8. 조경진흥법

가. 제정이유

- 조경은 녹색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폭설,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도시재생, 저영향 개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등 친환경적 패러다임을 실천하고 있는 분야임.
- 세계의 유명도시들은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등 세계적 수준의 조경물을 조성하고 조경분야를 진흥시켜 도시민에게 쾌적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조경물이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관광명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조경분야의 양적·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조경물이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조경물의 체계적인 조성·관리와 품질 향상 등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조경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의도의 구현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조경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신고나 등록을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에 한정하여 적정한 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2020 도시업무편람



III

Chapter

도시계획 분야

- 1. 광역도시계획 75
- 2. 도시·군기본계획 78
- 3. 도시·군관리계획 81
- 4. 용도지역·지구·구역 84
- 5. 지구단위계획 96
- 6. 도시·군계획시설 104
- 7.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108
- 8. 개발행위허가 112



1. 광역도시계획

가. 광역도시계획 개요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군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절한 성장관리를 도모
-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됨)

나. 계획의 주요내용

- 계획의 목표와 전략
-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 공간구조 구상
 -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 주요지표 제시
 - 공간구조의 골격구상 : 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 생활권의 설정
- 부문별 계획

-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 문화·여가공간계획	- 광역시설계획
- 녹지관리계획	- 경관계획
- 환경보전계획	- 방재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 집행 및 관리계획

다. 계획수립절차

○ 광역계획권의 공간범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이원화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광역계획권 지정(국토부장관) → 기초조사 → 공청회 개최 → 관계 지자체(의회) 의견청취 → 광역도시계획안 수립(관할 시·도·시·군·구 공동) → 승인신청(수립권자→국토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승인 → 공고열람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 광역계획권 지정(도지사) → 기초조사 → 공청회 개최 → 관계 지자체(의회) 의견청취 → 광역도시계획안 수립(관할 시장·군수 공동) → 승인신청(수립권자→도지사) →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승인 → 공고열람

라. 계획수립 대상권역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행정중심복합도시, 창원권, 광양만권, 전주권, 청주권, 전남 서남권, 제주권, 공주역세권, 내포신도시권(14개 권역)

마. 광역계획권 지정현황(2018. 12월 기준)

권역별	면적(km ²)	인구(명)	해 당 도 시	비고
수도권	6,852.1	18,317,664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29시 4군)	
부산권	1,700.7	4,342,437	부산, 양산, 김해 (3시)	
대구권	4,978.2	3,110,945	대구, 경산, 영천, 칠곡, 고령, 성주, 군위, 청도 (3시 5군)	
광주권	3,259.0	1,716,038	광주, 나주, 장성, 담양, 화순, 함평 (2시 4군)	
대전권	4,638.0	2,524,369	대전, 공주, 논산, 연기, 금산, 옥천, 청원, 청주 (4시 4군)	
행정중심 복합도시	3,597.0	2,582,900	대전, 연기, 공주, 계룡, 천안, 청주, 청원, 진천 (5시 4군)	

권역별	면적(km ²)	인구(명)	해 당 도 시	비고
창원권	1,613.5	1,429,557	마산, 창원, 진해, 함안 (3시 1군)	
광양만권	5,279.2	728,000	여수, 순천, 광양(3개시)	
전주권	2,457.0	1,428,000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4시1군)	
청주권	3,403.1	966,192	청주,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증평(1시6군)	
전남 서남권	3,711	1,076,000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역(1시 6군)	
제주권	1,847.8	553,864	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2시 2군)	제주특별 자치도수립
공주역세권	2,584.0	502,000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3시, 2군)	
내포 신도시권	3,496.0	1,146,000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3시, 3군)	

바. 광역도시계획수립현황(2018. 12월 기준)

구 분	수립	변경	목표년도	계획구역(km ²)	계획인구
광주권	'04.02	'10.01	2020	2,955.00	220만
부산권	'04.05	'09.05	2020	1,898.80	520만
대구권	'05.01	'10.01	2020	4,978.7	311만
대전권	'05.01	'10.01	2020	4,633.87	199만
청주권	'01.12	'10.12	2020	1,425.00	143만
행정중심복합도시	'07.06	-	2030	3,597.0	370만
창원권(舊마창진권)	'05.12	'12.10	2020	1,623.6	220만
광양만권	'06.05	-	2025	5,279.17	115만
수도권	'07.07	'09.09	2020	6,851.1	1,831만
전주권	'09.09	-	2025	2,457.5	183만
전남 서남권	'09.03	-	2025	3,711.0	90만
제주권	'07.06	-	2025	1,848.2	80만
공주역세권	'16.12	-	2030	2,584.0	50.2만
내포신도시권	'16.12	-	2030	3,496.0	114.6만

2. 도시·군기본계획

가. 제도개요

1) 도시·군기본계획 개요

- 도시·군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
- 장기적으로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수립대상지역

- 특별시, 광역시, 시, 군(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
 -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군으로서, 계획수립 기준년도 현재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
 -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

3) 목표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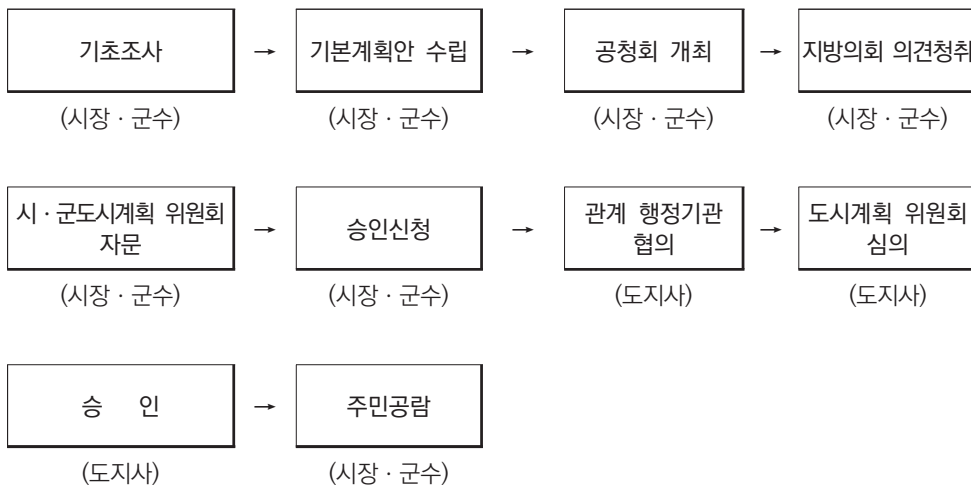
-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함
- 시장·군수는 5년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

4) 계획의 주요내용

- 지역의 특성과 현황

- 계획의 목표와 지표의 설정 (계획의 방향·목표·지표 설정)
- 공간구조의 설정 (개발축 및 녹지축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
- 토지이용계획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 기반시설 (교통, 물류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계획 등)
- 도심 및 주거환경 (시가지정비, 주거환경계획 및 정비)
- 환경의 보전과 관리
- 경관 및 미관
- 공원·녹지
- 방재·안전 및 범죄예방
-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 (고용, 산업, 복지 등)
- 계획의 실행 (재정확충 및 재원조달, 단계별 추진전략)

나. 계획수립절차



다. 도시·군기본계획수립 현황

※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도시계획현황

구 분	市 급(85개)	郡 급(43개)	미수립(34개)
특별시 광역시 (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7)	-	-
경기 (31)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광명시*, 김포시, 군포시, 광주시*, 이천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28)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3)	-
강원 (18)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7)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11)	-
충북 (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3)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8)	-
충남 (15) √미수립 3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8)	금산군,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4)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3)
전북 (14) √미수립 6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6)	무주군*, 고창군(2)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6)
전남 (22) √미수립 10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5)	담양군*, 화순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7)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10)
경북 (23) √미수립 7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10)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울릉군* (6)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7)
경남 (18) √미수립 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8)	창녕군*, 남해군* (2)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8)
세종 (1)	세종시* (1)		
제주 (2)	제주*, 서귀포* (2) ※제주특별법 적용	-	-

* 목표연도별 : 2020년 67개, 2025년 16개, 2030년 43개, 2035년 2개(·: 2025, *: 2030, **: 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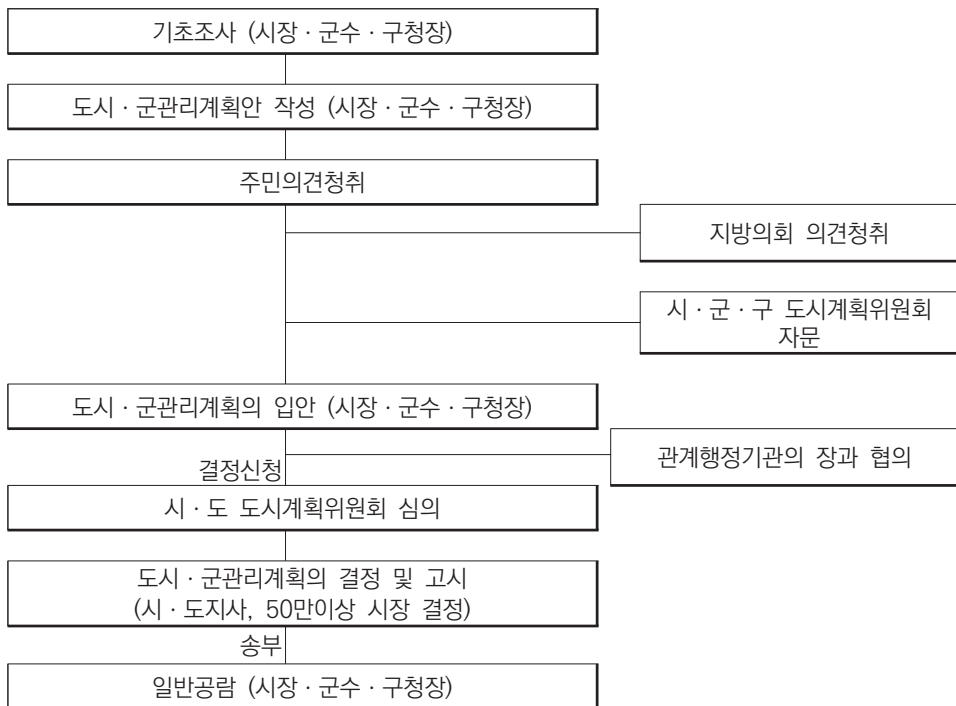
3. 도시·군관리계획

가. 제도개요

-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
- 도시·군관리계획의 성격
 -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
 -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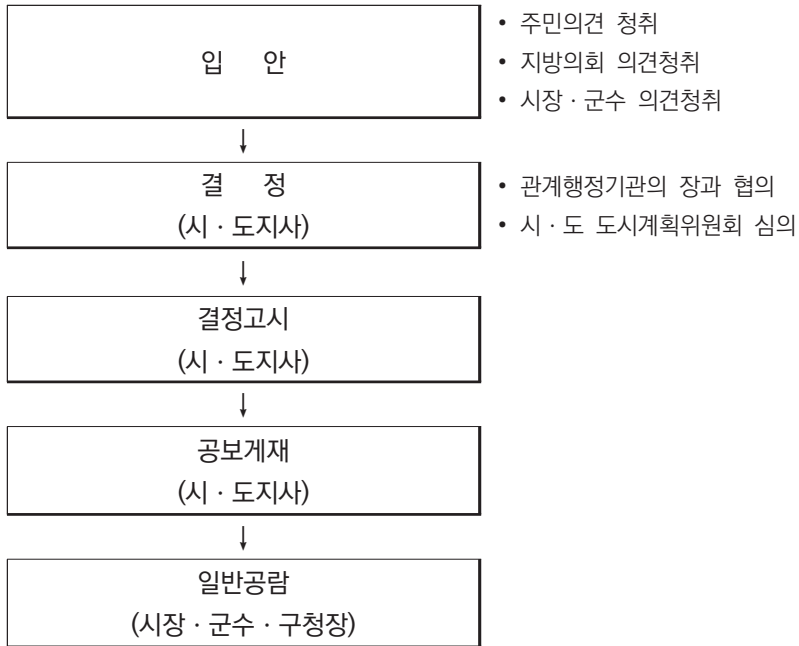
나. 계획수립 절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경우(시·도지사, 50만이상 시장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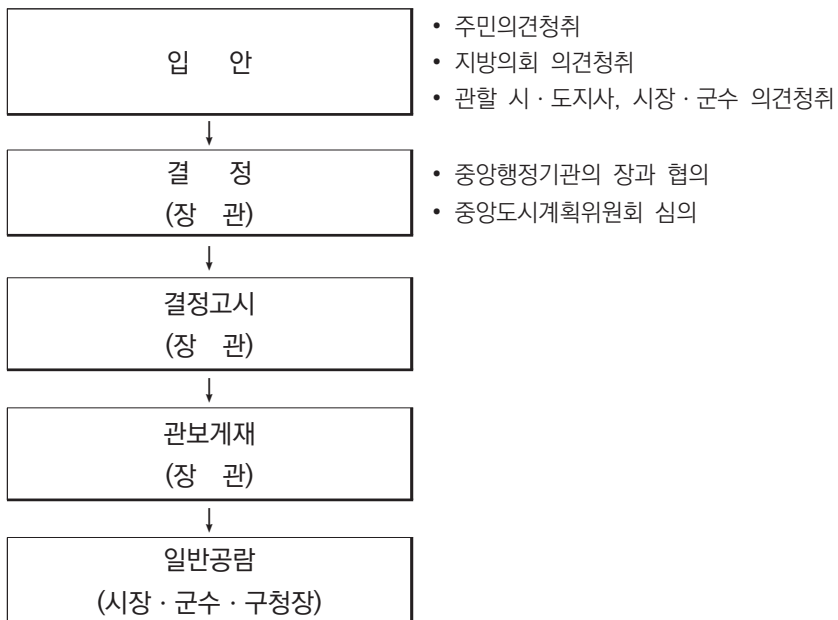


*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은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시·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는 경우



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도시 현황

연도	도시수	시급	군급
2018	162	85	77

※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도시계획현황

라. 지형도면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면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고시내용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 시켜야 함
- 지형도면고시 절차도



4.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가. 용도지역 제도개요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 경관 · 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도시내 지역별 기능이나 특성에 따라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9개 지구가 있으며, 지구는 지역과는 달리 토지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경관 ·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지역실정에 맞게 시 · 도 조례로 세분하여 용도지구 명칭 및 지정목적, 행위제한 사항 등을 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시 · 도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 ·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 신설만 허용
- 용도지구의 지정
 - 계획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지구지정(변경)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지정절차 :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름
- ※ 2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나. 용도지역의 구분

지 역(법)		세 분(시행령)	지 정 목 적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 제2종전용주거 제1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중 고층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주거기능에 상업 및 업무기능 보완
	상업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 담당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공업지역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 공업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경공업 수용 및 주·상·업무기능의 보완
	녹지지역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제한적 개발허용
관 리 지 역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 - -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농·임·어업생산을 위해 필요,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 계획·체계적관리 필요
농림지역		-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	자연환경등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다. 도시지역 시도별 지정현황

(단위 : km²)

구 분	도시수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계	162	17,789	2,684	335	1,198	12,628	944
		100%	15.1%	1.9%	6.7%	71.0%	5.3%
서울	1	606	325	26	20	235	0
부산	1	941	144	25	64	546	161
대구	1	798	121	18	41	618	0
인천	1	580	120	23	64	288	85
광주	1	480	87	9	25	359	0
대전	1	496	71	9	13	403	0
울산	1	756	67	8	81	515	84
세종	1	143	28	6	9	99	2
경기	31	3,376	567	62	132	2,609	5
강원	18	1,029	141	18	39	794	37
충북	11	731	94	12	62	563	1
충남	15	905	130	15	116	589	55
전북	14	886	124	17	64	608	74
전남	22	1,718	174	23	168	1,176	178
경북	23	1,867	216	27	154	1,365	105
경남	18	2,008	222	29	140	1,475	141
제주	2	471	53	7	5	389	16

※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도시계획현황



다-2. 도시지역 연도별 변화추이

(단위 : km²)

연도	도시지역 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2006	17,043	2,179	267	807	12,677	1,113
2007	17,190	2,283	279	834	12,705	1,088
2008	17,317	2,351	294	877	12,620	1,175
2009	17,420	2,402	300	964	12,621	1,133
2010	17,492	2,494	311	1,049	12,666	972
2011	17,559	2,536	317	1,075	12,704	927
2012	17,587	2,563	323	1,109	12,682	910
2013	17,593	2,580	325	1,122	12,683	884
2014	17,597	2,595	328	1,142	12,662	870
2015	17,613	2,620	329	1,158	12,647	859
2016	17,610	2,647	331	1,167	12,626	839
2017	17,636	2,670	331	1,181	12,617	837
2018	17,789	2,684	335	1,198	12,628	944

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종 전				현 재					
용도지역		세 분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		세 분	건폐율	용적률
도 시 지 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	50	50-100	주거지역	제1종전용	좌동	좌동	
		제2종전용	50	100-150		제2종전용	〃	〃	
		제1종일반	60	100-200		제1종일반	〃	〃	
		제2종일반	60	150-250		제2종일반	〃	〃	
		제3종일반	50	200-300		제3종일반	〃	〃	
		준주거	70	200-700		준주거	〃	200-500	
	상업지역	중심상업	90	400-1,500	상업지역	중심상업	좌동	좌동	
		일반상업	80	300-1,300		일반상업	〃	〃	
		근린상업	70	200-900		근린상업	〃	〃	
		유통상업	80	200-1,100		유통상업	〃	〃	
	공업지역	전용공업	70	150-300	공업지역	전용공업	〃	〃	
		일반공업	70	200-350		일반공업	〃	〃	
		준공업	70	200-400		준공업	〃	〃	
	녹지지역	보전녹지	20	50-80	녹지지역	보전녹지	〃	〃	
		생산녹지	20	50-100		생산녹지	〃	〃	
		자연녹지	20	50-100		자연녹지	〃	〃	
준도시지역			60	200이하	관리지역	계획관리	40	50-100	
준농림지역			40	80이하		생산관리	20	50-80	
						보전관리	20	50-80	
농림지역			60	400이하	농림지역			20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40	8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80

※ 세부범위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마. 용도지구제도 개요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도시내 지역별 기능이나 특성에 따라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 10개 지구가 있으며, 지구는 지역과는 달리 토지마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경관·미관·특정용도제한지구는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세분하여 용도지구 명칭 및 지정목적, 행위제한 사항 등을 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시·도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고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용도지구 신설만 허용
 - 용도지구의 지정
 - 계획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지구지정(변경)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지정절차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름
- ※ 2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바. 용도지구의 구분

종 전		개 편	
1. 경 관지구	자연경관지구	1. 경 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2.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2.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3.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3. 방화지구	
	최저고도지구		
4. 방화지구		4. 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5. 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6. 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5.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6. 취락지구	생태계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8.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집단취락지구		
9.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9. 복합용도지구	

○ 지구지정 목적

지 구 명		지 정 목 적
법 <		

사. 용도지구 지정 현황

(단위 : km², '18.12.31 기준)

구 분	합 계	경 관	고 도	방 화	방 재	보 호
계	2,747	590	394	100	3	313
서 울	197	35	90	3	0	59
부 산	30	1	1	20	0	6
대 구	65	3	45	13	0	0
인 천	231	4	82	8	0	134
광 주	13	4	0	8	0	0
대 전	11	2	0	3	0	0
울 산	20	2	2	0	0	7
세 종	20	11	0	0	0	0
경 기	402	52	61	11	0	17
강 원	333	185	8	4	0	5
충 북	240	135	3	3	0	19
충 남	121	23	1	2	0	10
전 북	179	23	15	8	0	5
전 남	355	47	11	5	2	17
경 북	209	25	13	1	0	21
경 남	184	15	8	4	0	12
제 주	136	23	55	7	0	0

※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도시계획현황('19.6)



(단위 : km², '18.12.31 기준)

구 분	취 락	개발진흥	특 정	복 합	조 례
계	668	668	9	0	2
서 울	0	3	6	0	0
부 산	0	0	0	0	1
대 구	4	0	0	0	0
인 천	1	3	0	0	0
광 주	1	0	0	0	0
대 전	5	0	1	0	0
울 산	9	0	0	0	0
세 종	5	4	0	0	0
경 기	85	173	1	0	0
강 원	22	109	0	0	0
충 북	31	50	0	0	0
충 남	16	69	0	0	0
전 북	72	55	0	0	0
전 남	209	63	0	0	0
경 북	71	78	0	0	0
경 남	90	55	1	0	0
제 주	45	6	0	0	0

아. 용도구역 제도개요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를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결정·관리
- 용도구역의 구분

구역명	지정목적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
시가화 조정구역	•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도시개발 도모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
입지규제최소구역	•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

자. 용도구역 지정현황

(단위 : km², '18.12.31 기준)

구분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지정현황	90	3,840.657	4	20.546	81	2,815.477	173	284.491	2	0.121

※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도시계획현황(19.6)



차. 기타 건폐율 및 용적률의 세분

지구·구역·단지	건 폐 율		용 적 률	
	법정 건폐율	시행령상 건폐율	법정 용적률	시행령상 용적률
취락지구	80%이하	60%이하 (자연취락지구 에 한함)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개발진흥지구	"	40%이하 (도시지역 외 지역) 30%이하 (자연녹지지역)	200%이하	100%이하 (도시지역 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40%이하	"	80%이하
자연공원	"	60%이하	"	100%이하
농공단지	"	70%이하	"	150%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등 (공업지역내)	"	80%이하	별도규정 없음	별도규정 없음

5. 지구단위계획

가. 지구단위계획 제도

1)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2) 대상구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시행령 43조, 44조)

-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 도시개발구역
 - 정비구역
 - 택지개발예정지구
 -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필요한 지역
-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 유허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이전 또는 재배치 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시범도시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 공고된 지역
-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전체 구역 면적이 10만㎡이하인 경우는 구역 면적의 20%이내, 10만㎡를 초과하는 경우는 구역 면적의 10%이내.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는 등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일단의 토지면적이 각각 10만제곱미터 이상,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각 구역이 면적중심간의 최장거리가 1.5Km 이내인 경우로서 각 구역이 15m 이상의 도로로 연결되는 경우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 허용

- 기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당해지역에 도로·수도공급설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
- 자연환경·경관·미관 등을 해치지 않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지역에 적용되는 요건에 해당할 것(‘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일 것’ 요건 제외)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 외의 지역

3)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한도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생물 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용적률·높이의 완화

1)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용적률)÷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 공공시설등을 설치 제공
 -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공공 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공공시설등의 부지제공’에 따른 완화규정 적용
- 건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의무면적 초과설치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 초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높이×의무면적 초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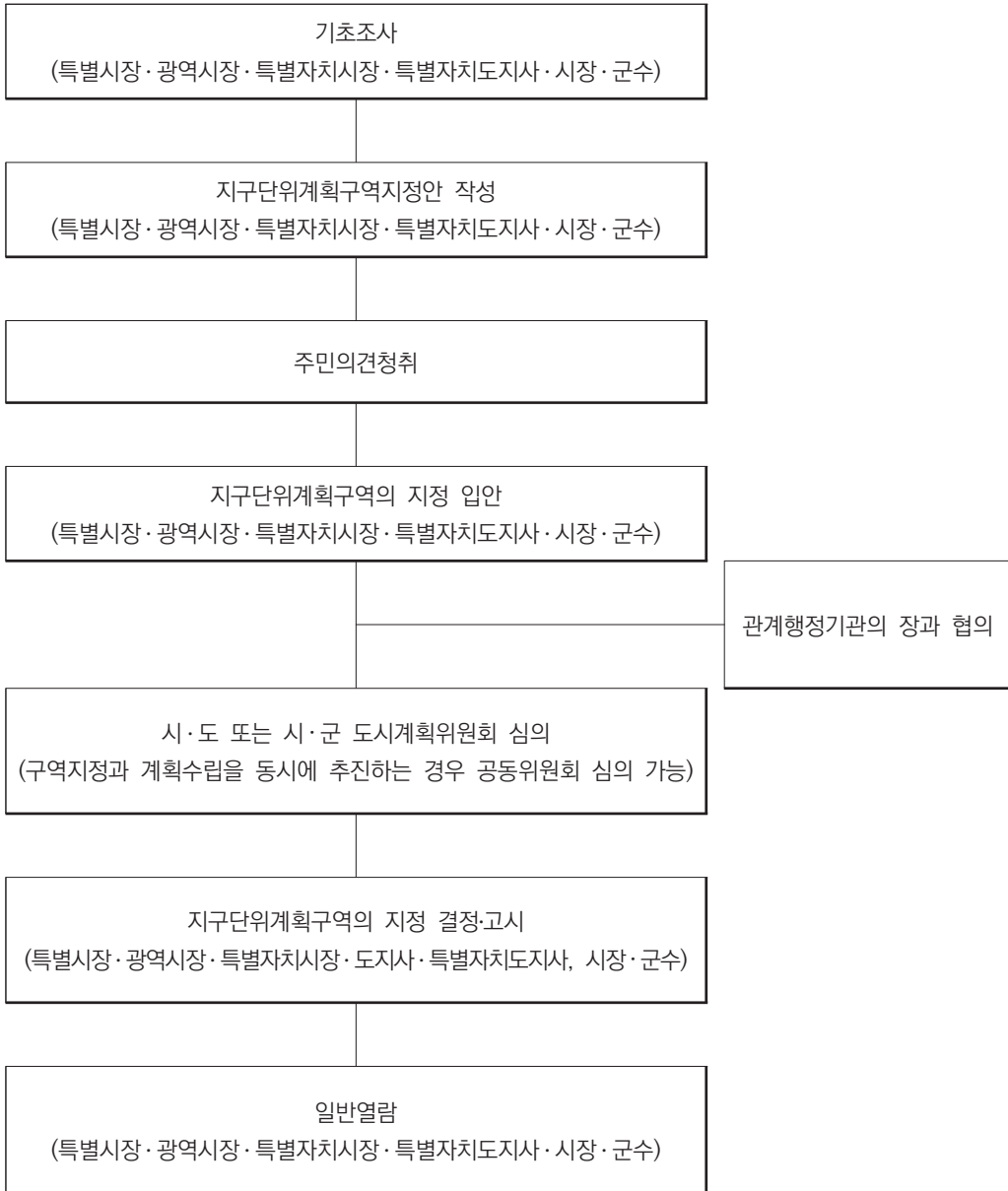
- 개발진흥지구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
-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또는 합벽 건축시(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
-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내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배, 용적률의 2배까지 완화

2) 도시지역외 지구단위계획

- 법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행위제한 기준을 각 유형별 기준에 따라 완화 적용(주거형지구단위계획 : 주거지역에서의 허용행위 범위 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 공업지역·상업지역에서의 허용 행위 범위 내, 관광휴양형지구 단위계획 : 상업지역에서의 허용 행위 범위 내)
- 건폐율·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내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의 1.5배·2배 범위내에서 완화



다. 구역지정 절차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현황

* 제1·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11.4.14(일부개정), '12.4.15(시행)}

(단위 : m²)

구분	총계		기존시가지정비		기존시가지관리		기존시가지보전		신시가지개발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계	10,159	2,675,968,335	3,218	436,569,587	969	150,546,064	230	30,191,310	1,574	1,089,326,221
서울	318	92,864,042	208	49,277,348	61	21,651,758	12	11,342,283	7	6,485,407
부산	575	108,023,091	332	30,215,683	181	21,848,935			59	55,879,629
대구	422	72,268,871	72	7,610,598	169	12,332,633	125	6,801,280	48	43,223,209
인천	273	191,649,344	143	30,513,062	13	19,414,359	2	629,976	66	125,522,016
광주	715	99,786,640	212	9,962,901	26	3,664,879			60	50,038,811
대전	350	49,731,978	133	11,346,028	3	1,635,208			48	15,583,040
울산	232	48,399,344	187	29,162,730	6	2,375,817			37	15,562,963
세종	49	12,311,748	1	15,181	3	953,950			1	232,277
경기	2,162	708,232,539	731	104,837,413	323	45,949,443	2	834,780	501	396,409,774
강원	570	200,112,314	132	13,979,148	11	426,407	1	138,219	100	28,713,085
충북	680	151,069,198	93	23,368,533	21	850,905	2	1,809,811	78	42,836,731
충남	838	210,815,786	121	6,880,496	16	1,220,518			140	82,228,742
전북	457	99,086,923	150	20,192,880	19	4,741,713	14	999,963	43	33,162,239
전남	613	176,858,360	241	39,310,634	27	6,101,675	8	4,006,786	63	40,292,758
경북	791	163,228,070	140	21,263,136	57	2,803,649			112	45,646,676
경남	993	226,340,315	286	36,148,873	33	4,574,215	64	3,628,212	194	97,516,232
제주	121	65,189,772	36	2,484,943					17	9,992,632

구분	복합용도개발		유희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비시가지 관리개발		용도지구 대체		복합구역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계	19	5,526,554	23	11,318,781	60	5,026,332			191	55,088,862
서울					1	89,794				
부산										
대구	2	530,853	4	735,433					1	976,694
인천			6	2,187,276	1	666,237			9	3,370,881
광주										
대전	6	32,116			1	130,652			125	19,772,199
울산										

구분	복합용도개발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비시가지 관리개발		용도지구 대체		복합구역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세종									4	420,927
경기	1	490,158	1	17,039	50	3,661,591			7	3,045,655
강원	1	10,461	9	3,706,540					3	225,809
충북									1	182,099
충남					1	43,821			15	15,278,842
전북			1	597,634	2	57,492			1	101,290
전남	5	2,556,324	1	3,120,934					13	6,103,867
경북									3	940,506
경남	4	1,906,642	1	953,925	4	376,745			7	2,811,441
제주									1	195,000

구분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특정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계	1,609	181,136,609	1,358	252,830,400	638	373,522,714	194	46,757,683	44	33,553,930
서울	28	2,353,800								
부산	3	78,844								
대구			1	58,171						
인천	4	400,837	3	3,859,520	8	3,935,473	18	1,149,707		
광주	389	25,750,014	24	8,940,553	2	83,882	2	1,345,600		
대전	34	1,232,735								
울산	1	10,857	1	1,286,977						
세종	16	2,098,127	23	7,244,117	1	1,347,169				
경기	179	23,587,479	176	35,741,285	92	56,467,404	65	22,496,915	9	10,741,135
강원	94	13,151,227	80	17,415,879	117	114,815,752	13	1,333,592	9	6,196,195
충북	136	17,149,696	266	32,282,348	45	18,256,353	28	3,358,632	10	10,974,090
충남	160	17,159,190	307	53,702,612	55	28,945,588	21	4,627,553	2	728,424
전북	52	5,284,660	114	13,954,480	43	17,618,041	14	1,578,454	4	798,077
전남	74	11,696,385	77	29,729,899	92	32,611,536	7	866,383	5	461,179
경북	254	37,883,066	125	18,450,596	83	29,681,102	15	5,150,833	2	1,408,506
경남	185	23,299,692	151	29,479,101	50	23,028,411	5	495,471	2	1,500,535
제주			10	684,862	50	46,732,003	6	4,354,543	1	745,789

※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도시계획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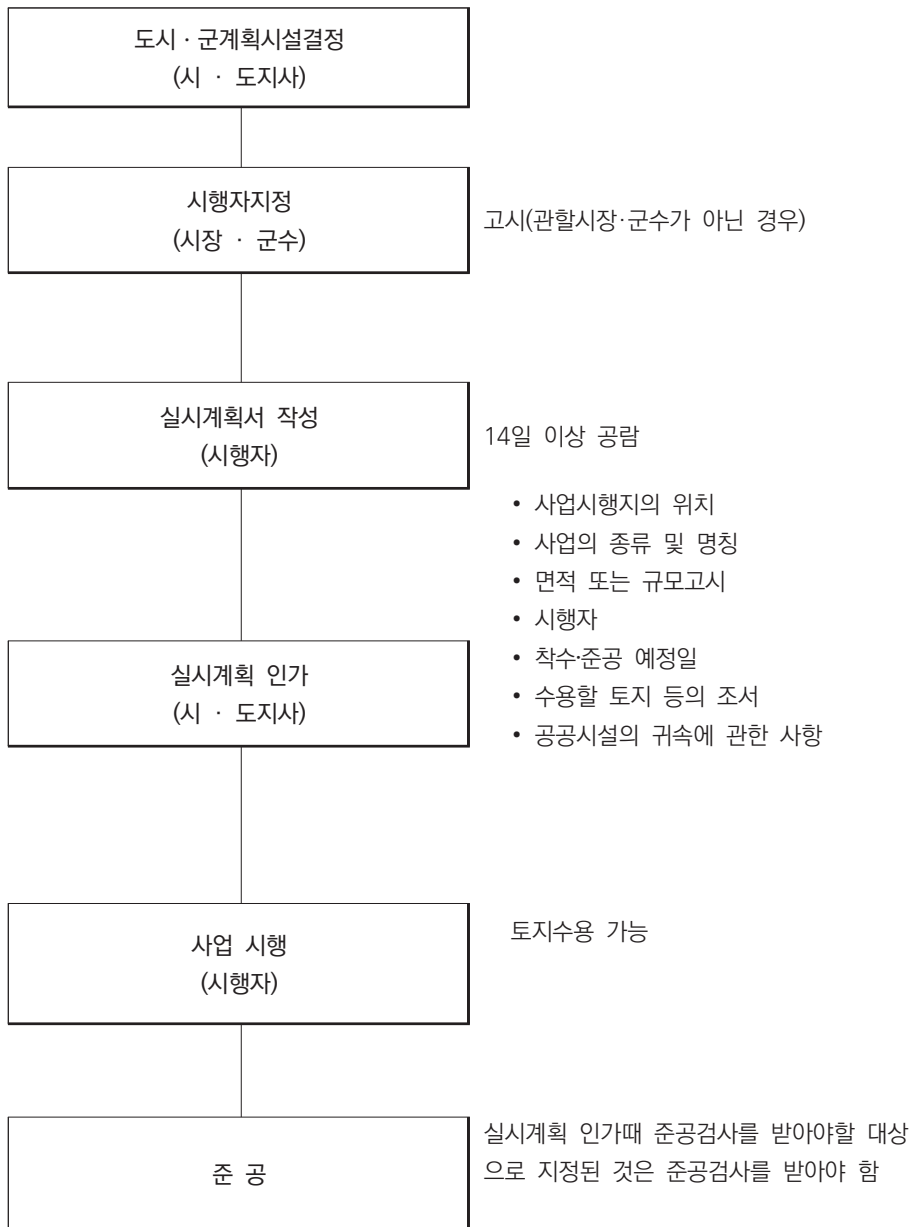
6. 도시·군계획시설

가. 제도개요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52개 도시·군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
- 사업주체
 - 관할시장·군수
 - 시장·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자
 - 국가사업 등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자
- 재원조달
 - 시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음
- 도시·군계획시설의 종류 (52개)

구 분	시 설 명
교통시설 (10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5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9개)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9개)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8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7개)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4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나.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절차



※ 구체적인 결정 및 설치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규정

다. 용도지역별 제한받는 도시·군계획시설

※ 아래에 표기되지 않은 시설은 용도지역 구분 없이 설치 가능

시 설		전용 주거		일반주거			준 주거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 림 지 역	자 연 환 경
		1 종	2 종	1 종	2 종	3 종		중 심	일 반	근 린	유 통	전 용	일 반	준	보 전	생 산	자 연	계 획	생 산	보 전		
교통 시설	○철도(철도역)	×	○	○	○	○	○	○	○	○	○	○	○	×	○	○	○	○	×	○	○	
	○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 자동차운수사업용공영차고지	×	×	×	×	×	○	○	○	×	○	×	○	×	×	○	○	×	×	×	×	
	• 시내버스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	×	×	○	○	○	○	×	○	×	×	○	×	○	○	○	○	×	×	×	
	• 시외/전세버스,공영차고지 (버스)	×	×	×	×	×	○	○	×	○	×	×	○	×	×	○	○	×	×	×	×	
	• 화물터미널/공영차고지 (화물)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및건설기계검사 시설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및건설기계운전 학원	×	×	×	×	×	○	×	○	×	×	○	○	×	×	○	○	×	×	×	×	
	• 복합환승센터	×	○	○	○	○	○	○	○	○	○	○	○	×	○	○	○	×	×	○	○	
공간 시설	○유원지	×	×	×	×	×	○	×	○	×	×	×	×	×	×	○	○	×	×	×	×	
유통 및 공급 시설	○유통업무설비	×	×	×	×	×	○	○	○	○	×	○	○	×	×	●	○	×	×	×	×	
	○전기공급설비	×	×	×	×	×	×	×	×	×	○	○	○	×	×	○	○	×	×	×	×	
	○가스공급설비	×	×	×	×	×	×	×	×	×	○	○	○	×	×	○	○	×	×	×	×	
	○시장(대규모점포제외)	×	×	×	×	×	○	○	○	○	×	×	○	×	×	○	○	×	×	×	×	
	○시장(대규모점포포함)	×	×	×	×	×	○	○	○	○	×	×	○	×	×	×	○	×	×	×	×	
	○유류저장및송유설비 (배관제외)	×	×	×	×	×	×	×	×	×	○	○	○	×	○	○	○	×	×	×	×	
	○열공급설비(열원시설)	×	○	×	○	○	○	×	×	×	×	○	○	×	×	○	○	×	×	×	×	
공공 문화 체육 시설	○운동장	×	○	○	○	○	○	○	○	×	×	×	○	×	○	○	○	×	×	×	×	
	○청소년수련시설	×	×	○	○	○	○	○	○	○	×	○	○	×	×	○	○	×	×	○	○	
	○체육시설	●	○	○	○	○	○	○	○	×	×	×	○	×	○	○	○	×	×	×	×	
보건 위생 시설	○장례식장	×	×	×	×	×	○	×	○	×	×	○	○	○	×	○	○	×	×	×	×	
	○도축장	×	×	×	×	×	×	×	×	×	×	○	○	×	○	○	○	○	×	○	×	
	○종합의료시설	×	×	×	○	○	○	○	○	×	○	○	○	×	×	○	○	×	×	×	×	
환경 기초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	×	●	●	●	×	●	×	×	○	○	○	○	○	○	○	○	○	○	
	○수질오염방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폐차장	×	×	×	×	×	×	×	×	○	○	○	○	×	×	○	○	×	×	×	×	

<범례> × : 불허, ● : 예외적 허용, ○ : 입지허용

라. 도시·군계획시설관련법

도시·군계획시설 (52)		관 련 법
교통 시설 (10)	도 로	고속국도법,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주차장	주차장법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해운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철 도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케 도	케도운송법
	운 하	-
	항 만	항만법, 어촌·어항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공 항	항공법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도로교통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공간 시설 (5)	광 장	-
	공 원 녹 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유원지	관광진흥법
	공공공지	-
유통 및 공급 시설 (9)	시 장	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
	유통업무설비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처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법, 항만법
	수도공급설비	수도법
	공동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공급설비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가스공급설비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송유관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열공급설비	집단에너지사업법
공공 문화 체육 시설 (10)	방송통신시설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방송법
	운동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청사	-
	학 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 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연구시설	-
	문화시설	공연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과학관육성법, 도서관법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공공직업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방재 시설 (8)	하 천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저수지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방풍설비	-
	방수설비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하수도법
	방화설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방설비	사방사업법
	방조설비	항만법, 어촌·어항법, 방조제관리법
	유수지	-
보건 위생 시설 (7)	도축장	축산물위생관리법
	공동묘지 화장시설 장례식장 통안시설 자연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종합의료시설	의료법
	하수도	하수도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 기초 시설 (4)	수질 오염방지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산폐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석탄산업법
	폐차장	자동차관리법

7.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가. 제도개요

- 도로·공원등 도시·군계획시설 예정부지는 건축등 행위제한되나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어 민원 다발
-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지자체가 5년마다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
 - 향후 결정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20년 이상 미집행시 자동실효
 - 이미 결정된 시설 중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土地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02.1.1.부터 토지소유자가 당해 시장·군수에게 매수청구서를 제출하고, 당해 시장·군수는 매수청구가 있는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 2년 내에 매수 않을 경우 일정한 건축물 건축 허용
 - 소규모 건축물 등의 증·개·재축 허용, 3년내 사업계획이 없는 경우 가설 건물의 건축 및 기존건축물의 개축·재축 허용
 - 미집행시설의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결정시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고 모든 도시·군계획시설은 보상계획·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1999. 10. 21. 97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요지】

- 사인의 토지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당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변경금지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
- 도시·군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해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함

-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더 이상 그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건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됨.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매수가 장기간 지체되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더 이상 요구될 수 없다면, 입법자는 매수청구권이나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 가능성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함
- 도시·군계획시설의 시행지연으로 인한 보상의 문제는, 도시·군계획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필요적 과제이자 중요한 공익이라고 하는 관점과 다른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의 시행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재산적 손실을 입는 토지소유자의 이익(헌법상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하여 양 법익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
- 입법자는 도시·군계획사업도 가능하게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 또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 보상을 요하는 수용적 효과로 전환되는 시점, 즉 보상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확정하여 보상규정을 두어야 함. 토지재산권의 강화된 사회적 의무와 도시계획의 필요성이란 공익에 비추어 일정한 기간까지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집행지연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을 수인해야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입법자가 보상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과도한 부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집행계획은 비로소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과 조화될 수 있음.
- 입법자는 토지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전반적인 법체계, 외국의 입법례 등과 기타 현실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도시·군계획사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모두를 실현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정해야 함.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함.
- 이 사건의 경우,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행위제한을 부과하는 법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통하여 당장 법률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면, 토지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근거규범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도시계획이라는 중요한 지방자치단체행정의 수행이 수권규범의 결여로 말미암아 불가능하게 됨. 도시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으로서 잠시도 중단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입법개선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나. 미집행 현황 ('18.12.31)

(단위 : km² (%), 조원)

구 분	미집행 시설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20.7. 실효대상 ('00.7. 이전결정)
면적	1,114.7km ²	279.6km ²	835.1km ²	643.0
	100%	25.1%	74.9%	57.7%
소요액	168.2조원	35.3조원	150.9조원	109.3조원
	100%	19.0%	81.0%	58.7%

※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도시계획현황('19.8)

다. 시설별 미집행 현황 ('18.12.31)

(단위 : km² (%), 조원)

구 분 (시설명)	결정면적	집행면적	미집행		
		집행비율	전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20.7. 실효대상
계	7,127.3	6,012.6	1,114.7	835.1	643.0
	100.0	84.4	100.0	100.0	100.0
도로	1,835.9	1,519.6	316.4	233.0	163.4
	25.8	82.8	28.4	27.9	25.4
공원	926.6	479.9	446.7	406.2	363.7
	13.0	51.8	40.1	48.6	56.6
녹지	221.8	168.0	53.7	39.7	29.3
	3.1	75.8	4.8	4.8	4.6
광장	152.2	132.0	20.2	12.6	6.0
	2.1	86.8	1.8	1.5	0.9
유원지	155.1	92.2	62.9	55.5	46.8
	2.2	59.5	5.6	6.6	7.3
학교	356.1	345.6	10.5	7.5	4.7
	5.0	97.0	0.9	0.9	0.7
기타	3,479.7	3,275.3	204.4	80.7	29.2
	48.8	94.1	18.3	9.7	4.5

※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도시계획현황('19.8)

라. 시도별 미집행 현황('18.12.31)

(단위 : km²)

구분	총 면적	집행 면적	집행 비율	미집행		
				전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20.7 실효대상
총계	7,127.3	6,012.6	84.4	1,114.7	835.1	643.0
서울특별시	395.7	331.4	83.8	64.3	60.1	59.1
부산광역시	217.7	157.0	72.1	60.7	54.5	49.1
대구광역시	138.4	108.1	78.1	30.3	28.8	27.1
인천광역시	276.8	253.4	91.5	23.5	20.7	16.0
광주광역시	125.2	109.4	87.4	15.8	13.9	11.7
대전광역시	109.3	86.9	79.5	22.4	17.8	16.8
울산광역시	137.6	86.9	63.1	50.7	44.1	34.2
세종특별자치시	100.4	98.6	98.2	1.8	1.3	1.1
경기도	1,436.3	1,236.2	86.1	200.2	121.3	74.5
강원도	555.9	476.4	85.7	79.5	53.3	40.9
충청북도	429.9	355.6	82.7	74.3	50.2	31.5
충청남도	438.9	377.4	86.0	61.4	37.9	27.4
전라북도	391.2	327.9	83.8	63.3	47.6	40.2
전라남도	731.7	644.2	88.1	87.5	65.5	48.9
경상북도	841.4	705.3	83.8	136.1	106.2	80.6
경상남도	680.9	559.1	82.1	121.7	95.8	71.5
제주특별자치도	120.0	98.8	82.3	21.2	16.1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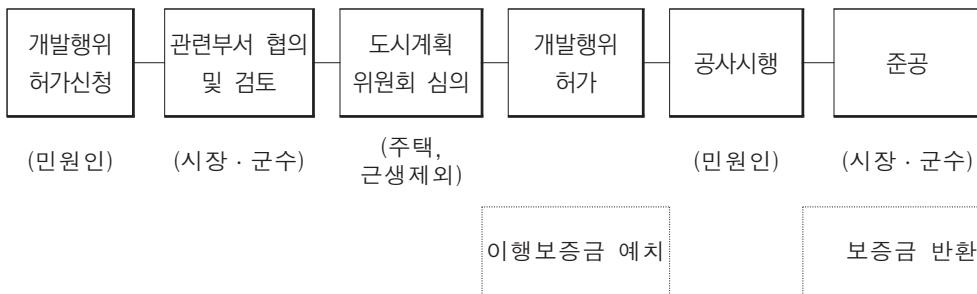
※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도시계획현황('19.8)

8. 개발행위허가

가. 제도개요

- 개발행위허가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 등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운영
- 개발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녹지지역·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울타리안이 아닌 토지에 1월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허가절차





다.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관리지역 : 3만㎡ 미만
- 농림지역 :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 · 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 환경 등과 조화를 이룰 것
-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 기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개발행위허가 세부기준은 시행령 별표1의2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참조

마. 개발행위 허가현황 ('18.12.31)

(단위 : 건수, 천㎡)

구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전국	118,531	568,500	26,012	192,814	78,238	263,553	13,148	106,486	1,133	5,646
서울특별시	179	139	179	139	0	0	0	0	0	0
부산광역시	404	845	404	845	0	0	0	0	0	0
대구광역시	511	1,031	509	1,029	0	0	0	0	2	2
인천광역시	4,462	9,597	628	959	3,390	7,303	444	1,335	0	0
광주광역시	297	337	297	337	0	0	0	0	0	0
대전광역시	330	1,040	315	1,019	15	21	0	0	0	0
울산광역시	840	7,191	689	4,550	100	1,566	49	997	2	78
세종시	375	3,663	48	135	225	966	102	2,563	0	0
경기도	34,576	228,606	9,920	144,102	22,435	65,689	2,192	18,513	29	302
강원도	11,097	56,168	2,098	6,873	8,150	35,762	787	13,268	62	265
충북도	7,346	30,003	1,682	3,961	4,867	18,413	731	7,400	66	228
충남도	10,557	37,968	1,602	4,163	7,577	25,772	1,372	8,027	6	6
전북도	11,321	36,705	892	3,582	8,497	21,614	1,911	10,427	21	1,083
전남도	14,008	50,310	1,925	3,792	8,864	31,483	2,656	13,441	563	1,594
경북도	11,451	63,920	2,206	7,986	7,581	34,966	1,620	20,685	44	283
경남도	9,853	37,690	2,350	8,703	5,881	17,353	1,284	9,829	338	1,805
제주도	924	3,287	268	641	656	2,646	0	0	0	0

※ 출처 : 국토교통부, 2018 도시계획현황(건축물의 건축 건수 및 면적은 제외)

2020 도시업무편람



IV

Chapter

주요 업무내용

- 도시정책 분야 • 117
- 도시경제 분야 • 149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분야 • 169
- 도시활력지원 분야 • 183
- 녹색도시 분야 • 251

Chapter IV . 주요 업무내용

2020 도시업무 편람



도시정책 분야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마련	119
2. 저성장시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정책 마련	120
3.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122
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123
5. 성장관리방안	125
6.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130
7. 토지적성평가	134
8. 스마트시티 국제협력	139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마련

가. 추진배경

-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해당 토지는 타용도로 개발 제한(재산권 제한 발생)
- 이 중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실효제*에 따라 '20.7.부터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전 연착륙 대책마련 필요
- * '99년 헌법재판소 결정(국민 재산권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 모두를 실현하기에 적정한 기간을 규정할 필요) 이후 도입('00.7.)

나.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① 범정부 차원의 장기미집행 해소 대책 마련
 - 지자체 의견수렴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원 조성 목적의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 국고지원사업 연계 등 국가 지원방안을 포함한 대책 발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상정 및 국무회의 보고 완료, '18. 4.)
- ② 장기미집행 해소 위한 관계법령 등 제도 개선
 - 국가가 도시계획시설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우선 지원대상'에 장기미집행 시설을 추가(국토계획법 개정, '18. 6.)하였고,
 - 지자체가 공원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차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공원제도'를 도입(공원녹지법 개정, '18.6.)
 - 집행이 꼭 필요한 지역을 선별하여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한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유도 (장기미집행 해소 ·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18. 3.)
 - 아울러, 근본적으로 장기미집행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개선
 - 변화된 사회여건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시설체계를 정비하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18.10.),

- 사업을 시행하였더라도 일정기간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효력을 상실토록 개선(국토계획법 개정발의, '18. 12.)
- 실효대상 시설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등 차질없는 행정조치를 위해 지자체에 「도시·군계획시설 실효대비 업무처리 요령」 배포('19.10)
- 실효기산일 적용 등 실효기준, 실효대비 유의·조치사항 등을 제시하고 실효 고시 완료사실을 통보토록 조치
- 시설별로 집행·해제·실효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관리, 지자체를 독려하기 위한 장기미집행시설 관리 T/F*를 구성·운영중('20.3월~)
- 대규모 실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논의하고 실효 전 집행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 단축 협의 추진

2. 저성장시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정책 마련

가. 추진배경

- 인구감소·저성장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그간 양적 성장에서 질적·효율적 성장을 추구하는 압축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 중
- 지역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포용성·복원력 강화 등 새로운 정책적 수요 반영 필요
-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 지역(화성, 김포 등) 등에 공장, 주택 등의 난립 현상이 증가하면서 환경훼손, 주거환경 저해 등 문제 대두
- 「국토계획법」 제정*('03.1)에도 불구하고, 도시·산업적 개발 가용지를 확대 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토지이용 규제가 점차 완화
- * 난개발 문제 해소 위해 준농림지역을 폐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규제차등화
-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되거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연접개발 사례가 증가되어 난개발 대책이 필요한 상황

나.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압축적 도시계획)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대응하여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고 압축적 관리 실현
 - 광역도시계획은 인근 지역간 유사·중복시설 공급 방지, 공공서비스 공동이용 체계 구축 등을 유도하는 지자체간 협력 강화수단으로 재정비

*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 연구” 용역 추진('18.4월~)

- 도시유형별로 차별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초조사 항목 내실화 및 생활권 계획제도 활성화

- (난개발 방지) 체계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성장관리방안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선

* 비도시지역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반시설 배치·규모 등을 제시 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 개발행위허가제의 운용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비 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18.4~)

-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 지역과 유휴토지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최소면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도시관리·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지형도면 고시 등을 이행토록 개선 추진

- (포용적 도시조성) 유엔해비타트 ‘새로운 도시의제’(지속가능한 포용적 도시)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평가에 반영

- 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 보행자의 높은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보행친화적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 지침 마련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개선 노력과 건전한 도시정책을 도모하여 바람직한 도시공간 조성

* 우수정책 지자체에 ‘도시대상’ 시상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활용토록 평가결과 제공, 진단평가 심층컨설팅 실시

-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국토부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있는 타 기관 도시방재정보*를 지자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도시·군기본계획에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8.10월)
- 도시정책 관련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명시

3.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가. 추진배경

-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통한 기성시가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신설('15.1.6, 시행)
-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해 자유로운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되, 난개발 우려 해소 등을 위해 구역 지정 등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15.1.6 제정·고시)

〈 입지규제 최소구역 〉

- △ (도입목적) 주거·상업·문화·업무 등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을 조성
- △ (지정대상)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심·부도심·생활권중심지, 역사·터미널·항만·청사 등 거점시설과 그 주변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경제기반형) 등
- △ (요건) 용도지역·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완화 또는 배제,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제 등

나. 주요내용

- 복합적 토지이용을 허용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유형*에 맞게 시범지정하여 지역수요에 맞는 거점으로 조성
- * 예: 거점시설 부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쇠퇴한 구도심 재개발, 지역특화구역조성 등
- 지자체 신청을 받아 '15년부터 3년간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이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

다. 추진경과

-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15.1) 이후, 지자체 관심도 제고 및 독려를 위해 1차 컨설팅(3차례) 등을 진행하였으며,
- 포항('15.11) 및 인천('16.07)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고, 추가 수요조사 및 컨설팅 지속 실시 중

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가. 개요

-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제출방법 및 그 밖에 세부사항을 정함
- 평가 목적 및 범위
 - 전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자체의 건전한 도시정책을 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

나. 평가절차

① 평가 시행 공고

평가 시행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② 평가서의 작성(지자체) 및 제출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③ 평가서의 접수

평가서의 접수

④ 지자체 평가서의 검증 및 채택

지자체 평가서의 검증 및 채택

⑤ 종합분석 및 평가

평가결과 도출
(평가위원회 의견개진)

⑥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다. 평가방법 및 주기

○ 평가방법 및 등급화

- ① (평가군) 시·군·구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 ② (평가방식) 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자체적인 노력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
- ③ (점수화방식) 지표마다 서로 다른 값 범위와 단위,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각 지표의 원값을 표준점수화(Z-Score)하여 점수분포의 출발점과 단위를 통일시켜 상대적인 비교 및 지표별 점수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함.

$$\text{표준점수(Z-Score)} = (\text{원점수} - \text{평균}) / \text{표준편차}$$

※ 표준점수란 원래의 값을 주어진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단위로 전환한 점수

- ④ (등급화) 평가지표별 상대평가를 통하여 점수를 5개 등급(1등급: 매우 우수 ~ 5등급: 매우미흡)으로 구분하는 등급화 방식 적용

○ 부문별 등급 및 종합화방안

- ① 점수의 종합화는 대부문별 등급 및 종합등급의 2개 단계로 통합
- ② 대부문별 등급은 부문별로 해당하는 지표의 점수를 합산하고 이를 등급화하여 도출
- ③ 종합등급은 대부분의 점수 분포를 고려하여 총점을 합산한 뒤, 이를 등급화하여 도출

○ 평가주기

- ①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는 매년 실시
- ② 평가로 인한 행·재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취득이 용이한 정도에 따라 지표별로 평가주기를 다양화할 수 있음.

라. 평가결과 활용

-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에 미치는 파급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음.
- 평가의 결과는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대상, 도시대상 등 각종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대상의 선정과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 할 수 있음.
- 지자체는 평가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 등 국토 및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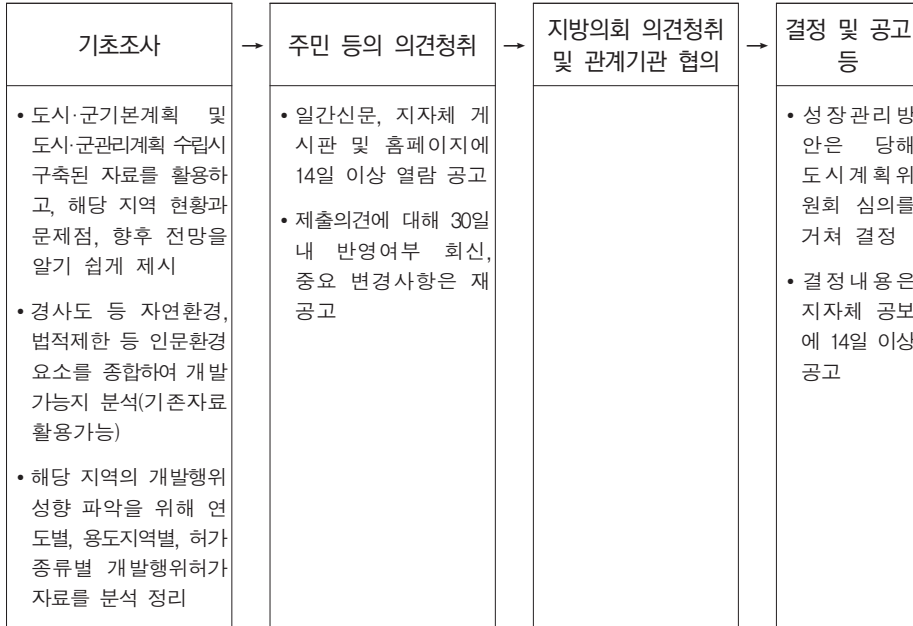
5. 성장관리방안

가. 개요

- 추진배경
 - 비시가화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체계적 관리수단 마련 필요
- 제도개요
 - (목적)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성격)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향 제시를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유도적 성격
 - * 수립권자는 법령 및 지침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조례 또는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가능
 - * 수립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 (대상지역)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현황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유보용도 : 자연녹지, 계획·생산관리지역
 - * 보전용도 : 생산·보전녹지,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나. 주요내용

○ 성장관리방안 수립절차



*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위 절차와 동일(경미한 변경사항 제외)

다. 성장관리지역 설정

○ 일반원칙

- 인구 및 개발행위 증가, 지가상승률 추세 등을 통한 객관적 자료와 지역여건, 정책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성장관리지역 목적달성 여부 및 타당성 검토 후 설정

○ 성장관리지역 설정기준

- 유보용도(자연녹지·계획관리·생산관리지역) 및 보전용도(보전녹지·생산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중 ①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③위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지역

○ 성장관리지역 설정범위의 고려사항

- 최근 6개월 또는 1년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직전 동기대비 20%이상 증가한 지역
-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인구증가율 또는 지가변동률이 당해 시·군·구 인구증가율 또는 지가변동률 보다 20%이상 높은 지역

○ 성장관리지역의 경계

- 성장관리방안 목적달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정지역을 정형화
- 도로, 하천 등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경계선을 분명하게 구분

라. 성장관리방안 수립기준

○ 일반원칙

- 성장관리방안 목적달성을 위해 a와 b를 포함하여 둘 이상을 내용으로 하되, a와 b외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포함

a.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b. 건축물 용도, 건폐율 또는 용적률, c. 환경관리 계획 또는 경관계획, d.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e. 기타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사항

-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에 부합
-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 수립내용에 기반시설계획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개발행위 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 기반시설계획

- 기반시설 용량은 당해 지역의 인구(상주, 상근, 이용)를 참작하고, 향후 주변 지역의 성장방향 및 성장가능성을 고려
- 도로 등의 용량은 건축물의 용도,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주거가 밀집한 지역은 학교, 공원, 유치원 등의 시설을 고려

- 민원발생 최소화 및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도로, 공원 등 기존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
- 건축물의 용도
 - 성장관리지역 설정목적, 용도지역·지구의 특성 및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를 설정(건축물의 용도는 권장·허용·불허용도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용도설정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경관 및 미관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가 무질서하게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숙박 및 위락시설 제한 가능 등)
 - 건축물 용도는 상호 조화롭게 하되, 불가피하게 상충되는 용도가 입지하는 경우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고려
- 건폐율 및 용적률
 - 건폐율·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의 적용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 가능
 - 건폐율 : 계획관리지역은 50%이하,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은 30%이하. (단, 공장의 경우에는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해당)
 - 용적률 : 계획관리지역에서 125%이하
 - *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는 기반시설 편입여부, 권장사항 이행여부 등에 따라 허용범위를 다르게 적용하여 성장관리 목적달성에 활용, 건폐율 및 용적률 완하시 기반시설 공급계획을 함께 고려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등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은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변, 관광지 주변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한정하여 수립
 - 건축물의 미관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등 기본요소를 참작(당해 지역의 특성과 주변지역과 조화를 위해 지붕의 형태와 색채 등)

○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은 당해 지역의 여건 등으로 수립권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립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구릉지 등은 절토를 최소화하고, 습지나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은 보존
- 방음벽은 소음원에 가깝게 하고, 자연지형과 수목을 적극적으로 활용
-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은 최대한 보전하되, 역사·문화적 자산은 경관 관리의 우선 고려사항으로 검토
- 산림·녹지 등 자연경관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하천·해변·녹지축 등을 보호하여 당해 지역의 주요 경관이 조화되도록 수립
- 경관관리는 지자체별 지역여건 및 특성 등을 최대한 반영

마. 성장관리방안 제도운영 현황

○ ‘19.12월 기준, 수립 완료(17개 지자체), 수립 중(16개 지자체)

- 완료 : 인천중구, 울산북구, 세종1,2차, 경기고양, 용인1차, 화성1,2,3차, 평택1차, 파주1,2차, 광주1,2차, 오산, 여주, 충남공주, 홍성1차, 태안, 전북남원, 경남김해1,2차, 합천
- 진행 : 울산울주, 경기수원, 용인2차, 남양주, 평택2차, 김포, 강원춘천, 충북청주, 충남천안, 논산, 홍성2차, 경남김해3차, 남해, 거창, 제주·서귀포

6.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가. 개요

- 대선 공약, 국정과제로 '토지이용 관련 통합 인허가제 도입' 이후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13.10 국가정책조정회의)
- 복잡한 인허가 과정, 인허가의 불확실성과 함께 주요 문제점으로 각종 위원회의 심의 과정상 과도한 조건 부과* 등이 지적
 - * 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 등
- 위원회(도시, 경관, 건축, 교통 등)의 역할·심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심의 내용 중복, 위원회간 의견 상충 등 문제도 제기
-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 조사*를 통해 위원 구성이나 심의방식, 상정 안건·회의록 작성 등과 관련 개선 사항도 추가 발굴
 - * (1차) 최근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자료 분석(244개 지자체)
 - (2차) 16개 지자체 실태조사(심의자료 및 회의록 열람, 공무원 인터뷰 등)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13.7)' 개정 시행

나. 추진경위

- (세부 심의기준 제공) 과도한 심의 방지 등을 위해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로 단순화한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
- 위원회가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검토·자문 기능으로서의 한계도 명시*
 - * 위원회 심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지자체가 조건부 허가 등을 결정
- (전문성 강화) 위원의 자격 요건 구체화, 신규 위촉 위원에 대한 심의 방법 및 기준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
- (투명성 제고) 회의록민원인 제출 보고서 등의 표준화, 당사자의 심의 참여 기회 확대, 부결 사유서 제공 등을 통해 심의를 투명화

다. 주요성과

1) 표준화된 심의 기준 및 방법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

-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적용(예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보전방안 제시 필요)하여 부결·재심의·조건부 의결되는 경우가 있고,
 - 심의 전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위원회 심의를 진행
- 원만한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주민 동의 확보 등 조건이 부가되면서 지역 주민의 대가 요구, 사업자 부담 가중 등도 문제화

— < 사 례 > —

- ▶ ○○시에서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요구로 사업시행자 부담을 가중
- ▶ ○○사업자는 심의 작성에 필요한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가 없어 공사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관련자료 미비로 재심의·조건부 가결 결정

< 개선방안 >

- ①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로 단순화하는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심의 범위를 제한하고,
 - *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유형별로 차별화
 - 주민동의서 첨부,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
- ②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자문기구로서의 역할 범위·한계를 명시하고, 기능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은 지양
 - * (종전) 원안 의결(가결), 조건부 의결 등 → (개선)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등
- ③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심의 전에 보고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절차 개선

2) 위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

- 위원 선정방식은 대체로 공모·위촉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민간 전문가 확보가 용이하나
 - 비수도권 지역이거나 50만 이하 시·군인 경우 거리적인 문제, 지역내 전문가 부족 문제 등으로 인력풀 확보가 어려움
- * 분야별 전문가 확보 곤란, 위원의 전공과 심의 분야 간 불일치 등
- 신규 위촉 위원의 경우 심의 방법 숙지도 없이 심의가 진행되며,
 - 일부 지역은 시·군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문성 부족·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반영 등의 문제점도 제기

— < 사 례 > —

- ▶ ○○시장은 비전문가인 인수위 참여인사(경영학 전공)를 도시계획위원으로,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은 건축위원으로 위촉
- ▶ ○○시는 자치단체장 등 내부 인사와의 친분관계자를 내부 추천형식을 빌려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

▶ 개선방안 ● ● ●

- ①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은 상향 조정 (2/3 이상)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
 - *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
- ②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道에서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초 지자체의 요청시 위원을 추천
- ③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검토 사항, 의견제시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필요한 소양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심의는 지양토록 유도
 - * 잘못된 심의 사례 및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하여 과도한 심의를 예방

3) 심의의 투명성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 ●

- 회의록 작성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유
 - 녹취록의 형태로는 일반인 공개가 불가능하므로 심의 결과만 공개하고 있어 구체적 심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
 - * 공개방식이 '열람'으로 제한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회의록 정보공개청구로 인한 열람 실적은 거의 없음('12.7월 권익위)
- 심의 과정에 당사자의 입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심도 있는 논의 제약, 과도한 부담 부과 등의 문제로 작용

▶ 개선방안 ● ● ●

- ① 주민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심의내용 및 결과 설명이 용이하도록 녹취록은 지양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
 - 표준화된 회의록 방법 및 양식을 마련하여 제공
- ② 부결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분명한 이유를 서면으로 구체적 부결사유를 기재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자에게 회신
- ③ 자료 누락 등으로 인한 재심의·부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안전 작성 양식, 사업자 셀프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

□ 시사점(성공요인 분석)

- 가장 큰 민원 요인인 심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장기화 방지
 - 도시계획위원회 안전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3회 이내로 제한하고, 정기회의 (월 1회 이상) 및 수시회의(위원장 판단)를 통해 심의 상시화
 -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45일 이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위원회 심의는 30일 이내 완료토록 기한을 명시
 - * 관계기관은 심의요청 접수일 이후 15일 이내 협의의견 제시
- 특혜 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 개최시까지, 안전 당사자가 비공식적으로 심의 위원 개별접촉은 금지(필요시 공무원 동행)

7. 토지적성평가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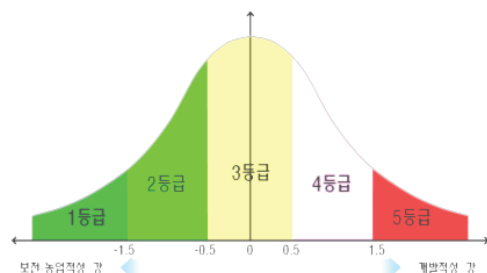
-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시 신설
 -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의 체계적 판단 및 구분, 관리지역의 세분 등에 활용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기초조사의 일부로 실시
 - 평가체계 I : 관리지역 세분(계획·생산·보전)을 위한 경우
 - 수도권, 광역시, 광역시 인접 시·군 : 2005년 말까지
 - 기타 시·군 : 2007년 말까지 세분화하도록 함
 - ※ 관리지역 세분 관련 지자체의 여건 및 의견을 고려하여 2008년까지 세분화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1년을 연기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각 시·군의 일부 유보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완료되었음.[제주도(10.03.08 고시완료), 충남태안(10.01.20 고시완료)]
 - 일부 미세분지역은 세분전까지는 보전관리지역의 행위제한 적용
 - 평가체계 II :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사업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경우
 - ※ 도심지나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 평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는 제외
-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체계 개편('14.10.31)
 - 당초 도입 목적인 관리지역 세분 완료에 따른 역할 전환(평가체계 I), 평가방식의 개선 및 제도 보완(평가체계 II) 필요에 따라 비시가화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토지적성평가제도 개편
 - 종전 평가체계 구분(평가체계 I·II)을 일원화하고,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지역 전체에 대한 평가 실시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15. 1. 6)
 - 토지적성평가제도의 체계 개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로 활용하던 토지적성평가를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도 포함

나. 추진경위

- '02.12 토지적성평가지침 제정
- '03. 6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문개정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개발 및 지자체 배포
- '14. 10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시행 '15. 5)
- 평가체계 일원화 등 토지적성평가제도 체계 개편
- '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5. 7)
- 도시·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 포함
- '15. 5 개정 지침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제도 시행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신규개발 및 지자체 배포

다. 토지적성평가 수행방법

- 관리지역 세분(계획·생산·보전)을 위한 경우
 -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절대적인 보전이 필요한 필지는 우선적으로 우선개발 등급(5등급) 또는 우선보전등급(1등급)을 부여
 -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의 3개 특성별로 각 평가지표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평가점수를 합계하여 종합적성값 산정
 - 종합 적성값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 값(Z_i)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 1등급·2등급인 경우 보전 및 농업적성이 강하고, 4등급·5등급인 경우 개발적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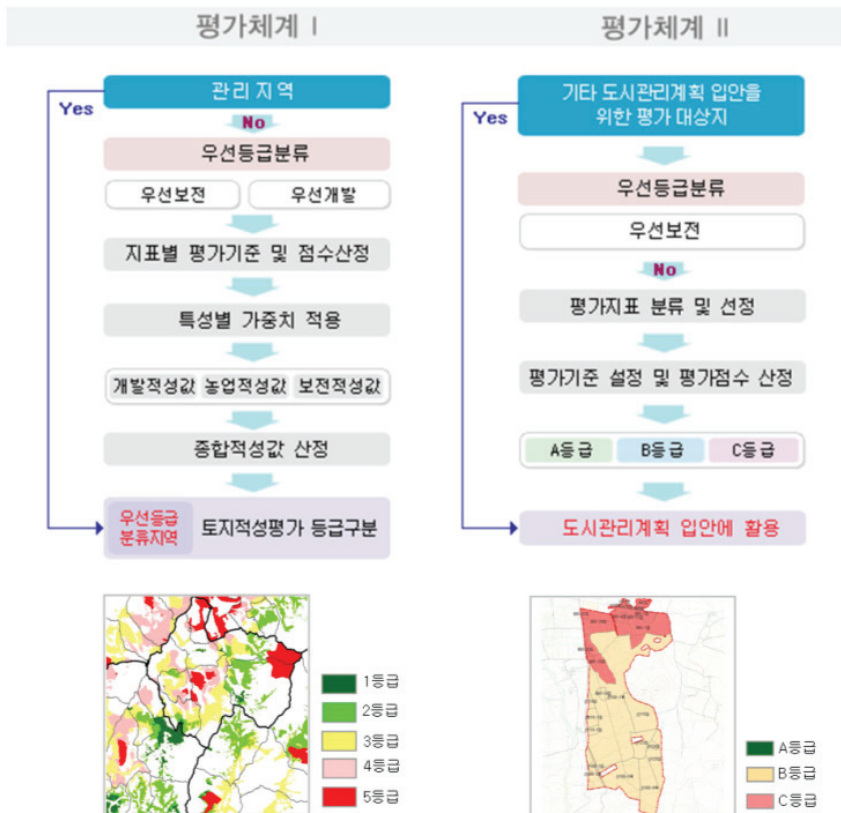


-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사업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경우

- 절대적인 보전이 필요한 필지는 보전등급(A등급)을 부여
- 개발성의 단일 특성별로 평가지표의 평가점수 산정
- 개발성 평가점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

(A등급 : 보전적성등급, B등급 : 중간적성등급, C등급 : 개발적성등급)

- 종합적성등급이 A등급일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불가능하나, C등급인 경우에는 입안이 가능하며, B등급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 가능



라. 체계개편('14.10.31) 주요내용

- 민간의 토지적성평가 실시로 인한 비용부담 폐지
 - (현행) 민간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하는 경우, 민간이 직접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시간·비용 부담 발생
 - (개선) 지자체가 미리 평가를 실시하고, 민간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대상구역에 대한 평가결과 제공
 - * 사업계획서, 입안구역 경계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지자체에 제출
- 전체 비시가화지역을 함께 평가하여 체계적·계획적 도시관리 도모
 - (현행) 입안구역만 단독으로 절대평가하여 종합등급 부여(3개 등급)
 - (개선) 전체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필지단위로 상대평가하고, 필지별 적성값을 가중평균하여 입안구역의 종합등급(5개 등급) 산출
-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입안가능 등급 기준을 설정
 - (현행) 지침에서 일률적으로 입안가능한 등급을 제한
 - * A등급: 입안불가, B등급: 도시계획시설만 일부 입안가능, C등급: 입안가능
 - (개선)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등급별 입안 가능여부 판단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평가지표 선정 유도
 - (현행) 지침에서 전체 평가지표를 일률적으로 제시
 - (개선) 평가지표를 필수와 선택지표로 구분하고 선택지표는 지역 특성에 따라 선택지표군에서 선정 (총 12개중 필수 8개, 선택 4개)
- 평가체계를 통합하고 적성부문간 평가지표 중복을 없애 단순화
 - (현행) 보전·농업·개발의 3개 적성으로 구분하고, 각 적성별로 경사도·표고 지표를 중복적으로 평가
 - (개선) 보전·농업 적성을 통합하고, 경사도·표고 지표는 개발 부문에만 사용하는 등 평가지표를 단순화(총 18개→12개)

○ 기타 사항

- 각종 자료가 필지단위로 확보가능하게 되어 평가단위는 필지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격자단위는 100m×100m 까지 허용

* (現) 필지단위와 격자단위(20m×20m) 중 선택

- 평가결과의 신뢰도 제고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평가결과를 전산 자료로 보관하도록 하고, 검증기관(LH)의 검증을 의무화
- 지자체가 변경된 평가방법에 따른 토지적성평가를 제도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

8. 스마트시티 국제협력

가.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 추진 배경

-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 주도의 스마트시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도모
- 해외 정부와 공동으로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스마트시티 조성을 구체화하고 각국의 우수기술을 공유·전파하여 상호 경제발전 추구
- * (근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 사업 개요

- (개요) 해외 정부·공공기관 대상 국제공모를 통해 해외도시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타당성조사+초청연수를 지원하는 사업
- * ('20년도 선정결과) 23개국 80건 접수(1.31~3.20) → 11개국 12건 선정(4.20)
- (사업유형) ①스마트 신도시·공항부지 등을 개발하는 도시개발형(6건)
②교통·물관리·재난·전자정부 등 단일 솔루션을 구축하는 솔루션형(6건)

스마트 도시개발형		스마트 단일솔루션형	
러시아	볼쇼이카멘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라오스	비엔티안 배수시스템 개선사업 MP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FS	몽골	울란바토르 모빌리티 플랫폼 기본구상
미얀마	달라 신도시 스마트시티 FS	콜롬비아	보고타 고속도로 교통관제센터 FS
베트남	메콩 델타 스마트시티 Pre-FS	태국	콘캔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MP
인도네시아	신수도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터키	가지안테페 데이터 통합플랫폼 MP
페루	쿠스코 공항부지 스마트시티 MP		앙카라 재해방지/관리 기본구상

나.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orld Smart City Expo : WSCE)

□ 추진 배경

-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이슈 선도를 위해 '17년 출범한 아태지역 대표 국제행사
 - * 유사 국제행사: 바르셀로나 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싱가포르 World Cities Summit 등
-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활용을 통한 스마트 시티 해외 수출확대 기반마련과 국내관련 산업 및 스마트시티 활성화 도모

□ 행사 연혁

- ('17년 제1회) '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시 스마트시티 글로벌 이슈를 선점하고,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다양한 행사를 연계 확장한 「제1회 글로벌 스마트시티 위크」 개최를 결정
 - 다양한 유관행사를 '스마트시티 위크'라는 '우산' 아래로 통합·연계, 국제 행사 성격의 2개 핵심행사(GICC, SCISA)*를 선정하여 연계행사와 동시 추진
 - *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GICC),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서밋 아시아(SCISA)
- ('18년 제2회) 국제행사로서의 위상을 갖추고자 오프닝행사를 공식적인 개막식으로 변환하는 한편, 글로벌 조인트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학회 및 참여기관이 주관하는 세미나·포럼 등을 다양화
 - 전시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전부터 개최하는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
- ('19년 제3회)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로 확대 개편하고, 스마트시티 산업 비즈니스 성과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여 아태지역 대표행사로 추진
 - 국무총리, 해외 장관, 세계적 석학, 도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시티 대표 국제행사로 브랜딩하는 계기를 마련
 - 비즈니스 상담액·계약액, 참관객, 국제교류 프로그램 등에서 양적·질적 수준 제고

□ '17년 ~ '19년 행사 개관

구 분	2017	2018	2019
행 사 명	제1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The 1 st World Smart City Week (WSCW 2017)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The 2 nd World Smart City Week (WSCW 2018)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World Smart City Expo 2019 (WSCE 2019)
슬 로 건	사람을 닮은 따뜻한 도시, 스마트시티 Smart City Towards a City of Humanity	스마트시티, 내 삶이 변화하는 행복한 도시 Smart City: For Better and Happy Life	스마트시티, 내일을 만나다 Smart City, Connecting Tomorrow
행사기간	2017.9.4.~9.8. (오프닝행사 9.6.)	2018.9.17.~9.20. (개막식 9.18.)	2019.9.4.~9.6. (개막식 9.4.)
행사장소	일산 킨텍스, 서울 코엑스 일원	일산 킨텍스, 서울 코엑스 일원	일산 킨텍스
주 최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킨텍스(KINTEX)
후 원	-	4차산업위, 기재부, 환경부, 대한상의	4차산업위, 신남방특위, 외교부, 기재부, 산자부, 중기부, 환경부, 기상청, KAA
엠 블 럼			
포 스텐			
행사구성	공식행사* * 오프닝행사(네트워킹오찬), 통합시상식	공식행사* * 개막식, 만찬(MOU 체결), 통합시상식 및 폐회식	공식행사* * 개막식, 오찬(MOU체결), 만찬, 어워즈&네트워킹 파티, 폐막식

구 분	2017	2018	2019
	스마트시티 전시 컨퍼런스 지자체·기업대상행사 초청프로그램 국민참여행사* * 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도시재생 우수논문 공모전, 대국민 참여 공모전 (그림, 글짓기, B.I., 영상) 토크버스킹	스마트시티 전시 글로벌조인트프로그램 컨퍼런스 지자체·기업대상행사 초청프로그램 국민참여행사* * 스마트시티 공모전 (어린이그림, B.I., 사진) 특화지역 아이디어·솔루션 공모 대국민토론회&토크콘서트 스마트시티 해커톤, 기상도시 시물레이션 경진대회 세종 5-1 네이밍·슬로건 공모	스마트시티 전시 컨퍼런스&세미나 G2G/G2B 행사 비즈니스&네트워킹 국민참여행사* * 스마트시티 메이커톤, 토크살롱,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개 막 식 주요참석자	국토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과기부 2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국토연구원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월드뱅크 수석이사	과기부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토부 1차관 BH과기보좌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국토연구원장 인니 공공주택사업부장관 쿠웨이트 주택부장관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정부부처관	국무총리(이낙연), 국토부 1차관, 과기부 2차관, 우즈베크 건설부장관·경제부차관,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정부부 부장관·차관보, 쿠웨이트 주거복지청 차관보, 브루나이 개발부 사무차관, 에콰도르 인프라부차관 등
기조연사	마이클 레펙 (Michael David Lepech), 에데 이야스-바스케즈 (Ede Ijasz-Vasquez)	오명 (前부총리), 샘 카사트 (Sam Cassatt, 스탠포드대 교수)	리처드 플로리다 (Richard Florida, 토론토대 교수)
컨퍼런스 세미나 등	공공서비스 혁신 컨퍼런스, 전도도시 발표 및 인증제 설명회 도시재생 컨퍼런스	글로벌 조인트 프로그램(4), 학회 주관 컨퍼런스(3) 공공기관 주관 세미나·포럼(5)	글로벌 조인트(5) 스마트시티 정책(4) 공유경제 및 지속가능성(4) 기술 및 솔루션(6)
G2G/G2B	스마트시티 MOU 6건	한·WB, 한·말 국장급 양자면담 연구기관 협력 MOU, 비즈니스 MOU	한·말(차관급), 한·영(실장급) 양자면담, 실무협의회 등 14건
전 시	스마트시티 홍보관·아트 기술체험관 스마트시티 서밋 전시 스마트시티 우수기술기업 전시	한국관(Korea Pavillion) 스마트시티 서밋 아시아 전시 스마트시티 우수기업박람회 스페어	WSCE 2019 스마트시티 전시 (*서밋 아시아 전시와 통합)
전시참여기업 (해외)	210개(2개)	250개(13개)	250개(39개)
참관객(외국인)	15,000명(260명)	21,330명(550명)	25,850명(895명)
비즈니스 상 담 액	780억(G2B, B2B)	4,600억(G2B, B2B)	2,659억(B2B)
계약액(현장)	271억(MOU 6건)	775억(13억)	1,077억(114억)

다. 월드뱅크 협력사업

□ 스마트시티 솔루션 포털 구축·운영

- (주요내용) 전 세계 스마트시티 우수사례 및 기술·솔루션 개발업체 정보를 공유(우리나라 기업 중심)하기 위한 포털 구축·운영
 - 해외 공공 발주처, 민간기업 등 스마트시티 개발 수요가 있는 기관에서 입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기대효과) 기술력이 부족한 개도국 등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할 적격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 해외 지명도 있는 WB와 함께 국내 우수업체를 소개·홍보하게 되면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기술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파견

- (주요내용) WB가 참여한 개도국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나라 전문가(공공·민간)를 단기 파견하여 기술지원·컨설팅
- (기대효과)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기술과 솔루션을 개도국에 소개, 전파 하고 본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스마트시티 지식 공유 프로그램

- (주요내용) WB가 참여한 개도국의 스마트시티 관계자를 초청, 우리나라 우수 사례지에 대한 스터디 투어, 세미나 등 진행
- (기대효과) 구상 단계인 개도국 사업 구체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우리 기업과의 네트워크 확대 가능(1:1 비즈니스 미팅 등도 병행)

라. 스마트시티 투어프로그램

□ 추진 배경

- 국내 스마트시티 체험을 원하는 국내외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국내 대표 스마트시티 현장*에 대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

* 6개 분야(①도시운영, ②스마트교통, ③스마트에너지, ④스마트환경, ⑤ICT 솔루션, ⑥기타) 총 37개 대상지('19.8월)를 발굴 운영 중

-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노하우 공유를 통한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 스마트시티 수출 지원을 위해 지속적 운영 및 확대 필요

□ 구성 및 운영

- 각종 행사참석 외빈, 교육생, 바이어 등이 체류기간·목적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투어 프로그램 마련

- 국내 우수 스마트시티 사례지의 다양한 기술 및 서비스를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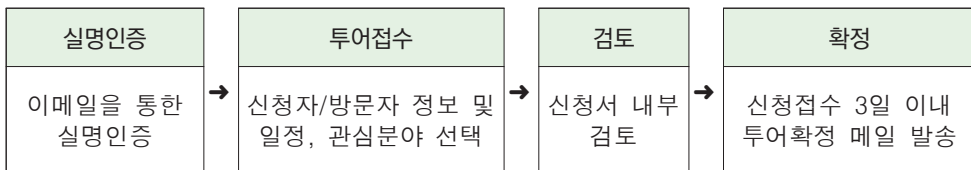
- 스마트시티 투어 전용 예약사이트*에서 원하는 투어일시, 방문대상지(관심 분야)를 선택하고, 신청자 및 방문객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문 예약사이트) <https://tour.smartcity.co.kr> 영문사이트는 '20년 내 오픈 예정

□ 신청 및 처리 절차

- 국토부나 스마트시티 유관 공공기관 등에 투어 수요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신청하면 투어프로그램 안내, 일정협의 및 투어 추진

〈 홈페이지를 통한 투어 신청시 처리 절차 〉



□ 분야별 투여 대상지

번호	분야	지역	단지명	특화요소	사업지 유형
1	도시운영	경기 안양	안양시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교통상황, 생활안전, 재난·재해, 시설 관리 등 도시 주요 상황을 실시간 통합 관리	공공
2	도시운영	경기 오산	오산시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비상벨, 쓰레기 불법투기 음원방송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 체험	공공
3	도시운영	경기 성남	성남 도시정보통합센터	도시정보기반시설, 다목적 CCTV, 교통정보시스템 등에서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 분석	공공
4	도시운영	경기 고양	고양 시민안전센터	국방부, 경찰청 등과 연계하여 통합운영	공공
5	도시운영	인천 송도	IFEZ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 홍보관	신도시에 구축된 통합운영센터, 교통, 방범·방재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관리	공공
6	도시운영	대전	대전 스마트도시 통합센터	최초로 5대 연계서비스 구축	공공
7	도시운영	세종	세종 도시통합정보센터	행복도시에 구축된 운영센터 스마트가로등, 지능형 CCTV 체험	공공
8	도시운영	전남 나주	나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스마트에너지도시에 특화된 운영센터	공공
9	교통	서울 중구	서울 교통정보센터	서울의 교통상황을 총괄 운영·관리	공공
10	교통	경기 성남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교통센터	실시간 교통상황 정보 제공 및 지능형교통관리체계 시스템 관리	공공
11	에너지	서울 노원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제로주택 실증단지	공공
12	에너지	서울 관악	서울대 마이크로그리드	IOT센서 및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활용한 에너지사용량 및 최대 전력수요를 절감하는 에너지 솔루션 시스템	민간
13	에너지	경기 고양	일산 제로카본 그린홈	신재생에너지 최대화 및 운영관리의 최적화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에 가깝게 하는 주택	공공
14	에너지	충북 충주	충주 음식물 바이오에너지센터	자원회수형 폐수처리 시스템 및 바이오가스 활용	민간
15	에너지	강원 홍천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주민 기피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청정 기술 적용하여 친환경에너지 생산	민간
16	에너지	제주도	제주 가파도 마이크로그리드	가파도를 신재생에너지 100% 자급 지역화	민간
17	환경	서울 마포	마포자원회수시설	서울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과정 관람	공공

번호	분야	지역	단지명	특화요소	사업지 유형
18	환경	경기 과천	K-water 수도권광역상수도통합 운영센터	광역상수도 관망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 및 수도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체계	공공
19	환경	경기 성남	판교 수질복원센터	오수처리 및 처리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공공
20	환경	경기 성남	판교 크린타워	수질복원시설, 소각시설과 판교환경생태학습원, 판교스포츠센터, 전망대 북카페 등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시설 운영	공공
21	환경	경기 파주	파주 문산정수장	파주 Smart City 시범사업,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수량과 수질을 과학적으로 관리	공공
22	환경	대전	K-water 물정보종합센터	수자원, 수도, 수질 등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분석 및 활용	공공
23	환경	세종	세종 자동크린넷 (제3집하장)	수집된 폐기물 처리 및 신재생에너지로 활용	공공
24	환경	세종	세종 수질복원센터B-1	24시간 수질처리 모니터링 관제 시스템	공공
25	환경	경북 고령	K-water 고령수도센터	원격검침기 실증 및 체계적인 수질관리	공공
26	ICT솔루션	서울 종로	KT 스퀘어	대한민국통신 130년의 역사전시 및 5G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체험 가능	민간
27	ICT솔루션	서울 중구	SK티움	로봇 게이트, 홀로그램 회의실, 비행서들 등 미래 체험	민간
28	ICT솔루션	서울 강남	더스마티움	한국의 스마트시티 소개 및 스마트홈 체험	공공
29	ICT솔루션	서울 마포	K-라이브x VR파크	VR 체험 가능	공공
30	ICT솔루션	경기 수원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전자산업 발전사 전시 및 다양한 디바이스 체험 가능	민간
31	ICT솔루션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체험관	다양한 ICT 기술을 이용한 증강현실 및 VR 체험	공공
32	ICT솔루션	부산	부산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체험	공공
33	기타	서울 마포	DMC 홍보관	모션 인식, 체감형 게임, VR 등 입주기업기술콘텐츠 체험	공공
34	기타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홍보관	IT 기업이 밀집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개 및 VR을 통한 공간체험	공공
35	기타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홍보관	스마트시티 동탄의 과거, 현재, 미래 전시	공공
36	기타	세종	행정 중심복합도시 홍보관	스마트시티 세종시의 소개 및 생활권별 특화방안 전시	공공
37	기타	세종	세종 밀마루 전망대	스마트시티 세종시 소개 및 도시 관람	공공

마. 스마트시티 관련 정부간 MOU 체결 현황

대상 국가	대상 도시	체결 시기	협약 형식	협약명 (또는 주요내용)	협약기관		체결 계기
					한국측	상대측	
인도네시아	-	'16.10	MOU	한-인니간 수자원·도로·스마트시티 관련 협력 양해각서	국토부 (해건)	공공사업부	유엔해비타트 III 회의 (에콰도르 키토)
페루	-	'18.03	MOU	한-페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	국토부 (해건)	교통통신부	중남미 인프라협력 출장 (페루 리마)
중국	-	'18.08	MOU	한-중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	국토부	국개발전 개혁위원회	中 제4회 스마트시티 엑스포
말레이시아	코타키나 발루	'19.03	MOU	한-말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	국토부	주택지방 정부부	정상순방
네덜란드	-	'19.07	MOU	한-네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	국토부	내무왕국 관계부	네덜란드 스마트시티 협력 출장
태국	-	'19.09	MOU	한-태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	국토부	디지털사 회경제부	정상순방
싱가포르	-	'19.11	MOU	한-싱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	국토부	스마트국가 디지털정부 추진위원회 (SNDGO)	정상방한
브루나이	-	'19.11	MOU	한-브 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	국토부	내무부	정상방한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19.11	MOU	행정도시(신수도) 건설 교류협력 양해각서	국토부 (해건)	공공사업 주택부	정상방한

Chapter IV . 주요 업무내용

2020 도시업무 편람



도시경제 분야

- | | |
|----------------------------------|-----|
| 1.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 | 151 |
| 2. 스마트도시 법령 및 제도개선 | 156 |
| 3.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및 고도화 | 159 |
| 4.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 | 165 |

1.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교통·안전 등 서비스를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제공하는 U-City*(유비쿼터스도시) 조성 추진
 - *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로, 여기에 '도시'를 조합하여 한국의 초기 스마트도시 정책의 독자적인 브랜드로 런칭
- 세계 최초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08.3 제정, '08.9 시행) : U-City 계획·건설, 관리·운영, 위원회, 지원방안, 기타(표준화, 정보보호)로 구성
- 전략적 U-City 추진 및 지자체 관련 계획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 제시를 위해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수립('09,'13)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 개요 및 연혁》

- 수립 근거 : 법 제4조, 시행령 제8조
- 수립 목적 :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 건설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제시
- 수립 주기 : 5개년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
- 제1차 종합계획('09~'13) 수립('09.11)
 - ☞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첨단정보도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전략(제도 마련, 기술 개발, U-City 산업육성, 국민체감 서비스)과 22개 과제 수립
- 제2차 종합계획('14~'18) 수립('13.9)
 - ☞ '안전하고 행복한 첨단창조도시 구현'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전략(국민 안전망 구축, U-City 확산 및 기술개발, 민간업체 지원, 해외진출)과 10개 실천과제 제시

- 신도시와 ICT를 접목해 **스마트인프라**를 확대한 성과는 있으나, **공공이 주도** 하는 **하향식(Top Down) 접근***으로 다양한 한계 노출

* 공공 주도의 일방향적 접근 → 낮은 시민 체감도,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미흡

- 기존도시에 대한 스마트서비스 발굴·확산이 부족하였고, U-City 사업 참여 업체의 **영세한 규모***로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한계
- * LH가 발주하는 통합운영센터 건설 및 S/W 보급을 위한 소규모 업체가 다수
- 정부는 세계적인 트렌드로 부상하는 **스마트시티 의제**에 대응하여, 적용 대상을 신도시에서 **기존도시로 확대**하는 등 정책 재편을 시도
- **전담조직(도시경제과)**을 신설('16.5)하고 정부의 **8대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17.12)하는 한편, 「U-City법」도 「**스마트도시법**」으로 개편('17.9 시행)
- *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차,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 부처간 협업과 전문가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신설('17.11)하고,
-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도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
-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시 성장 단계별(신규·기존·노후) 스마트시티 맞춤형 조성·확산** 방안을 담은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18.1)

◆ 「**스마트시티 추진전략('18.1)**」 등 발표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 분석과 함께,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추진방향 보완** 필요

⇒ 전문가·기업·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 계획안 마련('18.9) → 의견수렴·공청회(∼'19.6) → 국가스마트도시위 심의('19.6)

나. 스마트시티 발전 단계

- ① (∼'13, **U-City 구축**) 제2기 신도시 및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에 **고속정보통신망·시스템(ICT)** 구축 사업 결합

*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3백만m² 당 평균 약 150억원 예산 투입

- U-Eco City 연구개발(R&D) 사업('07.8~'13.6, 1,016억원)을 통해 U-City 기본 서비스 및 요소기술, 통합플랫폼 등 기반기술 개발

② ('14~'17, 시스템 연계) 既 구축된 스마트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을 중심으로 정보 및 시스템 연계 사업 추진

- 지능화 도시정보시스템 R&D 사업('13.12~'19.3, 236억원)을 통해 개발한 공공 분야 5대 연계서비스* 기반 통합플랫폼 보급** 시작

* ①112 긴급영상 · ②긴급출동 ③119 긴급출동, ④재난안전상황 ⑤사회적약자 지원

** 개소당 총사업비 12억원(국비·지방비 각 50%), 19년 현재 37개 지자체 보급

③ ('18~, 스마트시티 본격화) 4차산업혁명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리빙랩, 혁신 생태계 등 새로운 개념들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

-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국가 시범도시 조성, 기존도시 스마트화 강화, 산업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스마트시티 발전단계》

	1단계 ('~'13)	2단계 ('14~'17)	3단계 ('18~)
목 표	건설·정보통신산업 융복합형 신성장 육성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	도시 문제해결 혁신 생태계 육성
정 보	수직적 데이터 통합	수평적 데이터 통합	다자간·양방향
플랫폼	폐쇄형 (Silo 타입)	폐쇄형 + 개방형	폐쇄형 + 개방형 (확장)
제 도	U-City법 제1차 U-City종합계획	U-City법 제2차 U-City종합계획	스마트도시법, 4차산업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주 체	중앙정부(국토부) 중심	중앙정부(개별) + 지자체(일부)	중앙정부(협업) + 지자체(확대)
대 상	신도시(165만㎡ 이상)	신도시 + 기존도시(일부)	신도시 + 기존도시(확대)
사 업	통합운영센터, 통신망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	공공 통합플랫폼 구축 및 호환성 확보, 규격화 추진	국가시범도시 조성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

다. 제3차 종합계획 주요내용

1

도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 조성

- ① (국가 시범도시)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4차산업혁명 신기술·서비스 집약을 위해 도시 조성과 스마트 서비스 개발 중점 추진

- 관계부처 R&D 및 연계사업 지속 발굴, 추진 성과는 국내외 확산

* 시범도시 입주 전이라도, 스마트 신기술을 체험·실증하는 테스트베드 공간 조성

- ② (기존도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하도록, 기존 테마형 특화단지('18~), 챌린지 사업('19~) 등 조성·확산사업 개편

* (例) 기존 사업을 통합하여, 특화 도시(대) / 단지(중) / 솔루션(소) 사업으로 구분

- ③ (노후도시) 쇠퇴 도시에 대해 도시재생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22년까지 지속 추진하고, 그 성과를 쏠 뉴딜사업으로 확산

2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 ① (통합플랫폼) '22년까지 108개 지자체('19.6까지 37곳 既 보급), 이후 전국 보급을 추진, 재난·안전 분야 이외 복지·환경 등 서비스 확대

* 기초지자체(229개소)와 112·119 센터 등을 연계하는 광역센터(17개 시·도) 구축도 병행

- ② (혁신성장 R&D) 허브 플랫폼 초기모델 및 데이터 처리기술 개발(~'19), 고도화 및 6대 서비스 개발('20~'21)*, 비즈니스화 및 확산('22~) 추진

* 대구(2핵심) : 교통, 안전, 도시행정 / 시흥(3핵심) : 에너지, 환경, 생활복지

- ③ (인재육성) 향후 5년간 석·박사 과정 450명(교육인원 누계 1,800명) 육성

*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서울대, 부산대, KAIST / 대학별 年 2.9억원 지원

- ④ (정보 축적) 홈페이지 구축, 다큐멘터리 제작, 뉴스레터 발간 등 추진

3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 ① (규제개선) 지자체·기업 등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실증사업 추진
- ② (거버넌스) 범정부 위원회(4차위·스마트도시위)와 함께, 얼라이언스 및 지자체 협의체, 리빙랩 네트워크(시민) 등 참여 채널을 지속 확대
- ③ (인증제·표준화) 도시 및 서비스 단위의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과정부·산업부·국표원 등) 협업으로 국제 표준화에 공동 대응
- ④ (산업기반) 향후 5년간 年 100개 내외 청년창업 지원(중기부 협업, 각 1억), 발주방식 개선 및 수요-공급 매칭을 위한 솔루션 마켓 운영

4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해외수출 지원

- ① (해외수출) 진출 단계별 ①금융지원, ②네트워크 구축, ③대·중소기업 동반진출, ④전방위 수주노력 강화 등 포괄적 지원방안 마련·추진
- ② (교류협력) G2G(개도국 진출, 교차실증) 및 국제기구(WB, IDB) 협력, 국제 포럼 개최, 우수 연구 아카이브 구축, 학술 리포트 발간 등 병행
* 관계부처, 스마트시티 지원기관, 협회·기업 대상 연간 국제협력 계획 수립·공유
- ③ (엑스포) 스마트시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외수출 제고, 산업 활성화,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출범

2. 스마트도시 법령 및 제도개선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 스마트시티 확산 및 국가 시범도시 조성 지원,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중
 -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정의, 지정근거 마련, 각종 신산업 규제 특례를 포함한 「스마트도시법」 개정 추진
- 스마트시티가 각종 신기술을 新기술을 담는 플랫폼이자 혁신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 산·학·연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완화 추진
 - *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토론회('18.1, VIP) 등을 통해 발굴·개선 추진 중
- 이미 해외 각 국과 글로벌 기업은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 각 국의 스마트도시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로 적극 홍보
 - * 유럽(스마트도시 지표), CISCO(스마트도시 지표), IBM(스마트도시 성과지표) 등
- 국내에는 스마트시티 성과를 측정할 평가체계는 부재하므로 스마트시티 수준을 진단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인증제도 마련이 필요

나. 주요내용

1

스마트도시법 개정

- (목적) 교통·에너지 등 분야별 접근이 아니라 스마트시티라는 실제 도시 공간에서 유관 규제가 일괄 혁신되도록 패키지로 접근하기 위하여
 - 국가 시범도시 조성 지원, 시범도시 내 신산업 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발의('18.3, 황희 의원 대표발의)
 - * 기존 U-City 건설법을 스마트시티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17.9)

- (주요내용) 국가시범도시 근거, 각종 신산업 특례, 혁신성장진흥구역,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등 도입

《「스마트도시법」상 신산업 육성 특례(9개) 주요내용》

구분		신산업 특례 주요내용	관계법령
1차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한 경우에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적용 배제	개인정보보호법 등
	자율차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개발시 운전자 의무(영상장치 활용 금지) 적용 배제	도로교통법
	드론	연구개발, 안전 등 목적의 항공 촬영시 국방부 신고절차 간소화	군사기지법
	자가망	공공서비스 제공시 자기망 연계 확대 허용(現 교통·안전·방범·방재만 인정)	전기통신사업법
	공공SW	공공이 발주하는 S/W사업에 대해 대기업도 참여토록 특례 도입	소프트웨어산업법
	토지공급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을 통해 적절한 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	친수구역법 등
2차	도시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최대면적 등 확대	국토계획법
	공유차량	카셰어링 차량의 영업장소 한정 의무 등 완화로 배차·반납장소 자율화	여객운수법
	에너지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現 해수만 인정)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	신재생에너지법

2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개선

- (목적)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지원 및 규제혁신 토론회 후속조치('18.1월, VIP)를 위한 규제개선 지속 추진 * 일부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에 기반영
- (주요내용) 지자체, 기업 등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발굴 및 개선 추진 중
 - ① (자가망 연계제한) 지자체는 자가전기통신설비(자가망)을 타기관의 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해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나,
 - 현행 법령에서는 교통·환경·방범·방재의 경우만 연계가 허용되어, 스마트 시티 융복합 서비스 구현에 제약
- 지자체가 공공목적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연계분야 확대

② (SW사업 대기업제한) 국가, 공공기관 등이 SW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

→ 융·복합이 특성인 스마트시티 분야에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추진

③ (사업면적 제한) 「스마트도시법」은 최소면적규모(30만 m^2 이상)의 스마트 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

→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시티가 확산되고 다양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면적규모 제한(30만 m^2 이상) 규정 삭제 추진

④ (통합플랫폼 인증) 지자체마다 각각 다른 규격의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민간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표준 및 인증 필요성을 제기

*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법·교통 등 분야별 데이터시스템을 통합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

→ 통합플랫폼 사업에 다양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 및 민간 SW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플랫폼 표준마련 및 인증착수

3

스마트시티 인증제

○ (인증대상) 스마트도시법(제32조)상 인증대상은 스마트 △도시, △기반시설, △서비스 총 3가지로 구성

* 스마트도시 등 대상 기표기반 인증제 연구 및 시범인증 시행, '21년부터 스마트 도시 본 인증제 착수 추진할 계획

○ (인증절차) 경쟁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인증 신청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증기준에 부합여부를 심사·평가하여 최종 인증 부여

3.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및 고도화

가. 스마트 챌린지

□ 사업개요

- 사업 규모에 따라 시티-타운-솔루션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별로 지원 규모, 사업 범위, 솔루션 규모 등 차별화

1) 스마트시티 챌린지

- (목적) 기업·대학 등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솔루션)를 활용해 실제 도시 문제를 해결, 우수 솔루션은 타 지자체 및 해외로 확산
- (방식) 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기업·대학(아이디어·투자) + 지자체(공간·시민)가 사업 초기부터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
- (지원) 민간·지자체 컨소시엄에 계획수립 및 솔루션 실증 등 예비사업 지원(4곳·15억) 후 우수 사업(2곳 내외)에 조성비(3년·100억) 지원

2) 스마트타운 챌린지

- (목적) 마을 규모 단위의 지역특화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하고, 주민 수요와 지역 여건이 유사한 타 지자체 및 해외로 확산
- (방식) 리빙랩 등 지역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자체·시민이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화 스마트타운 조성
- (지원) 지자체(4곳)에 계획 수립을 지원(3억원)하고 후속평가를 거쳐 시민참여도, 계획내용이 우수한 곳에 후속 조성비(10~20억원) 지원

3) 스마트솔루션 챌린지

- (목적) 대·중규모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교통·에너지·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단일 솔루션*의 확산·구축 지원

* (예)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놀이터, 스마트 안전비콘 등 단일 솔루션 설치

- (방식) 지자체가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솔루션 업체*와 공동으로 응모, 선정 즉시 조성에 착수하여 연내 솔루션 구축 완료

* 지자체는 공개모집 등 별도 절차를 거쳐 기업을 선정한 후, 해당 기업과 공동 응모

- (지원) 지자체 10곳을 선정, 계획수립 없이 조성비 지원(곳당 6억원)

□ 기대효과

- 지역별로 행정·재정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하고, 성과가 검증된 우수 솔루션은 국내외 도시에 확산토록 지원하여 혁신 생태계 조성

□ 추진현황

- '18. 1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4차산업혁명위원회)
 - 기존도시 스마트시티 확산전략으로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 추진
 - * '18년 4곳(김해, 부천, 대전, 충북), '19년 4곳(서울 성동, 부산 수영, 통영, 공주·부여) 선정
- '19. 1월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공모 공고
- '19. 4월 ~ 5월 '19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평가 및 선정
 - * 6개 지자체(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수원시, 창원시) 선정
- '19. 7월 제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발표
- '20. 1월 스마트 챌린지 사업 개편 및 '20년 신규사업 공모 공고
 - 제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따라 기존도시 대상 스마트시티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챌린지와 테마형 특화단지 사업(스마트타운 챌린지로 명칭 변경)을 통합하고, 소규모 단위의 솔루션 챌린지 신설
- '20. 2월 '20년 스마트 시티·타운 챌린지 본사업 대상지 선정
 - * (시티)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 (타운) 서울 성동, 부산 수영, 통영, 공주·부여
- '20. 5월 '20년 스마트 시티·타운 챌린지 예비사업, 솔루션 챌린지 대상지 선정
 - * (시티) 강원 강릉, 경남 김해, 부산, 제주 / (타운) 강원 원주, 충남 서산, 전남 광양, 경남 창원 / (솔루션) 서울 양천, 서울 강동, 강원 양구, 충남 서산, 충북 청주, 경남 사천, 경남 거제, 전남 순천, 전북 완주, 광주 광산

□ 향후계획

- 그간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검증되었거나 민간에서 상용화단계인 혁신 서비스들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보급하고, 캠퍼스에서 스마트솔루션 실증 및 비즈니스화

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

□ 추진 배경

- 개별 운영되고 있는 방법·교통 등 지자체의 각종 정보시스템을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하여 도시관리를 효율화하고
- 세월호 사고('14.4) 이후 경찰, 소방 등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연계하여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추진(국정과정 86-4)
- *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각종 정보시스템 연계 및 도시상황을 통합관리 하기 위한 기반 S/W로 U-City R&D('09-'13, 100억원)로 개발
- ※ [참고] 과기장관회의('07.7)에서 통합플랫폼 개발 결정 통합플랫폼 개발 관계 부처 MOU('08.8, 국토부-행안부-지경부)

□ 추진경과

- '15년부터 지자체에 통합플랫폼과 5대 연계서비스* 보급 착수하여
- * (주요 연계서비스) ①112출동 및 현장영상 지원, ②119 긴급출동 지원, ③재난 안전상황 지원, ④사회적 약자(어린이·치매인 등) 지원, ⑤수배차량 검색 지원
- '19년까지 49개 지자체 지원(지자체 당 6억원, 50% 매칭)

④ 부처·기관 간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협력(MOU)

- ('15.7. 국토부-경찰청 업무협약) 납치·강도·폭행 등으로 인한 112 신고 및 긴급 출동 시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가 CCTV 현장 영상, 범인 도주 경로 등을 제공
- ('15.9. 국토부-안전처 업무협약) 화재·구조·구급 등 상황 시, 소방관에게 실시간 화재현장 영상, 교통소통 정보 등을 제공하여 골든타임 확보
- ('16.7. 국토부-지자체·통신사 업무협약) 아동·치매환자 등이 위급상황 시, 통신사에서 사진,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아 CCTV로 현장 상황 파악 후 신속한 도움 제공
- ('17.11. 국토부-과기부-서울시 업무협약) 25개 구청의 CCTV-정보망 등을 서울시 클라우드 센터로 연계하여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협력
- ('18.3. 국토부-에스원·ADT캡스·KT텔레캅·NSOK 간 MOU) 민간보안- 공공안전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 화재 등 긴급상황시 상호 협력
- ('19.1. 국토부-법무부 간 MOU) 전자발찌 범죄로부터 미성년자·여성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사항 위반 시 법무부 위치추적센터에 실시간 CCTV 영상 제공
- ('19.9. 국토부-경찰청 간 MOU) 강력사건 피의자 검거 등을 위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 센터와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를 연계하여 CCTV로 수배차량을 실시간 검색·적발
- ('20.6. 국토부-여가부 간 MOU) 귀가 중이거나 홀로 사는 여성에게 긴급상황 발생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 센터가 통신사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상황파악 및 긴급구조 지원

- (향후계획) 당초 '22년까지 지자체 108곳 보급 목표를 '20년까지 조기 구축하고, 이후 중소도시로 확대하여 추진

구분	합계	'16까지	'17	'18	'19	'19추경	'20	'20추경	'21	'22	'23
당초*	108개	4개	6개	12개	15개	12개	30개	-	29개		20만이하 확대검토
계획**	168개	4개	6개	12개	15개	12개	30개	29개	-	30	30
	예산액	12	36	72	93	72	180	174	-	180	180

*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에 반영

** '21~'22년 당초 물량(29개)은 '20년 추경으로 조기 구축하고, 중소도시로 확대

다. 스마트시티 인증제 및 표준화

1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제도

□ 추진배경

- 국가·기업 차원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성과평가를 활발하게 진행 중인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성과를 측정할 별도 평가체계 부재
- 한국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모델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국내 여건에 맞는 스마트시티 인증제도 마련 필요

□ 인증제도 개요(안)

① 스마트도시 인증제

- (인증대상) 지자체
- (인센티브) 국제평가 및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대내·외 홍보기회 등 부여
- (추진현황) '20년 스마트시티 인증지침 수립 및 '21년 본 인증 시행 예정

②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제

- (인증대상) 스마트도시 서비스 개발사, 제공자 또는 운영관리자
- * 기업, 지자체, 협회 등이 단독 또는 공동 신청

- (인센티브) 국제행사를 통한 우수 인증서비스의 홍보 기회 제공
- (추진현황) 서비스 도입 및 개발이 활발한 분야에 대한 시범운영(~22년)을 통해 인증기준 적합성, 시장수요 등을 확인하고 본 인증 추진

2

스마트시티 표준화

□ 추진배경

-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술적인 환경이 급변하고 융·복합 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기술·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
- 스마트시티 표준화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만큼, 범 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필요

□ 표준화 추진 현황

- 범 정부 스마트시티 표준 패넬을 구성해 운영('18.4 / 9월 2차례 회의)
 - * 국토부, 과기정통부,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토연구원, KAIA, ETRI, KT, SKT, 한국표준협회, 스마트도시협회 등 20개 민·관 기관이 참여중
 - 패넬 참여 기관 등과 함께, ①스마트시티 아시아 지역 10개국 표준 포럼('18.6), ②국제 스마트시티 표준 포럼('18.10) 등 공동 개최·대응
- 통합플랫폼 표준 마련 및 인증제 실시('18.5) : 26개사 제품 인증
 - * LG CNS, KT, ESE, 한컴 등 26개 기업의 통합플랫폼이 인증 취득
 - 도시 안전 5대 연계서비스 표준화 및 공통 UI 개발
-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R&D)* 추진('20~'23)
 - * 스마트시티 표준화 거버넌스 구축, 교통·빌딩·공간정보 등 분야별 데이터 상호 연계를 위한 표준지침 개발, 국제협력 프로그램 발굴 등

라. 스마트시티 인력 양성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도시건설과 ICT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시티 산업에 필요한 핵심 전문인력(석·박사과정) 양성
 - *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08.9)”에 스마트시티 분야 포함·추진(‘09~)
- (수행기간) 제1차 인력양성(‘09-’13), 제2차 인력양성(‘14-’18) 추진, 제3차 스마트 시티 혁신인재육성(‘19-’23)
- (수행기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KAIST

□ 인력양성 추진성과(‘09-’19년)

구 분	합 계	석·박사 과정	취업자 과정	재직자 과정	비 고
사업비 (백만원)	20,860	16,340	1,682	2,838	재직자과정(‘11), 취업자과정(‘15)은 고용노동부로 이관
교육인원(명)	6,152	2,782	672	2,698	

- (교육생 취업지원) 인턴쉽 프로그램, Job-Festival(취업컨설팅, 모의면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률이 83.6%(‘18년 일반대학원 78.9%)
- (창업 지원) 미래 도시형 新서비스와 기술을 지닌 스타트업·벤처 창업
 - * 창업실적(4개사) : 케이알에코스타(‘11), 포에스텍(‘13), 오토센싱코리아(‘16), Seadronix(‘17)
- (연구기반 조성) 국내·외 논문게재 457건, 학술발표 1,389건, 특허출원·등록 362건 등
- (사업화 지원) 혁신인재대학·지자체와 비즈니스 모델링, 경영·마케팅 등 성장 프로그램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제3차 스마트시티 인력양성 추진계획(‘19-’23)」에 따라 스마트시티 산업 발전 및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4.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

가. 추진배경 및 추진경위

-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16.8월)에서 신산업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성, 파급력 있는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
- 인공지능,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9개 분야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는 '16.12월부터 '17.11월까지 2차례의 예비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B/C=2.12 도출

나. 사업의 개요

- (사업운영)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 (예산 및 사업기간) 1,343억원*/ '18 ~ '22년(총 5년)
- * (국비) 843억원(국토부 453, 과정부 390), (민간) 291억원, (지자체) 209억원

○ 사업추진 개요

비전	▪ 세계선도형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개발로 지속가능성장주도
목표	▪ 시민 삶의 질 향상, 도시운영비용 절감 서비스만족도 80% ▪ 도시데이터 수집·처리를 통한 디지털기술확보(비즈니스창출 20건)
예산	▪ 3개 핵심과제 13개 세부과제(총사업비 1,343억원, '18~'22년)

- 본 연구개발 과제는 기반기술개발→개발기술실증→기술상용화·안정화의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단계별 목표를 구분하여 설정
- 1단계 개발목표('18~19) : 기반기술개발
- 2단계 개발목표('20~21) : 개발기술 실증
- 3단계 개발목표('22) : 기술상용화 및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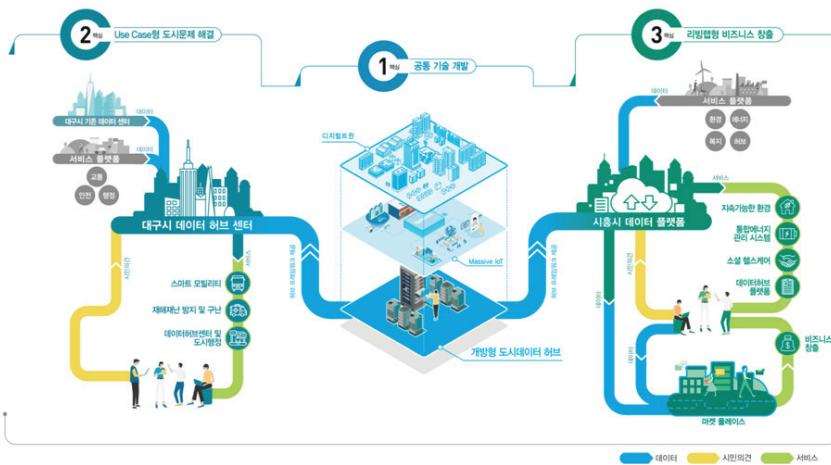
다. 연구내용

□ (1핵심) 스마트시티 모델 및 기반기술 개발(총괄 과제)

- (데이터 허브 개발) 생성된 누적 정보를 통합 운영·관리하고, 공유·활용하기 위한 개방형의 “데이터 허브 모델” 개발
 - * 데이터허브 아키텍처 모델 설계, 기존 시스템 연계 기술, 오픈 API 개발 등
- (지능형 도시운영) 분야별 데이터를 원활히 생산, 분석할 수 있도록 센싱기술 고도화, 데이터 분석기법, 디지털 트윈 등 기술 개발
 - * 실증 가이드 마련, 데이터 개방·활용 제도 검토, 국제 표준화 대응 등 수행

〈 세부과제별 추진내용 〉

세부과제	추진내용
1-1 스마트시티 개방형 데이터허브 아키텍처 및 기반기술 개발	· 개방형 데이터 허브 아키텍처 모델 구축 ·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코어 개발
1-2 초대규모 (Massive) 실시간 IoT 인프라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	· 초대규모 실시간 IoT 기술 고도화 · 스마트시티 환경 Massive IoT 네트워크 기술 개발 · 도시행정 자동화 Semantic Data Management 기술 개발
1-3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가상화 기술 개발	· 서비스 가상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개발 · 스마트시티 SOS(System of Systems) 매니지먼트 Tool 개발
1-4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관리·평가모델 개발 및 협력프로그램 발굴	· 스마트시티 Index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 스마트시티 협력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2핵심) 스마트시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Use Case형 실증

-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문제 해결(교통·안전·행정 Use Case)을 위한 맞춤형 데이터 허브 실증,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솔루션 개발·검증

- ▶(교통) 실시간 교통수단 빅데이터 분석기술,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 등
- ▶(안전) 재해재난 실시간 예측·분석 시스템(대응 알고리즘), 구난 서비스 등 개발
- ▶(운영관리) 5D기반 시설물 통합관리(IoT 연계기술) 및 지능형 민원서비스 등

〈 세부과제별 추진내용 〉

세부과제	추진내용
2-1 스마트 모빌리티 및 주차공간 공유 지원 기술 (교통)	• 스마트 모빌리티 활성화 • 주차공간 공유기반 이용효율 극대화
2-2 데이터공유를 통한 도시 재해재난 안전 및 사회안전 긴급 구난 기술 (안전)	• 경사지 붕괴 및 수재해 예측을 통한 조기 경보 대응 • 사고/범죄 발생 시 긴급 구난 대응 체계
2-3 데이터 허브 센터 및 도시행정 서비스 고도화 기술(도시 행정)	• 5D기반의 도시 공간 시설물 통합 관리 • 스마트시티 소셜 클라우드 소싱 및 포털 기술 • 개방형 데이터 허브 구축 • 스마트시티 운영 모델 구축
2-4 시민참여형 도시 문제해결을 위한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UseCase 개발	• 지자체(대구시) 자유공모, 지정공모 과제 발굴 • 스마트시티 지정형 교통안전 및 관제 기술 개발 • 도심 내 무단투기 쓰레기, 귀갓길 안전 솔루션 개발 • 도로, 교통망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솔루션 개발 • 대구시 에너지 자립율 목표달성을 위한 ECO Dashboard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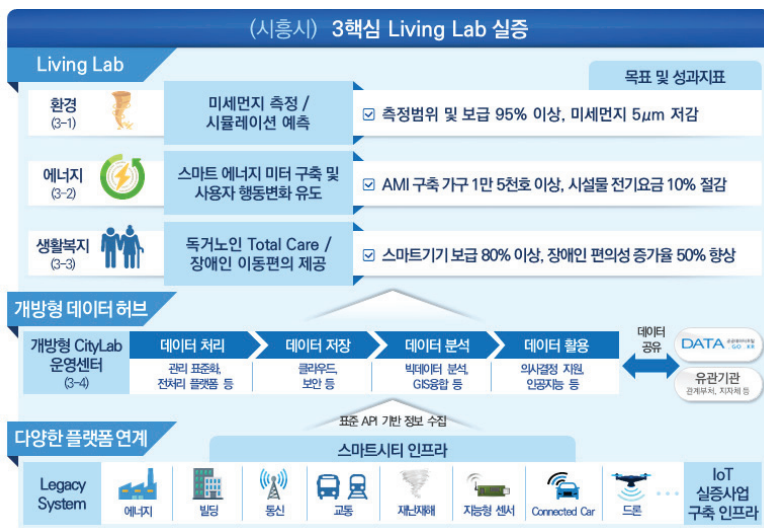
□ (3핵심) 기술혁신 및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리빙랩형 실증

-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등)을 위한 맞춤형 데이터 허브 실증, 다양한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검증
-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솔루션 자유공모, 리빙랩 실증

- ▶(환경) 클라우드 소싱 기반 미세먼지 예측·Mapping·알림 시스템 개발 등
- ▶(에너지) 지구단위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를 통한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
- ▶(생활복지) 독거노인 토탈케어, 장애인 이동권 확보(GIS, VR 기반)등 기술 개발

〈 세부과제별 추진내용 〉

세부과제	추진내용
3-1 환경 분야 스마트시티 리빙랩 구축	• 클라우드소싱(Crowdsourcing) 기반 도시미세먼지 측정/시뮬레이션/예측
3-2 에너지 분야 스마트 시티 리빙랩구축	• 홈/빌딩/공공 시설물 통합 에너지 관리
3-3 생활복지 분야 스마트 시티 리빙랩구축	• 영상정보 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의 독거노인 TotalCare System • 클라우드소싱 및 VR 기반, 장애인 이동성 보장 시스템
3-4 개방형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리빙랩형)	• 개방형 데이터 허브 구축 • 스마트시티 운영 모델 구축 • City Lab을 통한 혁신 기술 검증
3-5 지역기반의 스마트 시티 민간 비즈니스 모델 개발(자유 공모)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추진내용 확정 예정



Chapter IV . 주요 업무내용

2020 도시업무 편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분야

1.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개요	171
2. 세종 국가시범도시 추진현황	174
3. 부산 국가시범도시 추진현황	177
4. 국가시범도시 민·관 SPC 추진현황	180

1.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개요

가. 추진배경

-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 자원 및 인프라 부족, △ 교통 혼잡, △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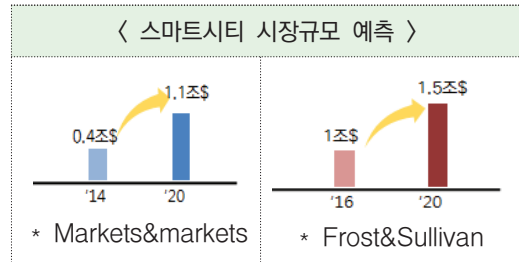
* 도시화율('15년, UN) : 한국 82.5%, 일본 93.5%, 미국 81.6%, 영국 82.6% 등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 인프라 확충 대신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저비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이 주목

-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新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스마트시티가 빠르게 확산중

- 글로벌 저성장 추세, 첨단 ICT의 급격한 발전, 증가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

※ 스마트시티는 향후 10년간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평가



- 혁신성장 선도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新기술의 성과 가시화를 위하여,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이 필수

-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지능형 인프라, 자율차·드론 등 이동체, 가상현실,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교통·에너지·환경 등 파급효과가 큰 미래 新성장동력으로 역할 수행

⇒ 이에, **백지상태의 부지활용 장점**을 살려 각 분야가 긴밀히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나. 추진 경과

-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 및 시범도시(세종, 부산) 지정('18. 1월)
- 민간 주도,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선정('18. 4월)
-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18. 7월) 및 시행계획 수립('18. 12월)
-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대해 전담기관과 합동으로 콘텐츠 구체화 및 기획·설계 추진('19년)
- 부산 시범도시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식 개최('19.11월)
- 세종 시범도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19.12월)
- 국가시범도시에 도입할 서비스에 대한 기술수준 분석결과, 서비스 시행계획, 구축·운영 주체, 예산, 이슈 등을 검토한 서비스로드맵 수립('19. 12월)
- 민·관 SPC 민간기업 공모 추진('20. 4월)
- 세종 시범도시 조성공사 착공('20. 6월)

〈추진 단계〉	〈시기〉	〈 추진내용 및 계획 〉
총괄정책 수립	'18.1 ~ '18.12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발표 및 시범도시 지정('18.1) ▶도시별 총괄계획가(MP) 선정('18.4) ▶기본구상 발표('18.7) 및 시행계획 수립('18.12)
실행계획 수립	'19.1 ~ '19.12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보고회(VIP) 개최('19.2) ▶합동사무소 구성('19.3), 콘텐츠 구체화 진행('19) ▶부산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식(VIP) 개최('19.11) ▶세종 기본계획('19.7)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19.12)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수립('19.12)
시행계획 이행	'20.1 ~	▶세종 부지조성공사 착공('20.6) ▶사업법인(SPC) 기업공모 중

다. 추진전략

-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세계적 수준의 국가 시범도시 조성
- △4차 산업혁명 관련 융복합 新기술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 해결·삶의 질 제고,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을 균형있게 추진
- ※ 국내 신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해외진출도 활성화

①신기술 테스트베드	②도시 문제해결	③혁신 산업생태계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新기술을 도시에서 테스트 → 시민 피드백 리빙랩	교통, 에너지 등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구현 → 삶의 질 제고	도시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新서비스 개발 → 스타트업 등 신산업 창출
▶선도 기술 및 서비스 ▶R&D 실증과제	▶상용 기술 및 체감 서비스 ▶취약계층 배려정책 등	▶데이터허브 구축 ▶규제/자금지원 등 연계

[1] 미래 선도기술의 테스트베드 ⇨ 4차산업혁명 기술개발 및 확산

- 국가 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다양한 미래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지능형인프라, 융합 신산업 서비스 등을 적극 반영
- ⇨ 도시에 구현할 수 있는 핵심기술 중 5년 내 개발이 가능하며, 결과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증형 R&D를 접목

[2]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 ⇨ 도시문제 해결 및 신산업 창출

- 분야별로 단절되어 있는 도시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빅데이터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허브 모델 구현
- 도시 계획단계부터 지능형센서, IoT 데이터 수집계획 등을 반영하고, 각종 상황에 대한 실시간 감지, 분석, 대응 등 지능형 도시운영
 - * 상황감지(붕괴) → 119 연계, 응급의료 준비, 대피시 교통통제 등 지능형 상황 대처
- 도시 데이터를 기업, 시민 등이 쉽게 활용하도록 개방형 운영체계 구축(오픈 API), 창의적인 수요자 맞춤형 신규 솔루션 개발 유도

[3] 민간기업·시민이 주도 ⇨ 혁신 생태계 조성

- 도시계획 초기부터 민간기업이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하는 등 민간참여 확대 및 민관공동 사업 추진
- 백지상태의 장점을 살려 계획-설계-시공-입주 쉼 단계에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반영(팀 챌린지, 리빙랩 등 활용)

2. 세종 국가시범도시 추진현황

가. 현황

- 세종 시범도시는 행복도시 북동쪽 여의도 규모 도시로서 연접한 생활권과 연계가능하고 다양한 신기술 적용 가능한 적정규모

- 위 치 : 세종시 합강리 일원(5-1생)
- 면 적 : 2.74km² (83만평)
- 계획인구 : 23천명 (9.7천세대)
- 사업기간 :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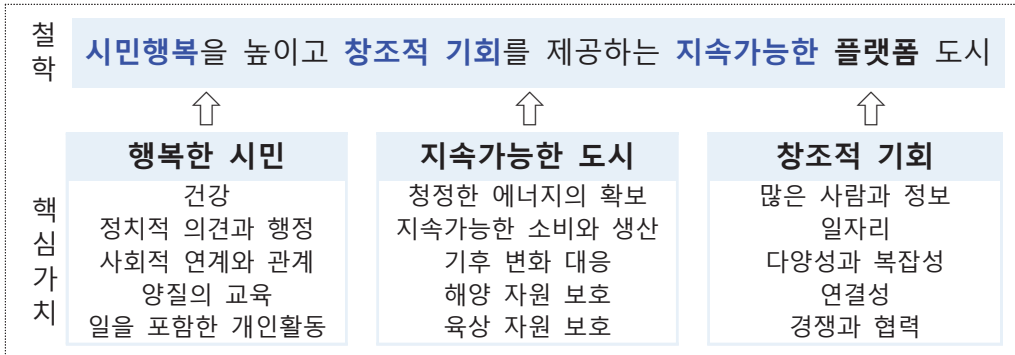


○ 입지적 장점

- 오송, 청주방면 행복도시 진입부로 오송역 및 청주공항 접근성 우수
- 금강, 미호천 합류부에 연접하여 수려한 자연환경 보유

나. 비전 및 핵심가치

- 세종 시범도시는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



다. 추진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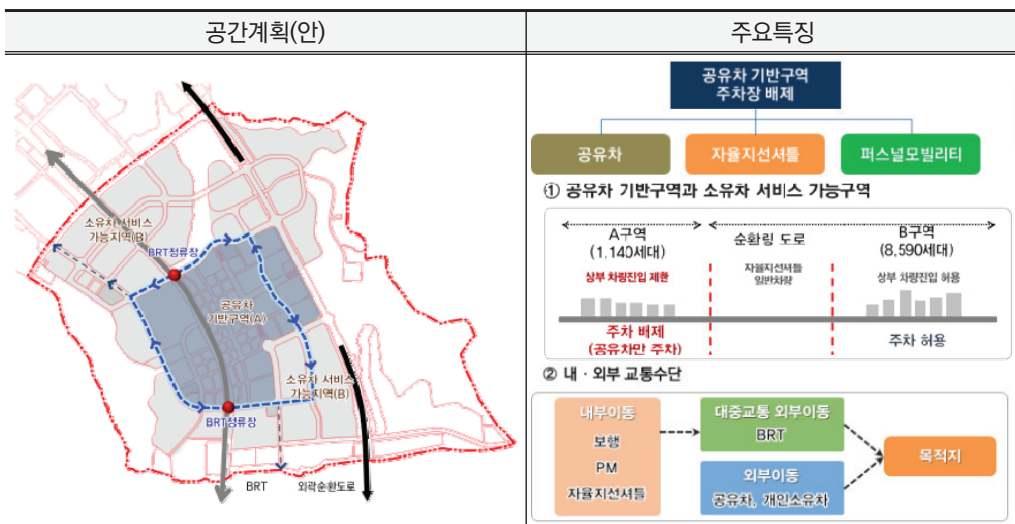
- 혁신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의적 인재 및 기업을 유도할 수 있는 용도 혼합, 차없는 도시구조 등 혁신적 공간계획 수립
- 우리나라 도시 및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 행복을 이루기 위한 7대 혁신요소 서비스 도입

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계획

- (용도혼합 계획) 동일한 토지에 대한 다양한 용도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상업·산업의 유연한 용도혼합 도시계획 실현
 - 주거·상업·산업의 기능이 조화롭게 융합되어 건축되며,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기능과 규모를 설정(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19.12)
 - 유연한 용도혼합을 위해 대상지 전체를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혁신성장기능 도입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

[일반적 토지이용]				[용도혼합 토지이용]			
도시지원 시설용지	공원녹지	주거용지	학교 용지	용도혼합 용지	공원녹지	용도혼합 용지	학교 용지
공공업무 용지	상업용지	주상복합 용지	주상복합 용지	공공업무 용지	용도혼합 용지	용도혼합 용지	용도혼합 용지

- (차 없는 도시구조) 생활권 주요골격인 순환링에 자율지선서들을 적용하고, BRT와 공유차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 기능 강화
 - 순환링 내부는 개별필지의 주차시설과 소유차 진입이 배제된 공유차 기반구역으로, 외부는 소유차 서비스 가능구역으로 구분
 - 공유차 기반구역은 보행 중심으로 PM, 자율지선서들을 운영하고, 소유차 서비스 가능구역은 BRT, 공유차, 소유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



마. 혁신 서비스 추진방향

7대 혁신요소		추진방향 / 서비스
①	 모빌리티	공유교통수단과 자율주행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통해 도시생활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자동차 수를 점진적으로 축소 * (차량공유 서비스) 퍼스널 모빌리티, 차량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 통합모빌리티, 수요대응형 모빌리티 등
②	 헬스케어	개별 병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신속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응급데이터센터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 *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토큰 서비스, 시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스마트홈 주치의 서비스 등
③	 교육/일자리	청소년들에게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어른들에게는 창업과 취업을 위한 생애교육을 제공 * 스마트 학습공간(온라인, 오프라인), 에듀테크 도입, 학습체제(IB) 도입, 생애교육 서비스 등
④	 에너지/환경	환경친화적 에너지 혁신기술 도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에너지 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공급, 에너지 자립도시, 융복합 충전인프라 등
⑤	 거버넌스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공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인센티브로 시민참여 촉진 *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⑥	 문화/쇼핑	시민들에게 맞춤형 문화·예술·공연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도시 어디서나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쇼핑 서비스를 제공 * 공연자-관객 맞춤 연계서비스, 가변형 공연 문화공간 구축,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⑦	 안전/생활	생활안전 및 치안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처 * 도시 범죄예방 및 긴급대처 서비스, 스마트 생활 편의 서비스, 융복합 어린이놀이터 콘텐츠 등

3. 부산 국가시범도시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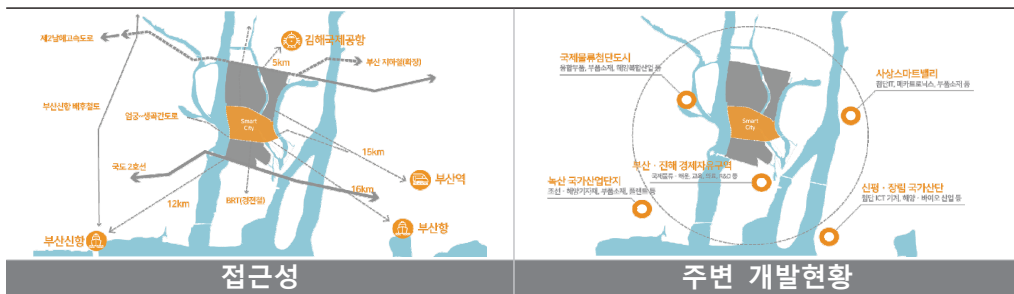
가. 현황

- 부산 시범도시는 부산 에코델타 중심인 세물머리 지구 위치, 도심수로·상업 지구·스마트쇼핑센터·R&D단지 등 핵심시설 집중

- 위 치 : 부산시 강서구 일원 (세물머리지구)
- 면 적 : 2.8km² (84만평)
- 계획인구 : 8.5천명 (3,380세대)
- 주요기능 : 주거, 상업, 업무, R&D시설 등



- (입지적 장점) 우리나라 제2의 도시(350만명)에 위치, 세 갈래 하천을 중심으로 생태환경과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이 어우러진 도시
- (수변도시) 낙동강 하구지역에 조성되는 친수형 수변도시로서, 수자원·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혁신기술 도입에 적합
- (산업연계) 부산에서 추진하는 서부산 개발계획 및 동남권 산업벨트의 중심으로서, 향후 주변지역과의 산업 연계 효과 기대
- (배후도시) 부산시범도시에서 실증한 신기술의 원도심 확산이나 대도심의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의 재검증 등 가능
- (접근성) 김해신공항(5km), 제2남해고속도로 및 부산신항만(12km) 등이 인접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유치나 도시모델 수출에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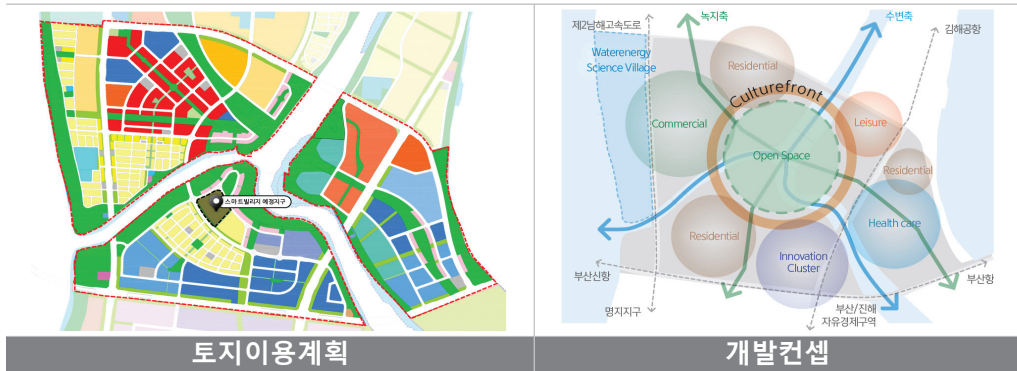


나. 비전 및 핵심가치

비 전	핵심가치
자연, 사람, 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	'4차 산업혁명 기술 육성, 삶의 질 향상'

다. 공간계획

- 직주근접의 **복합적 토지이용계획**, 녹지·수변 접근이 쉬운 **친환경 도시**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
- 직장와 주거공간이 근접한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



- 어느 곳에서든 5분 내에 녹지와 수변에 접근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



- 혁신기술이 집약된 스마트빌리지(56세대)를 시작으로 본격 입주('21.末)
 - * 헬스케어, 수열에너지, AR·VR, 워터-에너지 사이언스 및 공공자율혁신클러스터
 - ※ 연차별 스마트시티 도시조성 예상(안)



라. 혁신 서비스 추진방향

- 새로운 개념의 도시 플랫폼을 활용하여 **개인, 사회, 공공, 도시** 등 4대 분야에서 기존 도시와 확연히 구분되는 **혁신적 변화를 창출**

10대 전략과제	추진방향
①  로봇 활용 생활혁신	시민 일상생활(육아, 교육, 의료 등) 및 취약계층, 영세상공인 지원에 로봇을 활용하여 세계적인 로봇 도시로 조성 * 가정용 AI 비서 로봇, 배송로봇, 재활로봇 도입 및 로봇 테스트베드 제공 등
②  배움-일-놀이(LWP)	배움, 일, 놀이가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기능의 Hub공간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일자리 창출 * LWP센터(도서관, 스마트 워크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③  도시행정·도시관리 자동화	도시운영·관리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도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관리 효율성 극대화 * 증강도시 활용 도시행정, 로봇을 활용한 도시유지관리, 시민자치 행정 등
④  스마트 워터	도시 물순환 전 과정(강우-하천-정수-하수-재이용)에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물로 특화된 도시로 조성 * 도시강우 레이더, 스마트 정수장, SWMS(Smart Water Management), 하수재이용 등 도입
⑤  제로 에너지 도시	물, 태양광 등 자연이 주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친환경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율 100% 달성 * 수소연료전지, 수열 및 재생열 활용한 열에너지 공급, 제로에너지 주택시범단지 도입
⑥  스마트 교육 & 리빙	도시 전체를 스마트 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스마트홈, 스마트 쇼핑 등 시민 체감형 콘텐츠를 도입하여 편리한 삶 제공 * 에듀테크, City App도입, 스마트홈, 스마트쇼핑센터 도입 등
⑦  스마트 헬스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도입하여 개인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방법을 Check하고 일상에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돕는 도시로 조성 * 실시간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헬스케어 클러스터도입(대학병원, 연구시설 등) 등
⑧  스마트 모빌리티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며 빠르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 * 스마트도로-차량-주차-퍼스널모빌리티를 연계한 토달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⑨  스마트 안전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능형 재난·재해 예측 및 신속·정확한 시민 안전서비스 제공 * 비상 응급상황 대응 최적화 시스템, 빌딩내 대피유도 시스템, 지능형 CCTV 도입 등
⑩  스마트 공원	사람중심의 'smart tech' 와 'design'을 결합하여 더 건강한 자연·환경 제공과 일상 속 "스마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공원으로 계획 * 도시문제 해결(미세먼지 저감, 물 재이용), 신재생 에너지 등 스마트 기술 체험 공원

4. 국가시범도시 민·관 SPC 추진현황

가. SPC 공모 개요

- (공모목적)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의 스마트 서비스 구축·운영 및 선도지구 조성에 참여할 민간부문사업자를 공개적으로 선정

* SPC는 민간부문사업자(기업)와 공공부문사업자(지자체, 공기업)로 구성

- 민관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글로벌 혁신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혁신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도입·운영되는 플랫폼 시범도시 창출

- (사업범위) ①시간적, ②공간적, ③내용적 범위로 구분

① (시간적) 시범도시 목적 달성을 위해 기업이 **최소 15년**(구축 5년+운영 10년) 이상의 사업기간을 제안(평가에 반영)

② (공간적) 서비스의 경우, 시범도시 전체지역*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관할 지자체 전체(세종시·부산시)로 확대 적용 가능

* (세종) 5-1생활권(83만평, 23천명) / (부산) EDC내 세물머리 주변(84만평, 8.5천명)

- 부동산 개발(선도지구)은 세종은 혁신벤처존(필수)+리빙존(선택), 부산은 스마트빌리지 부지(필수)+상업·업무·유통 부지(선택)를 대상

③ (내용적) △스마트 서비스(필수·선택·자유제안) 구축·운영·고도화 및 △선도지구(스마트건축물) 조성·운영 등 사업 추진

- (서비스) '필수·선택·자유제안'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도입하고, 민간이 이에대한 세부내용(서비스 구축·운영 계획, 사업모델 등) 제안

- (선도지구) 관련 상위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부합하며, 스마트 서비스와 연계가능한 스마트 건축물 개발계획 등을 제안

나. SPC 스마트서비스

- (기본방향) 시민 체감도 높은 서비스 구축·운영 및 기술발전에 따른 지속적 고도화를 위해 민간이 제안하는 서비스를 도입 추진

- 공공이 큰 틀을 제시(사업공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이 제안(사업제안)하면, 상호협의를 통해 서비스 사업범위·내용을 구체화

○ (서비스 구분) ①필수, ②선택, ③자유제안 서비스로 구분

- ① (필수 서비스) 정부가 필수적으로 도입해야할 서비스의 항목과 내용을 제시
 - 다만, 민간기업의 혁신성과 재량에 따라 구현방식이 다른 대안도 제안 가능
 - ② (선택 서비스) 정부가 제시하는 서비스 리스트 중 기업재량에 따라 선택 가능
 - ③ (자유제안 서비스) 서비스 분야·항목에 제약없이 자유롭게 서비스 제안 가능

- 특히, 서비스 인프라인 ①AI·데이터허브, ②디지털트윈, ③스마트 IoT, ④사이버 보안 등은 세종·부산 공통 필수서비스로 선정하고,
 - 총괄계획가(MP) 구상, 지자체 정책 등을 감안, △세종은 모빌리티, △부산은 헬스케어, 로봇 등을 특화하여 필수서비스로 추가 반영
- 그 외의 서비스는 민간의 역량·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선택·자유제안 합쳐 총 5개이상)하되,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

다. 예산 및 중소기업 지원

○ (예산지원) 혁신서비스(필수+일부 선택 서비스) 구현을 위한 구축비 (일부 운영비 포함)를 각 지역당 총 800억원(+α) 수준* 지원('20~'24)

* 국비지원 총액은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중소기업 지원) SPC 공모 시, 중소기업 사업참여 확대 및 스타트업 창업 지원 방안을 제안토록 하여 대·중소 상생 협업체계 구축

Chapter IV . 주요 업무내용

2020 도시업무 편람



도시활력지원 분야

1. 수소 시범도시 조성	185
2. 도시개발법령 운용 및 사업	196
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01
4. 새뜰마을사업	210
5. 기반시설부담구역제 운영	219
6.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223
7.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228
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238
9.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246

1. 수소 시범도시 조성

가. 추진배경 및 추진 경위

- 수소경제의 비전, 정책과제 등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 (‘19.1)하고 도시차원의 종합적 접근 검토 필요성 대두
- 既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도시 내에서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 등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 마련(‘19.10)

나. 수소도시 미래 모습

- (생산) 부생수소, 추출수소 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기술이 발전하여 마을·건축물 단위의 그린수소 생산
- (저장·이송) 액화·고체 저장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내·도시간 대용량으로 수소 저장·이송이 가능해져 가격 경쟁력 확보
- (활용) 수소 발전시설, 수소 메가스테이션* 등 핵심 기반시설을 통해 주거·교통·산업 등 도시활동 전반에서 수소를 안전하게 활용

* 대용량 수소저장, 저장된 수소를 건축물·충전소 등에 공급, 안전 모니터링 등

다. 수소도시 비전 및 목표

👁 비전 : 세계 최초 수소도시 조성으로 수소도시 세계시장 선점

목표		시범도시 조성기('22년)		수소도시 확산기('30년)		수소도시 고도화기('40년)
	도시	수소 시범도시 3개		전국 지자체(시·군·구)의 10%를 수소도시로 조성		전국 지자체(시·군·구)의 30%를 수소도시로 조성
	- 주거	- 연료전지 9.9MW (발전용 9.4MW, 주거용 0.5 MW)	⇒	- 연료전지 98.9MW (발전용 79.8 MW, 주거용 19.1 MW)	⇒	- 연료전지 296.7MW (발전용 235 MW, 주거용 61.7 MW)
	- 교통	- 수소차 670대 - 수소버스 30대		- 수소차 140,750대 - 수소버스 2,100대		- 수소차 825,000대 - 수소버스 12,000대
	- 기술	- 메가스테이션 계획 확정		- 그린수소 분담율 10%		- 그린수소 분담율 20%

라. 수소도시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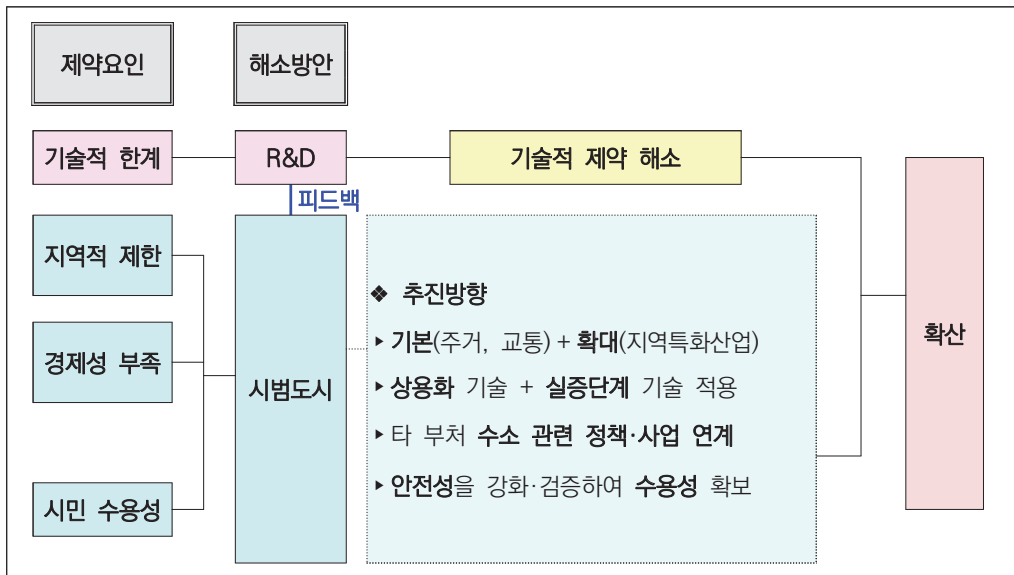
○ 제약요인 분석

- ❶ (기술적 한계) 수소 생산, 저장·이송, 활용 관련 기술 중 상당 부분이 상용화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이 제한적
- ❷ (지역적 제한) 중규모 이상 수소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부생수소 생산지(울산, 여수 등) 또는 도시가스 지역거점(전국 142개소)으로 제한
- ❸ (경제성 부족) 아직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수소가격이 절감되기 前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구축을 위해 수소가격 절감 필요
- ❹ (시민 수용성) 아직까지는 수소가 생소한 에너지원이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전면 적용시 주민 반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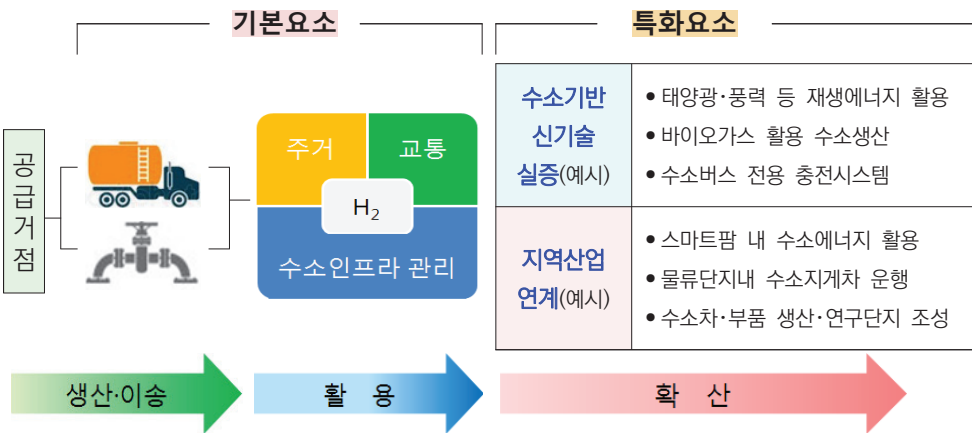
○ 세부 추진전략

❖ 현 시점에서 제약요인으로 인해 수소도시를 전격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수소 시범도시」를 지정, 단계적 접근

⇒ 도시활동의 핵심인 주거, 교통 분야에 집중하여 수소활용 기술을 실증하고 안전성을 검증, 범부처 R&D로 기술적 제약 해소. 또한, 타 부처 수소 관련 사업과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 **생활권 단위***로 도시활동의 핵심인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의 수소 활용을 기본 요소로 하고, 기술육성·지역 특성에 따른 특화요소 반영



〈 수소시범도시 모델(안) 〉



- (개념) 도시 내 수소생태계*가 구축되어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서 도시혁신을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 도시안에서 수소의 생산-저장·이송-활용이 이루어지는 수소 밸류체인 형성

1

기본요소 (주거·교통)

- ❖ 도시활동의 핵심인 주거와 교통 분야에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 연료전지, 수소 충전소, 통합운영 플랫폼 등 핵심인프라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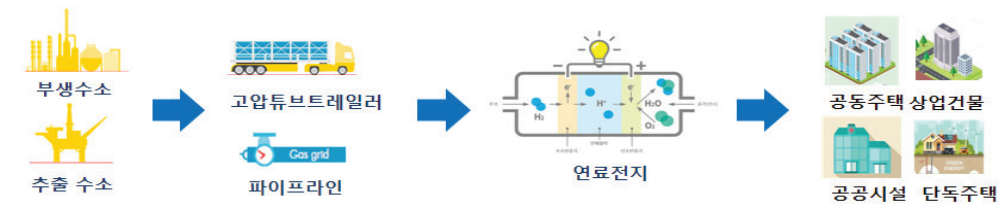
□ H₂ 주거

- (개요) 단지 또는 개별 건축물 단위로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전기, 냉·난방 등 에너지 공급*

* 건축물 내 에너지를 공급하는 요소(액티브 요소)로 수소 활용

- (유형) 공동주택(시범도시에서는 필수), 상업건물, 단독주택, 공공시설 등에서 전력수요를 고려하여 연료전지 용량(1~440kW) 선택

생산	저장·이송	활용
① 산업단지내 부생수소 ② LNG인수기지 등 수소생산기지에 서 수소 추출 ③ 도시가스 배관에 추출기를 달아 수소 추출	• 튜브 트레일러 • 파이프라인 (③ : 이송 불필요) ↓ 생산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이송	① 공동주택형 • 440kW급(500세대), 100kW급(100세대) 등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가정내 전기와 열 공급 ② 상업건물형 • 오피스빌딩 또는 상업용 건물에 대용량 연료전지를 설치, 전기·열 공급 ③ 단독주택형 • 개별단독주택(농가 등, 1kW 이하) 또는 단독주택 단지내 연료전지 설치, 전기·열 공급 ④ 공공시설형 • 지역내 홍보효과가 큰 공공청사, 도시공원 등에 용량별 연료전지 설치, 전기·열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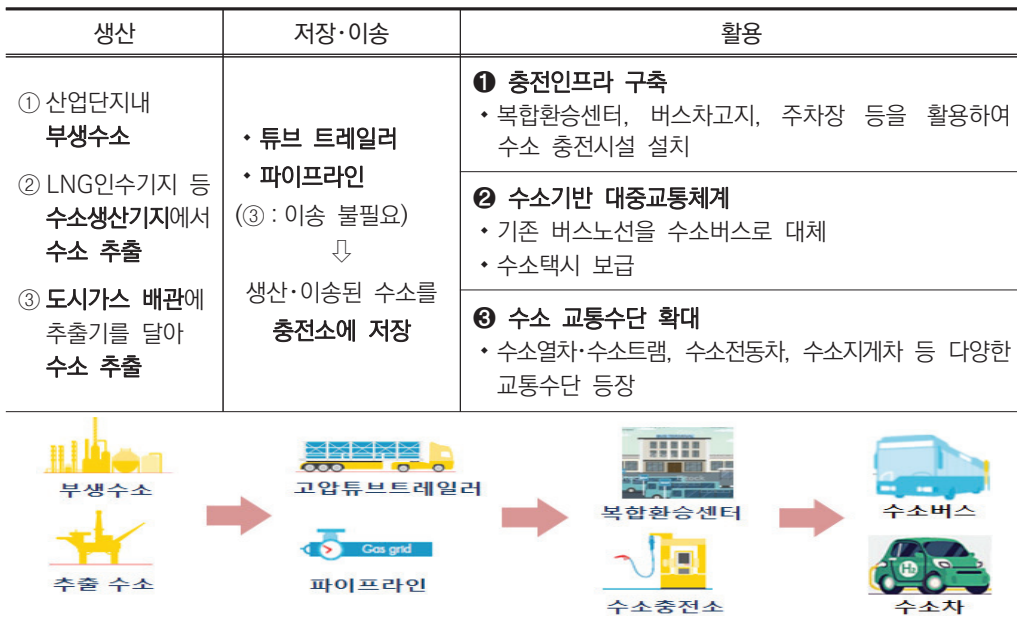
- (기대효과) 연료전지를 통한 분산발전으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 도시환경 개선*, 주민의 에너지비용(전기·온수 사용료) 절감 가능

* 440kW급 연료전지 1대(500가구)당 연간 CO₂ 500톤 절감, NO_x 1.5톤 절감 등

** 경제성 확보를 위해 연료전지용 도시가스요금을 '19.5.1일부터 6.5% 인하

□ H₂ 교통

- (개요) 도시내 또는 인근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차·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하여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 구축
- (유형) 도심 내외부 공간에 수소 충전시설 구축, 수소기반 대중교통체계 마련, 다양한 수소교통수단 실증



- (기대효과) 실증기간 중 충전소 구축·운영 보조를 통해 충전비용 및 교통 요금을 인하하고, 도시환경 개선* 효과

* 수소버스 1대 운행시 시간당 308명, 수소차 1대 주행시 시간당 43명 분 공기 정화

□ H₂ 인프라 관리

- (개요) 통합운영센터에서 수소 공급·저장·이송 현황, 안전성 등 실시간 관리

- (기대효과) 도시 내 수소활용 현황과 안전성을 주민이 실시간 확인 가능

(수소통합운영센터 조감도)



3

특화요소 (혁신기술·지역산업)

- ❖ 기본요소(주거+교통+수소인프라 관리)에 추가하여, ①도전적·혁신적 기술 실증, ②지역특화산업·핵심 인프라와 연계 시도

□ H₂ 혁신기술

- 국내기술 중 상용화에 이르지 못한 기술을 독립된 공간에서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실증하고 안전성·확장가능성 검증
- 시범도시 사업과 R&D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 실증 기술 예시 》

구분	실증기술 내용	기대효과
① 그린수소 생산형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용 - 폐기물 내 바이오가스 활용	그린수소 생산을 통한 환경개선 효과
② 저장·운송 혁신형	- 도시거점 메가스테이션 구축·운영 - 저압 파이프라인 국산기술 상용화	대용량 수소 공급 및 효율적 수소 관리 가능
③ 수소활용 확산형	- 단지내 최적화된 연료전지 운용 시스템 - 수소버스 전용 충전시스템 국산화	수소활용처 다양화

□ H₂ 지역산업

- 지역특화 산업 및 거점 인프라 등에 수소를 접목하여 지역내 수소 활용을 가시화하고 시범도시간 차별화 유도

《 지역특화 산업 예시 》

구분	사업내용	기대효과
① 지역 특화 산업형	농·어업 - 스마트팜 내 수소에너지 활용 - 농가 연료전지 구축 - 수소어선 제작·실증	수소활용분야 및 지역 확대
	제조업 수소차·연료전지·부품 등 생산 확대	수소도시 확산기반 구축
	관광업 - 주요 관광시설·홍보관 등 연료전지 구축 - 관광노선 수소버스 운행	수소 홍보효과 극대화
	에너지산업 대규모 태양광, 풍력 등 발전소재지에서 수전해를 통한 수소생산 실증	그린수소 생산으로 환경개선
② 지역인프라 연계형 (공항, 항만 등)	- 공항, 항만시설내 수소차 충전소 - 공항 수소버스 운행 등 - 물류단지내 수소지게차 운행	- 물류분야 수소활용 확대 - 추후 수소 수입기지로 활용 검토
③ 수소지식연구형	대학·연구단지 등에서 수소 기술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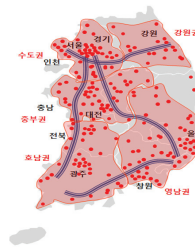
바. 시범도시 부처 연계 지원

❖ 시범도시에 수소 관련 부처 사업을 연계하여 집중 지원

- (수소충전소) 시범도시에 **는 물량제한 없이*** 수소(버스 포함) 충전소 구축 지원 (환경부)

* 충전소 부지가 확보된 지역에 한함

** '22년까지 전국에 310기 설치예정



- (수소버스) 수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범도시 1곳당 수소버스 10대 이상 우선 지원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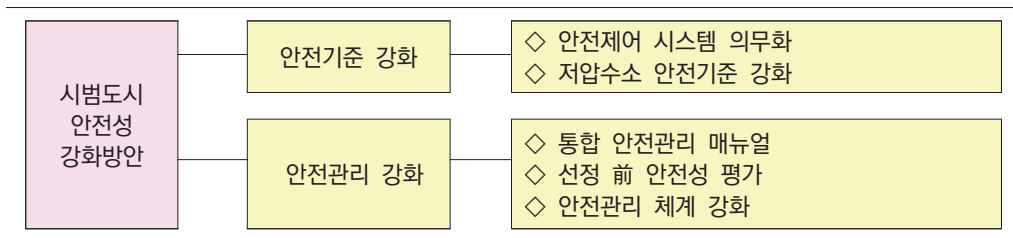
* (시내버스) ('19) 37대 시범사업 → ('20) 300대 → ('22) 2,000대(누적)

- (수소가격 인하) 시범도시 내 수소 생산설비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운송 비용을 절감시켜 수소가격 인하 추진 (예시: 약 10%)

- 시범도시 내에 분산형 생산기지 구축사업*(중·소규모 추출기 지원)을 연계·지원하여 저렴한 수소 공급 (산업부)
 - * 수소 수요처 인근에 추출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 5곳 선정 계획
- LNG 충전소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LNG 용·복합 충전소를 구축,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 공급 (가스공사)
 - * LNG 충전소와 수소 충전소가 결합된 LNG 용복합 충전소를 구축(LNG를 운송하여 수소 충전소의 추출 설비에 공급)
- (R&D 실증지구) 범부처 R&D에서 개발되는 신기술, 정부부처 수소관련 실증사업 후보지로 우선 검토 (과기부)
 - * 6개 부처(과기부 주관, 국토부, 산업부 등), 산학연 전문가 70여명 TF 구성·운영
- (REC) 연료 전지를 활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 REC를 발급하여 유지 관리비 절감에 활용 (산업부)
 -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공급하고 전력·REC 판매 수입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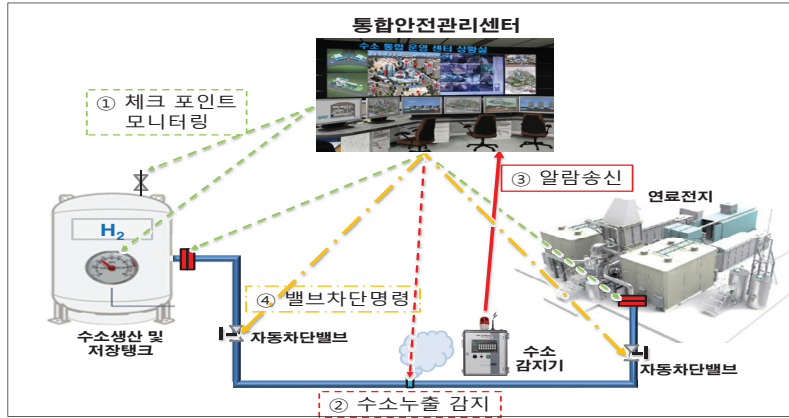
사. 시범도시 안정성 강화

- ❖ 강릉 수소탱크 사고(5.23)로 수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도시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 * '19.6~9(3개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수행



□ 안전기준 강화

- (안전제어 시스템 의무화) 시범도시 모든 설비에 이상 징후 발생시 자동으로 시스템이 정지되는 안전제어 시스템* 적용 의무화
 - * 오작동이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시스템



- (저압수소 안전기준 강화) 안전기준이 미비한 저압수소(1MPa 미만) 사용 부품(배관, 수전해설비 등)에 대해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적용
 - 배관설비는 보다 세밀하고 강화된 기준인 『도시가스사업법』, 수전해설비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 적용 의무화

□ 안전관리 강화

-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 설치단계(계획, 설계/구축, 관리) 별 안전기준, 설명서 등을 종합한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배포
 - 위험도 분석*을 통한 안전취약지점 관리,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사고대응 매뉴얼 등도 포함

* 전문가들이 계획단계부터 위험요인을 파악, 평가하여 위험감소대책을 수립

현행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					
수소 생산						수소 생산					
저장/이송						저장/이송					
활용						활용					
계획 수립	설계기준	설계기준	설계기준	설계기준	설계기준	계획 수립	통합 안전관리 매뉴얼				
설계/구축	시공기준	시공기준	시공기준	시공기준	시공기준	설계/구축					
유지관리	관리기준	관리기준	관리기준	관리기준	관리기준	유지관리					
	관리기준	관리기준	관리기준	관리기준	관리기준						
	통합 계획 안전기준	통합 설계 안전기준	통합 시공 안전기준	통합 유지관리 안전기준							

○ (선정 前 안전성 평가) 시범도시 공모 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안전 관리 계획서를 추가적으로 제출받아 평가 시행

* 지자체 안전성 강화 계획,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계획 등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예시 80점)을 미달하는 지자체는 선정에서 제외

○ (안전관리 체계 강화) 국토부는 시범도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별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통합 운영관리센터' 구축·운영

- 국토부·KAIA(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가스안전공사 등 합동으로 시범도시 각 단계별 안전성 평가, 전문가 컨설팅 등 시행

* '20년 예산(안) 5억원(수소 안전관리 지원)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용역 시행

- 안전진단·점검, 수소 현황, 안전성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통합 운영관리센터' 구축·운영

* 지자체, 지자체 산하 시설공단, 테크노파크 등이 참여

아. 지원개요 및 사업관리 방안

1

지원개요

○ (시범도시) 주거·교통 등 수소 활용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위해 도시별 3년간 총사업비 290억원의 50% 지원(울산, 전주·완주 및 안산 등 3곳)

○ (R&D 특화도시) 수소를 생산·저장하는 통합 센터와 센터-참여 가구간 수소·전기 공급망 구축에 4년간 173억원 지원(삼척 선정)

2

사업관리 방안

○ (역량강화) 반기별로 재정집행, 애로사항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사업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매뉴얼'(9월) 등을 별도 배포

- 민간 전문가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설계, 시공, 운영 등 각 단계별로 안전성·효과성 점검을 위한 정례 자문회의 실시

* 에너지, 안전, 기계 등 5개 분야 10여 명으로 구성, 분기별 자문회의 개최

- (안전관리) 통합 안전관리 메뉴얼을 제작·배포*하고('20.6), 반기별 가스 안전공사를 통해 설비 설치·운영 단계별 취약성을 분석·점검 실시

* 우리부 '시범도시 안전매뉴얼'('19.10), 산업부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19.12)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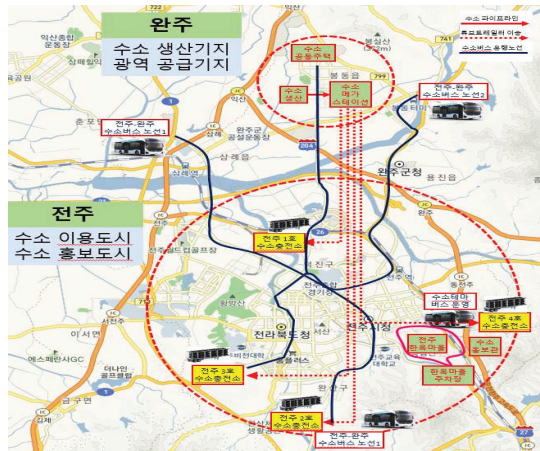
자. 향후 추진일정

-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컨설팅 지원단 운영('20.6)을 통해 시범도시별 종합계획 수립 완료('20.하)
- 수소배관망, 통합운영센터 등 구축('20.하~)을 거쳐 지역특화 요소 연계 및 시범도시 운영·실증('21~'22)

3

전북 전주시·완주군

- 생산(완주)·활용(전주) 분업 등 지자체간 협력 모델을 마련하고 한옥마을 활용한 홍보 추진
- 공동주택(408세대) 및 대중교통(시내버스 49대, 셔틀버스 3대) 등에 수소를 활용
- 수소 생산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스마트 팜에 활용



4

강원도 삼척시

- 가구별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생산된 잉여 전기를 통합에너지센터로 이송, 수소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수소타운(5~6가구) 운영체계* 실증
- * 전력저장장치(배터리)에 잉여전력 단기 저장 후 수전해를 통해 수소로 전환후 장기 저장하고 필요시 수소 또는 전기·열(연료전지 발전)을 공급
- 기 추진 중인 분산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액화수소 생산 실증 등과 연계하여 수소 R&D 특화도시로 육성

2. 도시개발법령 운용 및 사업

가. 목적

-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도시개발법 주요내용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총 칙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고 할 수 있음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도시개발구역은 다음의 규모로 함(영 제2조제1항)

구 분		규 모
도시지역	주 거 지 역	10,000㎡이상
	상 업 지 역	10,000㎡이상
	공 업 지 역	30,000㎡이상
	자 연 녹 지 지 역	10,000㎡이상
	생 산 녹 지 지 역	10,000㎡이상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30이하인 경우에 한함)	
도시지역외의 지역 ※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하고 일정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00,000㎡이상 100,000㎡이상

○ 개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 할 수 있음(법 제4조제1항)

○ 시행자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은 다음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함.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함(법 제11조제1항)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 ④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 ⑤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 ⑥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 ⑦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 ⑧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⑨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⑩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⑪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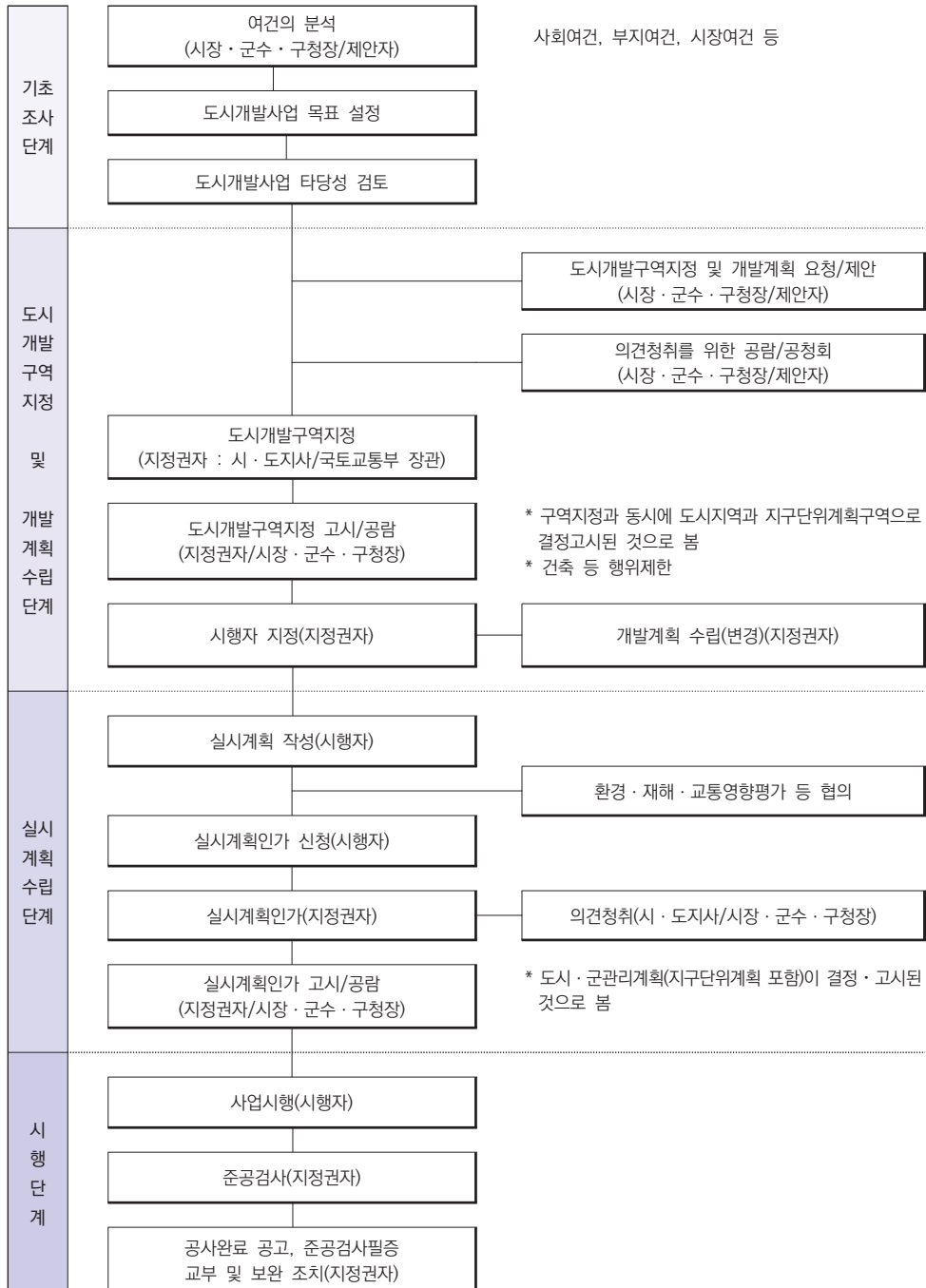
○ 실시계획의 인가 및 절차

-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 (법 제17조제2항)
- 국가·시·도지사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법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음 (영 제39조)
-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는 시장(대도시시장을 제외)·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함(법 제17조제3항)

○ 사업시행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수용·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음 (법 제21조제1항)

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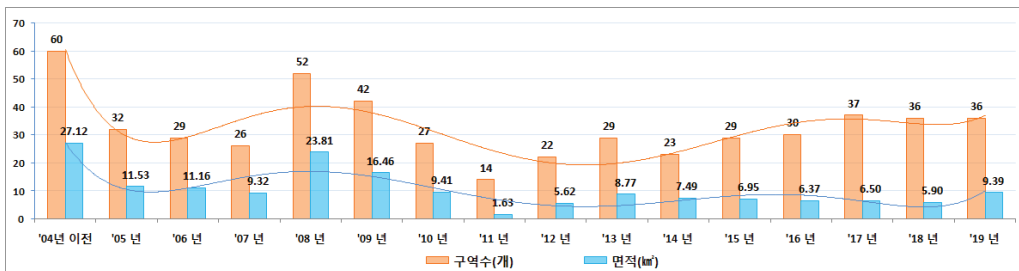


라. 도시개발구역 지정현황(2019년말 기준)

□ 추진현황

- 도시개발법 시행('00.7월) 이후 현재까지 524개소 도시개발구역 지정
 - 시행중 306개소, 사업완료 218개소, 구역지정 해제(취소) 39개소
 -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은 약 178백만㎡(시행중 109백만㎡, 완료 58백만㎡, 해제 11백만㎡)

〈 구역지정 연도별 추이 〉



□ 지역별 현황(시행자, 시행방식)

지역	합계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소계	수용	환지	혼용	소계	수용	환지	혼용
17개시도	306	98	62	30	6	208	86	121	1
서울	11	10	9	1		1		1	
부산									
인천	20	6	4	2		14	5	9	
대구	8	1	1			7		7	
대전	10	2	2			8	6	2	
광주	6	3	3			3	3		
울산	9	1			1	8		8	
세종	1	1	1						
강원	10					10	9	1	
경기	125	40	22	16	2	85	36	49	
충북	13	4	3	1		9	6	3	
충남	22	7	5	2		15	7	8	
전북	6	5	2	2	1	1		1	
전남	11	5	1	2	2	6	5	1	
경북	21	6	3	3		15		15	
경남	31	5	5			26	9	16	1
제주	2	2	1	1					

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배경

- 그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07년부터 매년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자체나 마을에 사업비의 50%를 보조 하였으며, '09년도에는 시범도시 7개소, 시범마을 16개소 및 성공모델지원사업 3개소에 144억원을 지원하였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옛 지역발전위원회)는 광역화·특성화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수립·추진(균특법 개정, '09.4.22)
- 이에 따라 '10년부터는 우리부 소관사업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타 부처에서 추진해 오던 전원마을 조성, 농촌생활환경정비, 어촌종합개발 사업 등 17개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을 통폐합하여 우리부 책임하에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변경 추진하게 됨
- * 지역별 특성에 따라 도시활력증진지역, 성장촉진지역(이상 국토부), 일반농산어촌지역(농림부) 특수상황지역(행자부)로 구분하여 지원

구 분		대상지역	보조율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특별시·광역시의 군·구 및 일반시 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중 동(洞)지역	50%
	성장촉진지역	시·군 중 재정상태, 인구변동 등을 고려하여 지정(70개 시군구)	100%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15개 접경, 372개 도서)	80%
농림부	일반농산어촌지역	군지역·인구 50만 미만의 도농복합시 (117개 시·군)	70%

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개념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우리부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143개 지자체*(특별시 광역시의 군·구 및 일반시 지역과 도농복합형태의 시중 洞)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지원가능 대상현황(143개 시·군·구)

구 분	143개 시·군·구
서울(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8)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22)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평택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충북(3)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충남(8)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강원(6)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전북(6)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전남(5)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경북(10)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경남(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세종(1)	세종시
제주(2)	제주시, 서귀포시

※ 도농복합시의 읍 지역은 부처간 협업사업 추진 가능

- 도시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활력증진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11년부터 '17년까지 도시활력증진지역에 연 평균 약 1,000억원 지원

- '16년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통합되어 '18년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의 3개 내역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원
 - '20년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예산 및 사업 관리 권한이 기초지자체로 이양되어, '19년까지 국비를 교부받은 사업에 대하여 '21년까지 기존과 같이 사업관리체제를 유지하고, 21년 이후** 지자체로 사업관리 권한 이양 예정
- * 보조금법에 따라 2회계년도까지 이월 승인받은 경우, ** '19년까지의 국비 교부액 전액집행 시점

【 도시생활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합계	예산액	97,128	93,367	111,380	75,357
	사업수	186	208	189	110
계속	예산액	93,511	85,567	111,380	75,357
	사업수	135	157	189	110
신규	예산액	3,617	7,800	-	-
	사업수	51	51	-	-

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유형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도시생활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 우리동네살리기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우리동네살리기는 도시재생기획단에서 소관)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도시생활환경 개선	○ 사업비: 60억원 이하 (국비50%,지방비50%) ○ 사업기간: 4년간 - 소규모 마을단위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거주환경개선, 골목상권 개선 등과 함께 공동체 활성화
지역역량강화	○ 사업비: 4억원 이하 (국비50%,지방비50%) ○ 사업기간: 4년간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

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전략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향상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 모두에게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의 틀과 질적 측면의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

- 기반시설 설치 위주 지원사업에서 지역자산(수변공간, 공·폐가, 특산물 등)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활력증진사업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토록 유도

마.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시행 절차

절차	주관부서	내 용
예산신청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마련(→ 중앙, 광역시·도)
	↓	
	국토교통부	예산신청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교육
	↓	
예산배분	시·군·구	예산신청
	↓	
	시·도	예산신청서 취합 제출(→ 국토부)
	↓	
사업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예산신청 신규사업제안서 설명회 (지자체 : 사업제안 설명, 국토부 : 내용검토)
	↓	
	국토교통	예산신청 검토의견서 및 예산배분 요청(→ 기재부)
	↓	
사업수행	기획재정부	지자체별 예산배분
	↓	
	시·도, 시·군·구	지자체 매칭 차년도 예산반영
	↓	
사업평가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	
사업수행	시·도	사업계획서 취합 제출(→ 국토부)
	↓	
	시·도, 시·군·구	사업 착공보고(→ 국토부)
	↓	
사업평가	국토교통부	사업추진 관리 및 지원
	↓	
	시·도, 시·군·구	사업 완료보고
	↓	
사업평가	시·군·구	사업성과 자율평가 및 평가보고서 제출
	↓	
	시·도	자율평가 보고서 취합 제출(→ 지역위)
	↓	
사업평가	국토교통부	추진실적 검토의견 제출(→ 지역위))
	↓	
	지역발전위원회	사업성과 평가
	↓	
사업평가	기획재정부	인센티브 결정, 차년도 예산반영

바. '20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

기초	사업유형	사업명
서울		
강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살기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마포구	도시생활환경개선	경의선(선형의 숲)공원 조성사업
서대문구	도시생활환경개선	홍제권 리빙랩기반 의료산업 특화 및 주민건강증진사업
성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샴터, 씬터, 공동체가 공존하는 살기좋은 안전마을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중심도심거리 활극
부산		
금정구	도시생활환경개선	금정구 부산대학교 일원 주거지 재생사업
금정구	도시생활환경개선	3세대가 함께하는 안전한 풍당풍당 마을 만들기
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문현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가마와 마을 재생사업
동구	지역역량강화	미디어 이바구마을 만들기 사업
동래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온통, 온나, 온천장으로 온정 365 프로젝트
부산진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산진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당감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
부산진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부암동철길마을메디컬빌리지조성사업
북구	지역역량강화	구포2동 구남마을 주민대학 운영
사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엄궁동 통통길 조성사업
사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감전동 감동생생 프로젝트
사하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지성이면감천문화마을조성
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아미4 행복주택 진입도로 확장공사
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산복마을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력사업
영도구	도시생활환경개선	흰여울문화마을재생프로젝트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원도심국가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조성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큰마루터 기상사업
해운대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반여 이야기가 있는 무지개길 조성
대구		
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행복마을
달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레드블록"젊음과 다문화를 담은 원룸촌 재창조
달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미로마을 조성사업
달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성서아울렛타운활성화사업 (Red&Greencarpetproject)
달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

기초	사업유형	사업명
달성군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달성군	도시생활환경개선	도농복합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력화 "창조문화바람 High0five(5) 현풍"
달성군	도시생활환경개선	하빈PMZ평화기념마을 조성
달성군	도시생활환경개선	락, 경, 청 선비문화 허브 네트워크 활성화사업
달성군	지역역량강화	달성3색 문화창조 도시브랜드 구축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안심창조밸리조성사업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천연기념물 ONE 도동문화마을 조성사업
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연암 서당골 여·행
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
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행복한 날외골 만들기
수성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수성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수성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
인천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신현동 회화나무주변구역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가재울마을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답동성당일원 관광자원화사업
광주		
광산구	도시생활환경개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광산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광산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광산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지표수보강개발
광산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도산7통주거환경개선사업
광산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서동주거환경개선사업
광산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용보촌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
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양림 학강)
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월산덕림 주거환경개선사업
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주월동 서민정주여건 개선사업
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기초	사업유형	사업명
대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대구	도시생활환경개선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북구	도시생활환경개선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
북구	지역역량강화	세대가 함께 나누는,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
서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마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서구	지역역량강화	벚꽃만개 향기로운 농성동
대전		
대덕	도시생활환경개선	장동1구역(장동, 옥골) 주거환경개선사업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대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유성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봉명지구 명물 카페거리 조성사업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보문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보문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울산		
남구	도시생활환경개선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동구	도시생활환경개선	방어진항 국제건축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중구	도시생활환경개선	학성육성프로젝트
경기		
광명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소하동 구도심 행복한 우리 마을 만들기
남양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양주그린베이스조성사업
남양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군장마을 활활재생프로젝트
남양주시	지역역량강화	마을마다 "학습등대"
성남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진2동 오래뜰마을
수원시	도시생활환경개선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수원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인계장다리마을만들기
안산시	도시생활환경개선	희망마을 상상놀이터만들기 및 지하주차장 조성
안산시	지역역량강화	사이좋은 사이동 마을만들기
안양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강한 인덕(仁德)마을
안양시	지역역량강화	사람중심의 소프트파워로 날자
오산시	도시생활환경개선	테마가 있는 오매장터 만들기
오산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촌마을 맞춤형정비사업
의왕시	지역역량강화	우리동네 꿈지락
평택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화성시	도시생활환경개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화성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기초	사업유형	사업명
화성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소규모옹수개발
강원		
삼척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이사부 문화마을 만들기사업
속초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제3단계주거환경개선(금호3지구)
속초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아바이마을 희망가꾸기(청호3지구)
원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원주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충북		
청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사업
청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문화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활성화사업
청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남주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
충남		
당진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원도심아이가머무는 동네만들기
아산시	지역역량강화	주민참여 도시재생
천안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중앙거리 활성화 조성사업
천안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성황마을 생활환경개선사업
전북		
남원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전통을 품은 생생 향교마을
익산시	지역역량강화	100년 철도역사를 활용한 우리동네 이야기
전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강당재구역)
전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사업(풍남초교인근)
전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보행중심 테마거리 조성사업
전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전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전주시	지역역량강화	마을기자과 한지붕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정읍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
정읍시	지역역량강화	도시활력 네트워크 300+(플러스)
전남		
광양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불꽃튀는 너른 마당 광영
목포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만호지구 주거지재생사업
목포시	도시생활환경개선	근대역사테마길조성
순천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동외동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순천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인제C지구 도시생활 환경개선
경북		
김천시	도시생활환경개선	함께사는 역사문화마을 황금동 조성사업
영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구성노인안전돌레마을조성사업
영천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역사도심 문화테마 마을조성

기초	사업유형	사업명
포항시	도시생활환경개선	포항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
포항시	도시생활환경개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포항시	도시생활환경개선	농촌생활환경정비
포항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
포항시	지역역량강화	U0Line Project
경남		
거제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조선산업 배후도시 활력증진
김해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진영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
창원시	도시생활환경개선	행복의창 만들기
창원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월영지구 주거환경개선
창원시	도시생활환경개선	Blossom"여좌"
창원시	지역역량강화	마을학교 운영
제주		
서귀포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중문동 회수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제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사업
제주시	도시생활환경개선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4. 새뜰마을사업

가. 「새뜰마을사업」의 추진배경

- 전국적으로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달되면서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안전 문제, 경제적 빈곤 등이 집중된 지역 다수 존재하지만, 이러한 주거취약 지역은 재개발사업도 곤란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순위에서도 밀려 방치되어 있는 상황
- 그간 소외되었던 가장 빈곤한 최하층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물리적 사업을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①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달되는 가구의 비율 20% 이상

- *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 전국적으로 128만 가구('12년)

② 목조 등 취약 건축물도 다수(41%)이고, 무허가 건축물도 다수(24%)

- * 안전상 문제가 많고, 불법건물에 대한 주택 개량도 어려운 상황

③ 폭 4m 이하의 불량도로(골목길)에 접한 주택이 평균 57%

- * 방범·소방·긴급의료 접근성이 낮고, 이사·장보기도 어려운 지역
- * 지구내 노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통행 등 불편 해소 시급

④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지역이 73%에 달하고, 상하수도도 미설치된 지역도 다수

(상수도 7%, 하수도 18% 미설치)

- * 겨울철 과도한 난방비 부담, 하수처리 곤란 등 생활불편 가중

⑤ 최저생계비 미만 저소득층 다수 거주, 높은 실업률과 빈곤

- * 무직, 연금생활자 20%, 단순노무직 13.3% 거주

☞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복지 및 정신·육체적 치유, 일자리 등을 통한 자활 지원 등 휴먼 케어(Human Care)가 절실

나. 그간 추진경과

- (사업기획) 우리부·지역위(현 균형위)*가 달동네·판자촌 등 주거취약지역의 주민복지 등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 신설('14년)
- 국토부가 지역위에 지역행복생활권 정책(국정과제) 일환으로 '절대빈곤' 지역에 대한 H/WS/W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을 제안('14.6월)
- * 각 정부부처의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위원장 1명을 포함한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사업소관) 사업은 도시(국토부, 동)와 농촌(농림부, 면)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예산은 기존 생활권선도사업(농림부소관)에 편성

* 읍 지역의 경우 지자체가 실질적인 토지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

〈 사업추진주체별 역할 〉

- (지역위) 신규사업 선정, 부처간 협업, 정책 홍보 등 사업 총괄
- (농림부) 농촌지역 사업선정·관리 및 예·결산 총괄
- (국토부) 도시지역 사업 선정·관리 및 도시지역 예산 편성·교부·집행관리

〈 연도별 사업 개요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사업 지역	30곳	52곳 (계속 30 신규 22)	68곳 (계속 52 신규 16)	68곳 (계속 68)	97곳 (계속 67 신규 30) * 사업취소 1건	119곳 (계속 97 신규 22)
예산 규모	250억원	315억원 (계속 225 신규 90)	360억원 (계속 320 신규 40)	525억원 (계속 525)	522억원 (계속 342 신규 180)	450억원 (계속 360 신규 90)

다. 「새뜰마을사업」 개요

- (사업대상) 도시지역 중 달동네 등 주거환경이 극히 취약한 지역
 - 안전과 위생 등 '삶의 질'이 한계수준에 달한 지역,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지역을 집중 개선
- (사업기간/지원규모) 4년 / 국비 기준 최대 50억 원(지방비 30~50% 매칭)
- (사업내용) 시설개량 등 H/W + 주민복지 등 S/W사업이 결합된 종합패키지 사업
 - (생활인프라 개선) 소방도로 개설, 도시가스·하수도 보급률 제고, 경사지 옹벽·난간 설치, 노후 담장 등 개보수 지원
 - (집수리 지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지붕누수 보수, 벽체 및 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 등 집수리 및 공폐가 철거 지원
 - (일자리·복지 등 휴먼케어) 노인돌봄, 건강관리, 소외계층 취업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맞춤형 휴먼케어 사업 지원

○ 사업 특징

- (사업목표) 환경개선 사업과 복지일자리 사업 등을 병행하여 취약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적극적인 자활의지 제고
- (주민참여사업) 거주민이 계획수립 및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시급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민·관 협조) 민간기업, 해비타트·건축사협회 등 단체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유도하여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

라. 새뜰마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계속사업 관리) 취약지역에 적합한 사업추진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조기 집행을 도모
 - 사업시행 매뉴얼 배포, 전문가로 구성된 마스터플랜 검토위원회 및 헬프데스크(LH) 운영, 총괄코디네이터 임명* 등을 지원
 - 정기적 집행점검, 부진지역 현장컨설팅 및 지역 위생·안전관련 우선추진사업 시행을 통해 집행 실적 제고
- * 계획수립·사업추진 총괄, 행정·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계획, 건축, 마을 만들기 등 유관분야의 전문가(국토부 임명)
- (민관협력 지원방안 확대) 도시낙후지역은 사회약자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여건 보장 및 주민자활 등을 위하여 지속주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나, 공공의 단기적 지원에는 재정 등 한계
 - (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역 공공기관 및 관련 민간기업이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역문화사업·집수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등 노하우를 활용
 - (타부처 연계사업 확대) 슬레이트지붕 철거(환경부), 범죄예방환경개선(법무부) 등 부처 협업사업 확대하여, 범부처적 지원 추진
- (지원정책 내실화) 저소득층고령층 등이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주민 등 추진주체의 역량강화가 절실
 - (사업시행매뉴얼 마련) 주거 취약지역의 현실에 적합한 사업추진 단계별·주체별 시행매뉴얼 배포
 - (컨설팅단 운영) 매년 추진실적 평가 후 성과가 저조한 지자체 등에는 현장밀착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행정의 전문성 제고

〈 새마을사업 선정지구 현황(68개소) 〉

선정 연도	구분		대상위치	지역특색
	광역시	기초		
'15년	서울	종로구	돈의동 103번지	성인1명이 겨우 누울수 있는 쪽방 밀집 빈민 주거지
	부산	영도구	해돋이마을	전쟁포로수용소, 난민수용소 등 피난민촌
		서구	남부민 2동	'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가 '12년 해제
		사상구	학장동 29-31통	사상공단 쇠퇴로 공동화 및 고령화 심화, 공폐가 증가
		사하구	감천2동	한국전쟁 피난민들에 의해 생겨난 달동네 마을
	대구	중구	성내3동, 대신동	상주인구 감소, 슬럼화, 노후화로 주거환경 열악
	인천	동구	만석동 2-102번지	만석부두 인근 공장지역 인근 불량주거지역
		부평구	부평동 760-270번지	'40년대 일본회사가 기숙사로 사용하던 70년된 노후 불량주택
	광주	남구	월산동 323번지	광주 덕림산 자락에 위치한 달동네
		서구	양동 437번지	한국전쟁 피난민 정착촌, 70년대 방직공장 여공 집단 거주지
	대전	대덕구	장동 344-5번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울산	남구	장생포동 41-4번지	상업포경 금지로 소득기반 상실, 인근 산단 개발로 공동화
	세종		조치원읍 침산리	조치원역 인근 11년 동안 재개발예정지구 지정됐다가 해제
	경기	포천시	동교동 685번지	'80년대 상계동 이주민으로 형성된 마을로 양돈축사를 개량 거주
		양주시	남방동 217번지	36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낙후된 지역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1,5리	한국전쟁 피난민 거주, 구릉지 미로형태의 주거지
		태백시	철암동 435번지	과거 최대 석탄 생산지, 폐광으로 공동화된 산동네
		동해시	발한동 329-15번지	목호항과 목호역, 중앙시장 주변 노후 불량 주거지
		영월군	영월읍 하송4리	과반수 이상이 저소득층의 고령자로 장기방치된 노후주거지
	충북	제천시	영서동 10통	40년 이상 노후화되어 방치된 철도공사 관사 등 입지
	충남	논산시	대교 1~2통	논산천 인근에 노후불량 가옥 밀집하였으며, 고령인구 60% 이상인 지역
	전북	전주시	팔복동	주변 공업지역의 소음·분진·악취가 문제이며, 하천침수 위험지역
		익산시	창인동·평화동	이리역 폭발사고 피해지역, 주택 붕괴·철도소음
	전남	여수시	광무동	한국전쟁 피난민 거주지, 장군산 자락 달동네

선정 연도	구분		대상위치	지역특색
	광역시	기초		
	경북	순천시	금곡동 117번지	산비탈 고지대, 취약계층과 고령층 등 집단 거주
		김천시	성내동	한국전쟁 피난민 거주지, 경사지에 형성 달동네
	경남	양산시	소주동 105번지	소주공단 근로자와 도시 저소득층 밀집
		창원시	완월동 333번지	무학산 자락 노후·불량주거 건축물 산재
		진주시	옥봉동	옥봉동 산비탈 노후 주거지(달동네)
	제주	제주시	용담1동	제주 구도심 구 일본식 건물 집단 불량 주거지역
'16년	부산	금정구	부곡동 737-317번지	산비탈지역으로 노후 건물 및 공·폐가 산재지역
		동구	범일동 본번 산65 번지	90년대 신발산업 쇠퇴로 노후화된 지역
		남구	우암동 189번지	일제강점기에 사용했던 소막사를 개조해 주거지로 사용하는 주거불량지역
	인천	동구	제물량로 335번길 20-12	동구·중구 분리후 모호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주민불편 심각, 대표적인 쪽방촌
	광주	서구	양동 20-0번지	양동시장 인근에 위치한 배후 불량주택지
	울산	동구	일산동 155번지	'70년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 이후, 40여년간 개발·정비행위가 제한된 지역
		북구	연암동 776번지	산업단지와 철길사이에 위치한 자연부락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상로 1길	산악지형에 형성된 광산촌으로, 정부의 폐광정책으로 공동화된 달동네
		동해시	목호진동 96-31 번지	목호항 배후 언덕에 형성된 쇠락한 항구도시
		태백시	태백로 368번지	1972년 수해민을 위해 조성된 광산근로자 집단 부락이며 도심지 속 달동네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62 번지	공공시설이 입지한 배후 구릉지 자연발생취락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221-6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에 따른 주택의 노후화 등이 심각한 지역
	전북	군산시	산북동 1069-11번지	주변 산단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저지대 침수 피해 등 도심 속 오지마을
		익산시	동산동 356번지	경사지에 불량주택이 밀집된 노후 주거지
		전주시	완산구 바람쐼는길 39	2003년 공원지역에서 취락지역으로 변경된 달동네 절개지의 서민밀집지역
	전남	목포시	동명동 162번지	해방이후 계단 주변에 형성된 달동네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삼가1동	인근 시멘트 공장의 분진 및 소음으로 정주환경이 열악한 지역
		여수시	충무동 207-48번지	6.25전쟁 피난민들이 모인 판자촌

선정 연도	구분		대상위치	지역특색
	광역	기초		
	경북	영주시	두서길 73번지	일제 강점기의 철도직원 관사마을
		안동시	범석골길 34번지	산비탈에 형성된 붕괴위험 달동네 지역
	경남	통영시	서호동 259번지	원도심과 인접한 산비탈 고지대 취락
		진주시	상봉동, 봉래동	산비탈을 따라 골목길과 오래된 주거지로 형성
'17년	서울	금천구	시흥5동 일원	10년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16년 말 해제되어 기반시설이 전무한 지역
	부산	북구	구포2동 구포마을 일원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지정 당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기반시설이 부족
		사상구	주례2동 일원	주거지, 공장, 위험물 처리시설이 혼재한 지역으로 노후주택 및 공·폐가 비율이 높음
		사하구	괴정2동 대티고개마을 일원	한국전쟁 시 가파른 산비탈에 형성된 피난주거지로 산사태, 침수피해 등이 매년 발생
	대구	남구	대명5동 일원	오랜 시간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소음 등 피해가 큰 지역
	인천	동구	만석동 철길마을 일원	한국전쟁 시 피난민이 모여 형성된 마을로 고가차도, 공장에 둘러싸여 매연 및 분진발생
	강원	속초시	중앙동 일원	한국전쟁 시 산비탈에 형성된 지역으로 마을 진입도로가 없어 재난위험에 대응이 취약
		영월군	상동읍 텅스텐마을 일원	과거 광산업 발전시기 허술한 축대 위에 무계획적으로 조성된 마을로 붕괴위험 지역
		태백시	소도동 일원	폐광에 따른 낙후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하천제방에 접해있어 침수위험이 높음
	충남	보령시	명천동 일원	거주환경 악화에 따른 인구유출로 인해 공·폐가 및 취약계층 비율이 높음
		홍성군	홍성읍 오관10리 일원	노후주택 및 고령자 비율이 높으며,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
	전북	김제시	옥산동·요촌동 성산지구 일원	주거지로 방치된 폐가, 노후화된 붕괴담장이 산재되어 있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
	경북	영주시	하망동 효자지구 일원	경사지에 형성된 마을로 노후주택 및 주거취약 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
	경남	김해시	불암동 양장골마을 일원	마을 경계에 도로, 경전철, 공항, 공단 등이 있어 소음피해가 크며, 경사지에 위치한 위험지역
		밀양시	남포동 남포마을 일원	인근 철길 방음벽과 국도 등으로 소음·진동피해가 크며, 기반시설이 열악

선정 연도	지자체		대상위치	지역특색
‘19년	부산	중구	동광동 5가 일원	도심속 경사지, 노후주거지역의 통과도로로 인해 기존 마을이 단절된 기형적 마을
		부산진구	범천2동 일원	지형특성상 공·폐가가 많은 노후주거 밀집지역
		사상구	엄궁동 일원	외부인 차량주차 등 이용객이 많으나 공폐가 및 담장붕괴 등에 있어 안전성이 취약한 지역
	인천	미추홀구	송의동 일원	정화조 미설치 가구(83.3%),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 (38.9%), 무허가주택(100%)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
	광주	동구	지산동 일원	옹벽 및 축대 붕괴지역, 담장 등 노후화로 위험지역의 정비가 시급
		남구	덕남동 일원	비좁은 마을 골목도로로 인해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대형참사에 위험
		북구	운정동 일원	옹벽 붕괴위험, 어둡고 경사진 골목, 공공하수관로 미설치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
	대전	동구	정동 일원	80년대 이후 상권 쇠퇴에 따라 유동인구 등의 감소 및 개발사업 부진으로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대전 대표 낙후지역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일원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판잣집을 지으면서 형성된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달동네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로 2014년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지역
		평택	서정동 일원	2008년 5월 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되었으나, 2016년 4월 촉진지구 해제 및 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어 해제된 지역
		파주(법원)	법원읍 일원	미군 부대 관련 마구잡이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 미군철수 후 상권 쇠퇴로 인한 인구유출로 급격히 쇠퇴한 지역
	강원	강릉	주문진읍 일원	한국전쟁 이후 구릉지에 모여 있는 피난민촌으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취약한 지역
		동해	부곡동 일원	지대가 낮고 복개도로 및 급경사면과 연결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침수·낙석 피해 등 위험에 노출된 지역
	충남	금산	금산읍 일원	원도심 기능이 약화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
		서천	장항읍 일원	6.25때 난민수용소가 있던 곳으로 최근까지 판자촌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좁은 골목길에 안전시설이 부족
	전북	전주	진북동 일원	하천부지와 절개지에 위치하고 있어 우기시 상습적 침수 및 절개지의 풍화가 진행되어 절리 및 암반 탈락으로 인한 붕괴 우려
		익산(모현)	모현동 일원	절개지, 다수의 공·폐가, 산사태 및 수해위험, 옹벽 및 축재붕괴, 담장 노후화 등 위험 상존

선정 연도	지자체		대상위치	지역특색
		진안	진안읍 일원	불량도로에 접한 주택비율 65%, 30년 이상 노후주택 75.5%로 생활 안전인프라, 주택환경,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환경 등 마을 취약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
		장수	장수읍 일원	대상지 중심으로 소하천이 흐르고 있어 산사태·수해의 위험이 있으며, 주거지 인접 경사면 붕괴, 슬레이트 지붕과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 존치
		고창	고창읍 일원	대상지 인근 옹벽, 축대붕괴 및 담장 등의 노후화로 붕괴 우려 등 위험 상존
	전남	목포 (유달)	유달동 대반마을 일원	유달산 후면에 자연 조성된 산간 마을로서 마을 내부로 진입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부족한 지역
		여수	종화동 일원	맹지율 81.1%, 하수도보급률 0%, 도시가스보급률 0% 등 기반시설 취약, 30년 이상 노후주택 80.6% 및 공폐가 24.2% 등 주거취약지역
		순천	덕암동 일원	1990년대 연향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빠져나가고 빈집과 공가가 발생하는 등 슬럼화가 시작된 후 약 30년 동안 방치된 지역
	경북	안동	태화동 일원	도심생활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청신도시와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태화동 개발이 정체되면서 지역의 노후·쇠퇴화가 진행
		영주	가흥1동 일원	1961년 영주 대수해로 서천 직강공사 및 아파트단지로 인해 마을이 분리되어 불량주거지로 고립
		문경	점촌1동 일원	중앙시장의 상주 인구감소 및 대부분의 고령인구가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불량도로, 빈집, 등하교길 안전 우려 등으로 문경시 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경남	창원	여좌동 일원	노후주택의 증가, 교통 불편, 편의시설 부재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마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상실한 지역
		진주	유곡동 일원	대상지 일원은 주거지역의 취약 정도가 심각하고 구조적인 접근성 불량, 안전 등의 문제로 인해 지역 쇠퇴가 가속화
		통영	중앙동 일원	급경사 사면지역에 형성된 집단 밀집 주거지역으로 난개발 및 불법개발로 인하여 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이 열악
		거제 (능포)	능포동 일원	2002년 마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15년간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 장기간 마을 및 거주환경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지역 슬럼화 가중
'20년	부산	부산진구	전포2동 175-2 일원	인근 재개발사업 등으로 밀려난 사회취약계층이 터를 잡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밀집지역
		서구	천해로 13번길 38 일원	고지대 경사면에 위치하여 아파트 단지 등에 고립된 생활여건이 낙후된 주거지역
		연제구	연산3동 1816-133 일원	경사지에 좁은 골목길과 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전무

선정 연도	지자체		대상위치	지역특색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299-5 일원	80년대 미군철수 이후 상권 쇠퇴 및 인구 유출로 급격히 쇠락한 지역
	강원	태백시	황지동 621-360 일원	석탄산업의 쇠퇴로 노후화된 폐광지역
	충북	제천시	남천동 838 일원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90%가 넘는 전형적인 구도심 낙후 주거지역
		음성군	금왕읍 정생1리 일원	불량도로에 접한 주택비율이 88%, 도시가스 보급률이 0%인 생활 인프라 취약지역
	충남	청양군	청양읍 교월2리 일원	금경사지에 위험주택과 공폐가가 집중되어 정주환경과 생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
		예산군	예산읍 예산4리 일원	예산시장의 자연발생적 배후주거지역으로 급경사, 1m내외 도로 등 정주여건 취약
		논산시	내동 먹골마을 일원	인접지역 대규모 개발 대비 정체된 지역개발로 주민 소외감과 노후화 가속
	전북	군산시	구암동 362-1 일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주민이탈이 가속되고 주택의 노후화 등이 심각한 지역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일원	저지대에 위치한 상습침수지역으로 노후주택 및 담장노후화로 안전 조치가 시급
		전주시	완산구 남도송동 일원	좁은 골목길로 건축이 어려운 주거취약도 1등급 지역으로 90년대부터 공동화 시작
		익산시	평화동 33-19 일원	공구상가와 노후주거지가 혼합된 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7통 지역이 고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319-6 일원	완도읍에서 가장 오래된 원도심으로 매립확장사업 진행으로 구도심 낙후마을로 쇠락
		여수시	봉계동 383-1 일원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공해피해와 도시개발 제외 등으로 주거환경 등 열악
		영광군	영광읍 남천2리	이면도로 주거환경정비가 미흡하고 비좁은 골목길이 산재한 전형적인 구도심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7리 일원	경부선 철도 개설 후 마을과 청도읍 중심지 단절로 경제적 빈곤과 마을 슬럼화 심화
		봉화군	봉화읍 해저2리 일원	80년대 이후 철도, 담배수매 등 지역기반 산업 쇠퇴로 생활환경 및 지역기반 노후화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노상리 일원	산중턱에 위치한 붕괴위험 산동네 지역
	경남	통영시	태형동 580 일원	급경사 지역에 위치하여 슬럼화 현상 심화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 43-18 일원	산비탈에 위치한 노후주거지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생활여건이 열악

5. 기반시설부담구역제 운영

가. 제도개요

- 시장군수가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토록 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

나. 지정절차

- 구역지정(안)을 작성,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 공보 등에 고시

다. 지정기준

- 법령 제·개정, 용도지역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
 - ① 행위제한의 완화를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또는 용도지역·지구의 변경·해제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 용도 또는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로 정의
 - ②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시에는 건축물의 허용용도 또는 규모 확대로 인해 장래 기반시설 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

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 기반시설의 범위 :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기타 시장·군수가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 * 기반시설이 과다하게 계획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한정하되,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토록 함

○ 설치계획의 내용

- 주거형, 산업형, 관광·휴양형, 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기반시설 종류·위치·규모,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외에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을 포함
- 계획 수립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하고, 부담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계획수립·고시 의무화

마.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부담계획의 내용

- 시장·군수 등은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
- * 계획 내용 : 총부담비용, 납부의무자 부담분, 부담시기, 재원 조달 등

○ 부담계획 수립절차

- 주민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계획내용과 열람방법을 지자체 공보 등에 고시
- * 부담계획은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병행하여 일괄 수립 가능

○ 부담계획에 의한 부담분 산정

- 납부의무자의 부담분은 총부담비용중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연면적에 단위 설치비용을 곱하여 산정

◇ 납부의무자의 부담분 = 단위 설치비용 × 건축연면적 × 용도가중치

① 단위 설치비용 = 총부담비용 / 가중 건축연면적 합

② 총부담비용 = $\sum\{(\text{각 기반시설소요규모} \times \text{설치단가}) + \text{토지보상비}\}$

③ 가중 건축연면적 합 = $\sum(\text{용도별 건축가능 연면적} \times \text{용도 가중치})$

* 주거: 1.0, 상업·업무: 2.6, 공업: 1.9, 기타 2.1을 각각 적용

* 지자체와 납부의무자간 협의를 통해 산정방법을 정하는 것도 가능

* 부담계획에 의하지 않은 경우 부담 산정

-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를 합산한 금액에 200㎡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diamond \text{ 기반시설설치비용} = (\text{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text{용지비용}) \times \text{건축연면적} \times \text{부담률} - \text{공제액}$$

* 용지비용 : 용지환산계수×기반시설유발계수×기반시설부담구역 공시지가 평균

○ 기반시설설치비용 감면

-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와 공제대상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비용을 공제

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관리 등

○ 납부의무자

- 납부의무자인 건축행위자가 신탁법의 수탁자인 경우 수탁자가 납부의무자가 되고, 법인 합병 시 납부의무 승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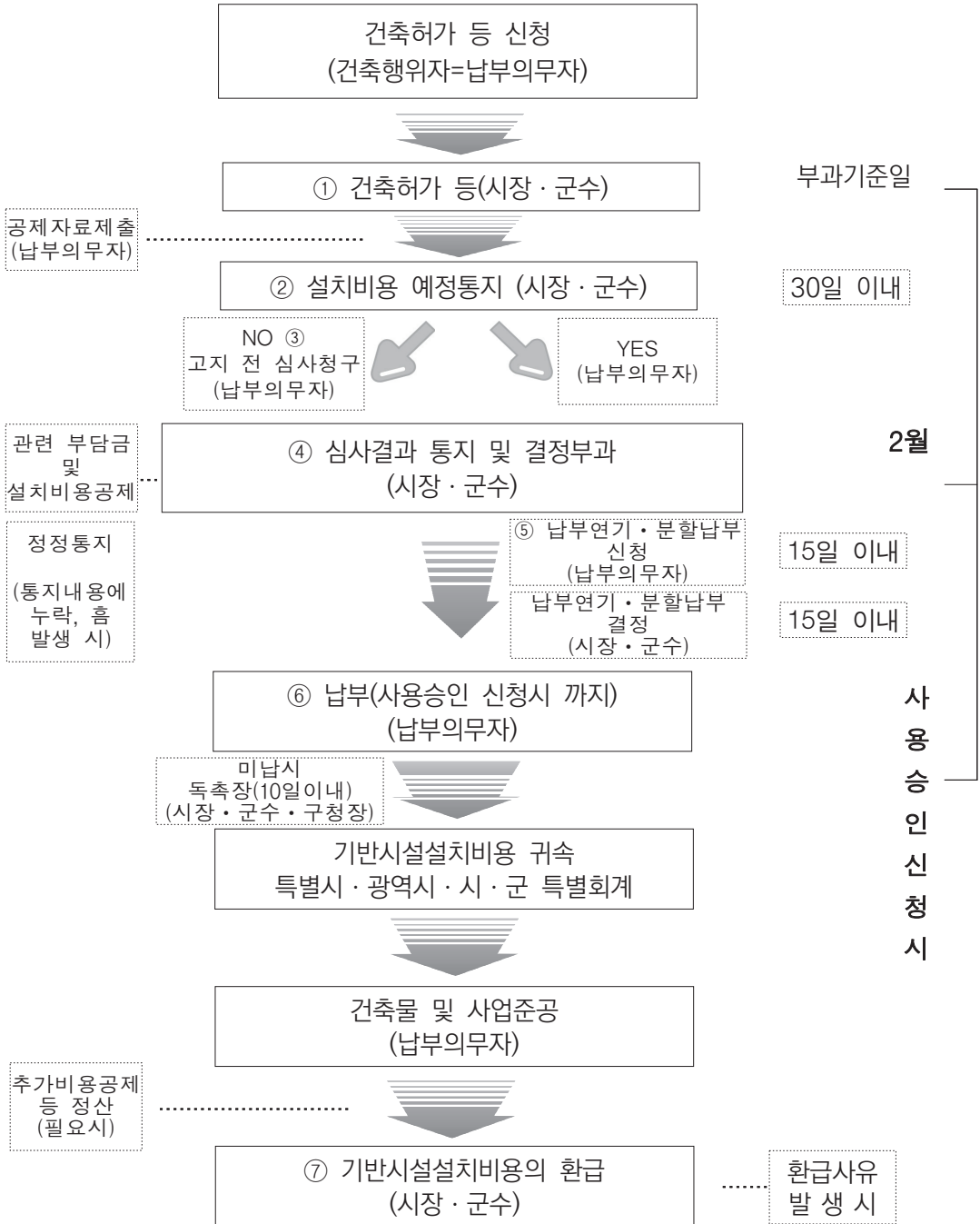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납부

- 설치비용 납부가 곤란하여 납부기일 연기나 분할 납부한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 (종전지침 수용)
 - *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전년대비 30% 이상 매출 손실
 -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때 ⇒ 전년대비 50% 이상 매출 손실
 -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자본잠식 등

○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관리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전액 지자체로 귀속시키고,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
-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부담구역 및 연계된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에 사용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징수업무 절차〉



6.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가. 개요

-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 재해가 점차 대형화·다양화되는 추세이며 폭염, 폭설, 강풍 등 다양한 도시재해 일상화
- 특히,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태풍, 폭우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과거에 유례가 드문 초대형 홍수가 발생
 - 2012년 10월 허리케인 샌디는 미국 24개 주에 영향을 준 역대 최대 직경(1,800km)의 허리케인으로, 뉴욕주와 뉴저지주를 중심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 2013년 6월 유럽 중부 및 동부지역에 발생한 폭우로 다뉴브강과 엘베강이 범람했고,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 발생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대 자연재해 피해액이 1970년대 대비 약 8.6배, 1990년대 대비 약 2.4배 증가
 -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내습하여 강릉에 하루 동안 870.5mm가 내려 사망 246명, 재산피해 약 5조 1천억 원의 피해 발생
 - 2011년 우면산 산사태, 강남 침수피해를 발생시킨 강우는 서울 평년 연강수량 1,451mm의 약 41%에 해당하는 595mm로서, 7월 26일~28일까지 3일간 집중되었으며, 관악구에는 7월 27일 1시간 최대강수량이 113mm를 기록
 - 2012년에는 5, 6월 두 달 동안의 강수량이 110.9mm로 평년의 약 43%에 머물러 극심한 가뭄피해를 발생시켰고, 예년보다 늦게 7월초부터 시작한 장마는 지역적으로 국지성 폭우를 내림
 - * 특히, 2012년에는 1962년 이후 50년 만에 4개의 태풍이 내습하였으며, 8월 말부터 9월 중순 1달 동안에 3개의 태풍이 내습하였고, 특히 8월 말에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연이어 우리나라 서해안에 상륙하여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피해 발생
-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하천, 하수도, 펌프장 등)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활용한 도시계획적 대책이 필요

- 해외 방재선진국에서는 재해취약지역을 파악하여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는 주민이 거주할 수 없게 하거나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토지이용정책을 통해 재해위험을 감소
- 또한, 공원·녹지, 공공청사,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도 폭우, 가뭄 등에 대비하여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
-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취약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 기반시설(도로, 공원·녹지 등), 건축 설계 대책 등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도시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는 우면산 산사태, 강남역 주변 침수 등을 계기로 도시방재정책을 적극 마련하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재해 취약성 분석을 도입(2012.7.1. 시행)
-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는 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각 부문별 계획에 반영
- 2015.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및 2015.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으로서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성분석이 기초조사 항목으로 의무화되었음.

〈 도시계획 수립지침 내 재해 취약성 분석 관련 내용 〉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해 광역계획권의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고, 부문별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 분석을 통해 도시의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여 부문별 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재해 취약성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후 수립하고, 취약성 분석 결과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한다.

자료: 국토교통부(2013).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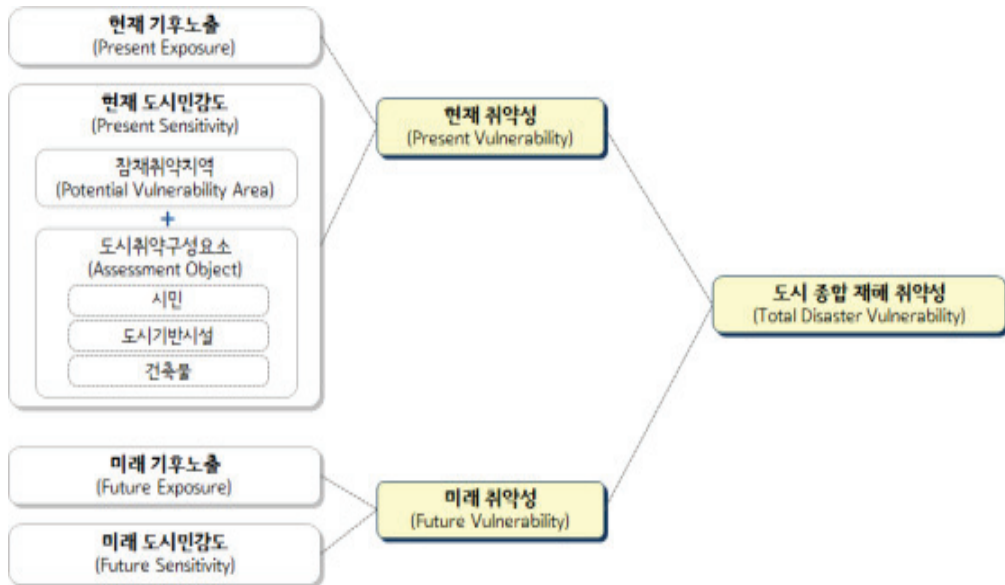
나. 추진경위

- '11.12.15. : 도시계획(광역, 기본, 관리계획) 수립지침 반영
- '12.06.29. : 재해취약성분석 방법 안내
- '13.02.26. : 재해취약성분석 방법 매뉴얼(보완)배포
- '13.04.11. : 재해취약성 분석 지자체 설명회
- '13.09.24. : 재해취약성분석 운영방안 및 추가보완 매뉴얼
- '13.09.27. : 재해취약성분석 제도도입 의원발의
- '15.01.0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제20조, 제27조) (재해취약성분석 기초조사 포함)
- '15.07.0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제16조의 2,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포함)
- '16.05.11.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정
- '17.06.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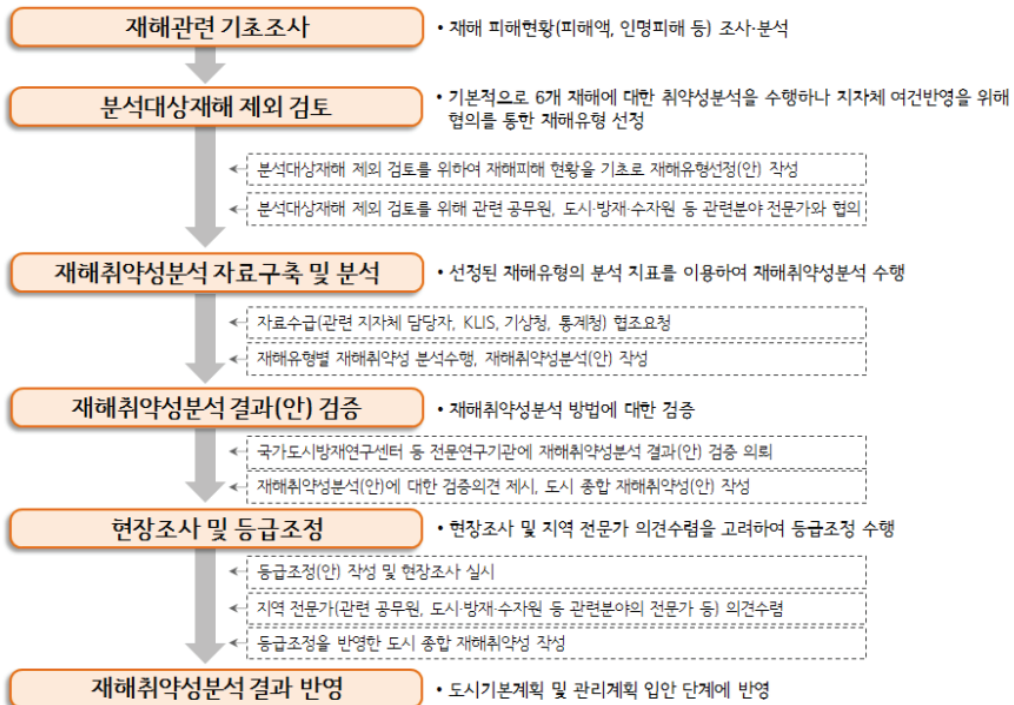
다.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수행방법

- 현재기후노출은 인근지역의 유인관측소와 무인관측소의 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기후적 요소에 의한 영향 정도를 분석한다.
- 현재 도시민감도는 잠재취약지역과 도시취약구성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 미래기후노출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전망치를 활용하여 미래의 기후적 요소에 의한 영향을 분석한다.
- 미래 도시민감도는 도시개발 전망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재해에 대한 도시민감도 전망을 분석한다.

○ 재해취약성분석 구조



○ 재해취약성 분석절차



라.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분석 결과 활용방법

○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차원의 방재방안 제시

(1) 기본방향

- 가.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도시 종합 재해취약성 1등급 또는 2등급인 지역에 도시·군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검토하여야 함.
- 나.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는 가급적 도시·군 계획안을 작성하기 전에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
- 다. 지형 및 지역여건에 따라 분석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시·군의 특성에 맞도록 분석결과의 활용을 달리할 수 있음.

(2) 일반적 활용사항

- 가. 재해취약지역의 분석지표를 면밀히 확인하여 재해취약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대책 수립 시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나.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을 활용한 대책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한 계획의 유형을 구분하여 대책의 세부내용을 정할 수 있음.
- 다. 침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구체적인 경우 분석 결과를 토지이용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라. 재해취약지역 중 대규모 개발 사업이 없는 기성 시가지의 경우 재해 예방에 대한 계획으로 방재지구 지정을 검토할 수 있음.

(3) 재해취약지역에 재해취약 인구가 많거나 잠재취약지역에 해당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가. 시가와 유보 또는 개발 억제
- 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부여
- 다. 방재지구 지정
- 라.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지양 (방재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제외)
- 마. 건축물의 건축 제한
- 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재해 관련계획의 반영 등

7.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법 제12조 및 제23조)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개념

□ 개념

- 국토이용정보체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는 여러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임
- ※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의 정보체계(UPIS)로서 현행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의 국토이용정보체계와는 다른 개념임

□ 하위 시스템

- 국토이용정보체계에는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구축되어 있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 및 규제안내서 등을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이 있음

□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

- 국토이용정보체계는 위에서 언급한 하위 시스템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 - KRAS·LURIS와 관련됨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 - KRAS·UPIS와 관련됨
 - ③ 지적·지형 등 토지의 공간 및 속성정보 - KRAS와 관련됨
 - ④ 그 밖에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정보
-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연계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2)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

□ 수립권자 및 절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함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계획의 내용

-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함
 - ①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정책방향
 - ②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개발·유지 및 관리
 - ③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와 호환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 ④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의 제공
 - ⑤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⑥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 ⑦ 그 밖에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구축 및 운영권자

- 정보체계운영자(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전담부서의 설치

- 정보체계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정보체계운영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운영 및 활용하는 때에는 구축 계획 및 구축·운영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활용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의하여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서로 호환성을 가지고 정확히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기준의 내용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함

(4)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 정보체계운영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 중 다음 사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음

①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②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①, ②는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③ 규제안내서

④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개별공시지가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⑥ 그 밖에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⑦ 부동산중개업소의 위치정보

(5) 보고 및 자료제출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체계운영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6)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위탁운영

□ 수탁기관

-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하나 또는 둘이상)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위탁계약서의 내용

- 정보체계운영자가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업무가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①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설계 및 구성
 - ②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 ③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보안관리
 - ④ 국토이용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 ⑤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을 위한 교육
 - 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지원
 - ⑦ 그 밖에 정보체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추진실적의 제출 등

- 수탁사업자는 정보체계운영자에게 그 연도 위탁업무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제출
- 정보체계운영자는 수탁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

나.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제공 및 절차(법 제9조)

(1)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2)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의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신설(세분, 변경, 폐지 포함)하거나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법령 공포 7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함
 -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내용
 - ② 근거 법령의 조문 내용
 - ③ 지역·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 ④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 ⑤ 근거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신설(세분, 변경, 폐지 포함)하거나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자치법규 공포 7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함
 - ① 지역·지구등의 명칭과 행위제한내용
 - ② 근거 자치법규의 조문 내용
 - ③ 지역·지구등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 ④ 행위제한내용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후의 자치법규 조문의 대비표와 그 사유
- ⑤ 근거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효력발생 예정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함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법 제10조)

(1) 제정이유

-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등을 인터넷으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행정청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발급해주도록 함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대상

- 시장·군수·구청장(및 관할 읍·면·동장)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해 주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 ②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그 밖에 일반 국민에게 그 지정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 '10.8.10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창구발급서비스가 관할 읍·면·동으로 확대

(3) 발급절차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의 작성·제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읍·면·동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은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제외한 사항만을 확인해 주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및 관할 읍·면·동장)은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은 관련 법령상의 내용을 그대로 제공함에 따라 인터넷 상으로도 확인 가능한 내용임을 알리고 행위제한내용 발급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및 관할 읍·면·동장)은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 수수료

- 신청인은 시장·군수·구청장(및 관할 읍·면·동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라. 규제안내서의 제공(법 제2조제2호 및 제11조)

(1) 제정이유

- 국민이 일정한 토지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허가의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규제안내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 기반의 국토이용정보 체계를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토지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2) 규제안내서의 개념

-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공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구분	대상 시설	법적 근거
체육시설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스키장	
건축행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건축행위 외의 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토석의 채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토지 분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물건의 적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5호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61조
	사도의 개설	「사도법」 제4조
	시설묘지의 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용도변경허가	「건축법」 제19조

○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① 대상사업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 ②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 ③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 ④ ① 내지 ③과 관련된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 조문

(3) 규제안내서의 작성·고시 등

□ 규제안내서의 작성

-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 규제안내서의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등재와 규제안내서의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규제안내서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

※ 규제안내서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하위 시스템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재·변경 등이 가능함

(4) 규제안내서의 변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안내서를 변경하는 경우

(가) 규제안내서의 변경 고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 규제안내서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초 작성·고시된 이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을 변경함에 따라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계 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도 함께 고시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요함

(나) 규제안내서의 변경에 따른 사전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고시 전에 다음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함

- ① 관계 법령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 ② 규제안내서 변경내용의 효력발생 예정일
- ③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 ④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규제안내서 변경

-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 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제안내서를 변경하는 경우

(가) 규제안내서의 변경 고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 ※ 규제안내서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초 작성·고시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자치법규를 변경함에 따라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계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도 함께 고시하여야 하므로 주의를 요함

(나) 규제안내서의 변경에 따른 사전통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고시 전에 다음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함
 - ① 관계 자치법규의 공포 예정일 및 규제안내서 변경고시 예정일
 - ② 규제안내서 변경내용의 효력발생 예정일
 - ③ 규제안내서의 변경 전과 후의 내용
 - ④ 규제안내서의 변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변경 전과 후의 조문 내용

(다)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규제안내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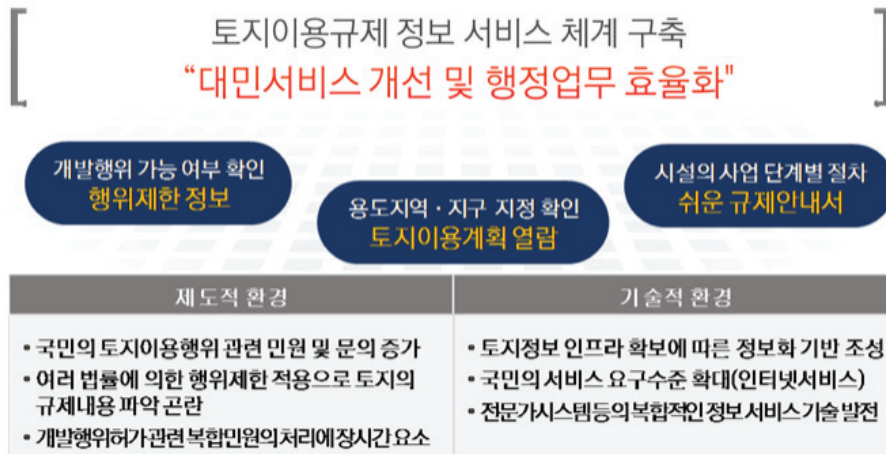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직접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가. 개요

(1) 시스템 구축 배경

- 하나의 토지에 여러 용도지역·지구가 중첩 지정되어 행위제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 시에 행정절차 복잡
-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서 공장설립,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
- *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04.6.) 후 대통령께 보고('04.8.)한 토지규제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
- *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를 목적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제정('05.12.)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



(2) 추진경위

- '04.10. ~ '05.8. : 『토지이용규제정보화 방안 연구』
 - 토지이용 행위제한 및 규제안내서 작성방안 연구
- '05.6. ~ '06.4.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개발 방안 마련

- '05.6. ~ '06.11.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개발』 기술용역
 -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 '07.5. : 토지이용규제정보 인터넷서비스 실시
- '08.6. : 『토지이용 규제안내서』 인터넷서비스 확대
 - 아파트, 공장, 창고 등 6종에서 120종 시설물로 확대
- '08.7.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제정
- '09.1. :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30여종의 계획입지 개발사업절차를 인터넷으로 서비스
- '09.5. : 『토지이용안내』 용어사전 발간 및 인터넷 서비스
- '09.8. : 『토지이용 규제안내서』 인터넷서비스 확대
 - 120종 시설물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모든 시설물(305개)로 확대 작성
- '11.8. : 모바일 및 지도서비스 실시
- '12.1. : 재해관련 지역·지구 지도서비스 실시
- '12.12. : 토지이용규제정보관리시스템 개선
- '13.12.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개정
- '15.12. : 쉬운 규제안내서 DB구축 및 서비스 실시
- '16.10. : 대민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 '16.12. : 토지이용규제정보 해설서비스 실시
- '17.10. : 토지이용행위 검색도우미 및 행위제한 우선 표시 기능 도입 등 행위제한 서비스 개편
- '18. 10. : 지도서비스 확대 및 모바일 앱 디자인 개선
- '18. 11.~12. : 토지이용규제 용어사전 핸드북 배포
- '19. 07. :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디자인 일원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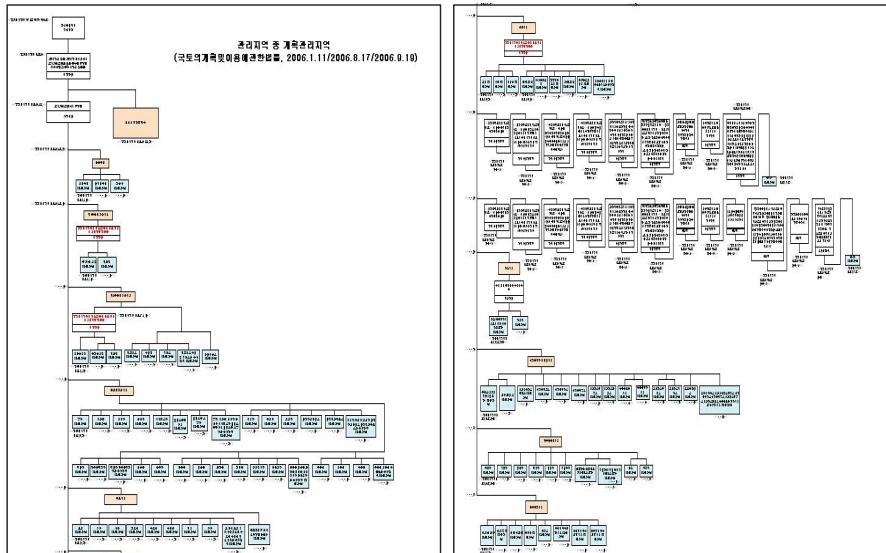
나. 시스템 구축 현황

(1) 데이터베이스 구축

- 행위제한내용 DB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303개의 법령에서 지정하는 약 313개(조례포함, 7,253개) 지역·지구의 행위제한사항을 법률 구조관계도로 작성하여 DB 구축

※ 구조관계도란 지역·지구상의 행위규제 사항을 단순화하여 시스템에서 비교·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도식화한 것임

토지이용규제 구조관계도 (계획관리지역)



〈예시 - 구조관계도〉

○ 쉬운 규제안내서 DB구축

- 단독주택, 아파트, 공장, 창고 등 317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단계별 절차서(628개), 구비서류 등 쉬운 규제안내서로 작성하여 DB 구축



〈쉬운 규제안내서〉

(2) 시스템 구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과 연계하여 필지별 지역·지구 지정 현황과 행위제한 및 규제안내서를 일반국민들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제공

○ 토지이용규제정보관리시스템

-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관련 법령의 잦은 제·개정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최신자료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시스템구성도〉

다. 시스템 운영 현황

(1) 인터넷 서비스 (<http://luris.molit.go.kr>)

○ 토지이용계획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연계를 통해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계획 열람 서비스 제공

※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과 동일

- 지역·지구별 토지이용과 관련한 행위제한 내용을 DB로 구축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을 가능/금지 형태로 알기 쉽게 제공

- 아파트, 공장, 창고 등 시설별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안내하고 사업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하며, 각 사업단계별 인·허가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서비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9항에 따른 전국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지형도면고시 정보제공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화면〉

(2) 모바일 서비스

- 토지이용규제 내비게이터 어플리케이션(앱)
 - 다운로드 : 애플리케이션마켓(안드로이드마켓, 애플앱스토어, T스토어)
 - 지원 플랫폼 : Android, iOS, TStore



〈모바일 앱 - 메인〉



〈모바일 앱 - 지도서비스〉

(3) 홈페이지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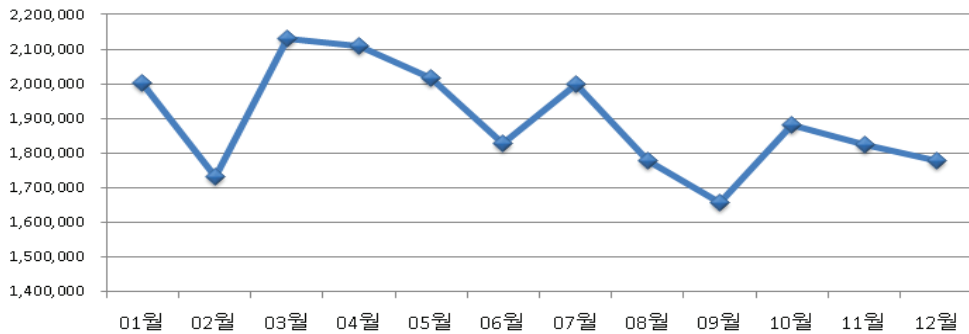
- '07.1월 인터넷서비스 실시 후, '19.12월까지 206,207천명이 접속
- '19년 일평균 6만명 방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건수 39만 건 이상

〈'19년 홈페이지 접속현황(접속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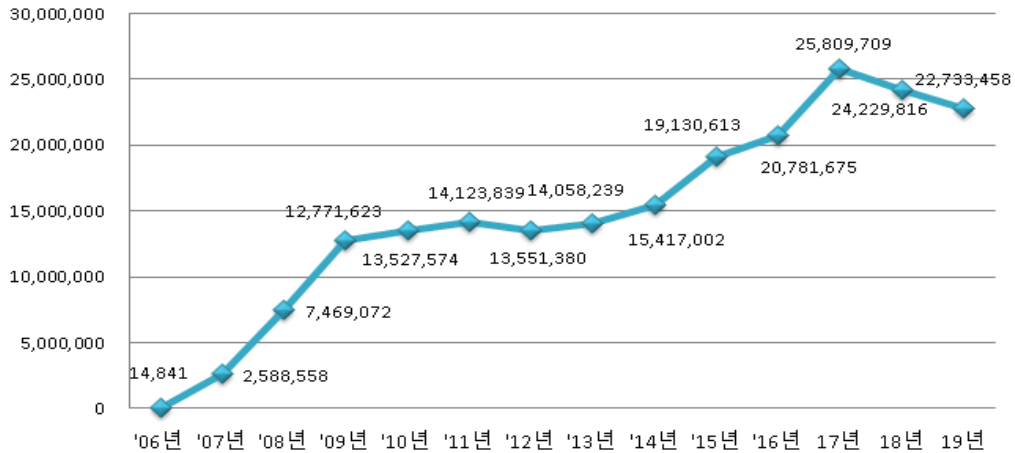
(단위 : 천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민 웹	1,712	1,455	1,811	1,814	1,731	1,563	1,731	1,529	1,418	1,620	1,572	1,522
모바일 웹	290	275	317	295	285	264	268	249	238	258	252	253

2019 홈페이지 이용현황



연도별 접속자 수



(4) 시스템 운영관리

- 법령 제·개정에 따라, 총 389건의 법령DB를 갱신하여 시스템에 반영

〈2019년도 시스템 운용 법령의 제·개정 현황〉

(단위 : 건)

	2018년	2019년												총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법률	165	20	0	1	27	0	0	0	35	0	0	31	32	279
시행령	240	10	8	20	10	1	19	48	3	2	14	1	14	376
시행규칙	99	5	5	8	3	1	7	11	8	9	8	5	23	169
계	504	35	13	29	40	2	26	59	46	11	22	37	69	824

- 도시·군계획조례 및 기타조례 등 지자체에 위임된 조례 모니터링 및 현행화 관리

〈2019년도 도시·군계획조례 및 기타조례의 제·개정 현황〉

(단위 : 건)

	2018년	2019년												총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도시·군 계획조례	233	8	19	19	24	13	12	24	21	18	19	19	23	429
기타조례	162	11	10	10	12	8	12	18	7	19	16	15	13	313
계	395	19	29	29	36	21	24	42	28	37	35	34	36	742

- 조례개정내용 반영 등을 위한 지자체 업무담당자 사용자 교육 실시
 - 연 2회 사용자 신청을 받아 DB 관리 및 실습 교육 실시

라. 향후계획

- 행위규제 관련 법령·조례의 제·개정사항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반영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항상 최신 자료 제공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사용자 설문조사 실시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을 통한 콘텐츠 개선방향 설정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체계 등 개선 사항 발굴
- 국토이용정보 통합 홈페이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도시계획정보서비스) 구축 및 운영
-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위한 국토교통부 집합 전문교육 실시
 - 지자체 업무담당자 실무교육을 국토교통부 집합 전문교육(국토이용정보체계 과정)을 연간 2회 실시
 - 업무담당자별 실습교육 진행 및 시스템 개선의견 등 청취

9.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가. 개요

○ 구축배경

- 도시계획과 관련된 기초자료, 현황자료, 이력자료 등 각종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유지관리·갱신하고, 개발사업 및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토의 난개발 방지
- 도시계획 행정업무 전산화와 계획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를 분석하는 전산 환경을 구축하여 도시계획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축방향



나. 추진경위

- '00.6.~'01.6. :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방안 연구』
 -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필요성 및 기본구상 마련
- '01.11.~'03.12. : 『도시계획정보체계 시범사업 I, II』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관리 시스템 개발 및 전주시 시범적용
- '04.10.~'05.11. : 『국토이용정보체계 시범사업 III』 완료
 - 화성, 영주시를 시범으로 표준시스템 개발

○ '08.11.~'09.11. :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 사업』 완료

- 국토해양부 시스템 신규 개발 및 시군구 표준시스템 기능개선
- 청주시 등 12개 지자체 국고보조 지원

인천 강화군, 부산 서구, 경기 화성시, 강원 정선군,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군, 전북 전주시, 무주군, 전남 영암군, 경북 안동시, 영주시 경남 창원군

○ '09.11.~'10.6. : 『2009년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완료

- 표준시스템 행정지원 기능 추가개발 및 국토부 도시정책 지원시스템 구축
- 대전광역시 등 20개 지자체 국고보조 지원

부산광역시(3개구), 대전광역시(전체), 경기 고양시, 수원시, 의왕시, 강원 고성군, 충북 청원군, 충남 계룡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문경시, 경남 거제시, 제주도

○ '10.7.~'11.3. : 『2010년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완료

- 국토부 의사결정시스템 고도화 및 대국민 국토계획 서비스
- 대구광역시 등 20개 지자체 국고보조 지원

부산광역시(5개구), 대구광역시(1개구), 경기 광주시, 안성시, 평택시, 강원 삼척시, 춘천시, 홍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서산시, 전북 부안군, 전남 목포시, 보성군, 경북 청송군, 경남 진해시, 함안군

○ '11.7.~'12.3. : 『2011년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완료

- 시스템 기능개선 및 발전계획 수립
- 광주광역시 등 20개 지자체 국고보조 지원

광주광역시(2개 구), 대구광역시(1개 구), 울산광역시(2개 구), 경기 군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강원 동해시, 강릉시, 충북 보은군, 충남 아산시, 보령시, 전북 임실군, 정읍시, 남원시, 전남 광양시, 경북 고령군, 성주군, 경남 의령군

○ '12.6.~'12.12. : 『2012년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완료

- 시스템 기능개선, UPIS 운영 및 기술지원

- 부산광역시 등 35개 지자체 국고보조 지원

부산광역시(본청,3개구), 대구광역시(3개구), 인천광역시(2개구), 광주광역시(본청, 3개구), 울산광역시(2개구), 경기 파주시, 김포시, 용인시, 안양시, 시흥시, 강원도 양구군, 양양군, 충북 증평군, 충남 공주시, 금산군, 전북 군산시, 완주군, 진안군, 전남 무안군, 영광군, 진도군, 경북 봉화군, 영양군, 경남 진주시, 사천시

○ '13.3.~'13.12. : 『2013년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관리 사업』 완료

- 시스템 기능개선, UPIS 운영 및 기술지원 등
- 대구광역시 등 35개 지자체 국고보조 지원

대구광역시(4개구), 인천광역시(2개구), 울산광역시(2개구), 경기 연천군, 남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강원도 인제군, 철원군, 횡성군, 충북 충주시, 충남 부여군, 서천군, 태안군 전북 김제시, 장수군, 전남 순천시,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화순군, 고흥군, 경북 경산시, 김천시, 구미시, 경남 하동군, 양산시, 거창군, 함양군

○ '14.2.~'14.12. : 『2014년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관리 사업』 완료

- 시스템 기능개선, 인터넷 지도조회 동적서비스 시행 및 기술지원 등
- 인천광역시(1개 구) 등 22개 지자체 국고보조 지원

인천광역시(1개 구), 경기도 가평군, 과천시, 성남시, 여주군, 포천시, 강원도 속초시, 영월군, 평창군, 충청북도 단양군, 옥천군, 충청남도 예산군, 천안시,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구례군, 신안군, 장흥군, 경상북도 영천시, 포항시, 상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남해군

○ '15.1.~'15.12. : 『2015년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유지보수 사업』 완료

- 시스템 기능개선,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관리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 인천광역시 등 22개 지자체 국고보조 지원

인천광역시(1개 구), 경기도 부천시, 양평군, 강원(본청), 춘천시, 충북 제천시, 진천시, 괴산군, 음성군, 충남(본청), 전북(본청), 순창군, 전남 장성군, 경북 청도군, 울릉군, 경남 고성군, 밀양시, 산청군, 통영군, 함천군, 제주(본청), 서귀포시

○ '16.1.~'16.12. : 『2016년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유지보수 사업』 완료

- 시스템 기능개선, UPIS 운영 및 기술지원, 시스템 확산·보급 등
- 세종특별자치시 등 21개 지자체 국고보조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이천시, 강원도 원주시, 충남 논산시, 전남 나주시, 곡성군, 담양군, 함평군, 경북 군위군, 영덕군,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 칠곡군 등 15개 지자체(100백만원 국고보조금 지원), 부산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시, 평택시, 충북 영동군, 청주시 등 6개 지자체(50백만원 국고보조금 지원)

○ '17.1.~'17.12. : 『2017년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유지보수 사업』 완료

-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업무편의성 향상, 시스템 확산·보급 등
- 부산광역시(1개 구) 등 18개 지자체 지원을 끝으로 국고지원사업 종료

부산광역시(1개 구), 대구광역시(1개구),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남 홍성군,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태백시, 경남 남해군, 하동군, 충북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예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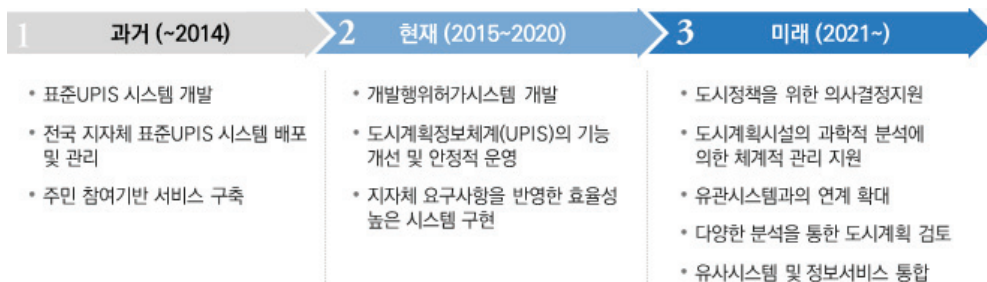
○ '18.1.~'18.12. : 『2018년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유지보수 사업』 완료

-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업무편의성 향상 등
- 개발행위허가 의제 신청 및 처리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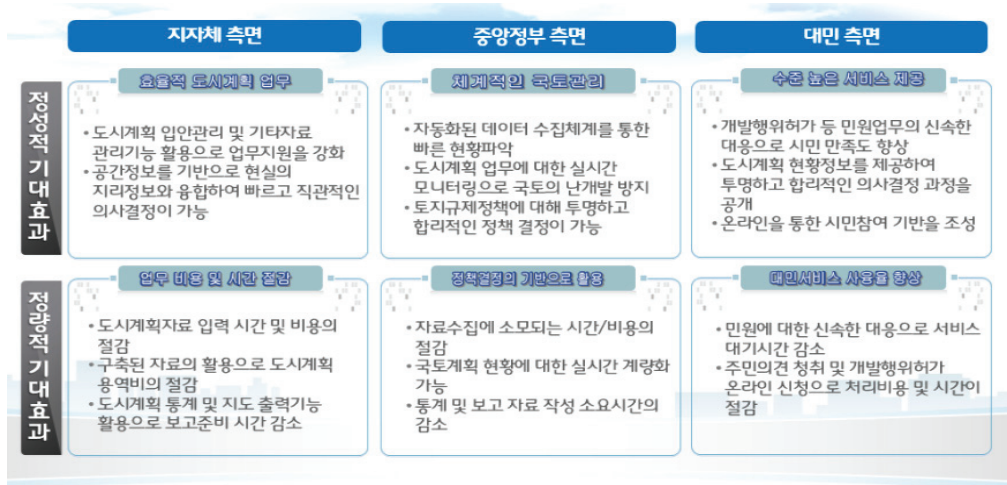
○ '19.1.~'19.12. : 『2019년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유지보수 사업』 완료

- 시스템 기능개선 및 안정화를 통한 업무편의성 향상 등
-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스템 전국 확산·보급

다. 단계별 추진방안



라. 기대효과



Chapter IV . 주요 업무내용

2020 도시 업무 편람



녹색도시 분야

1.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그간의 제도개선	253
2. 개발제한구역 주요 정책	260
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가능한 시설물	266
4.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68
5.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	269
6.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70
7.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272
8. 도시공원·녹지 종류 및 현황	273
9. 도시공원·녹지 제도 및 정책	276

1.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그간의 제도개선

가. 개발제한구역 현황

□ **(개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

○ '71~'77년중 전국 14개 도시권에 5,397.1km²(국토면적 5.4%)에 지정

□ **(지정현황)** 제도개선('99)을 통해 체계적인 해제방안을 도입,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해제하여 3,837.3km² 존치

○ 중소도시(전면해제), 집단취락, 소규모 단절토지 등을 우선해제(1,231.5km²)

○ 보금자리, 경인아라뱃길 등 국책사업과 지자체 현안사업은 구역해제를 통해 사업지원(국책사업 114.0km², 고리원천 등 132.2km², 지역현안사업 81.0km² 해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2019.12.31 현재)

구 분	계(km ²)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당초	4,294	1,567	597	536	441	555	284	314
해제	457	164	184	20	17	40	15	17
존치	3,837	1,403	413	516	424	515	269	297

□ **(인구)** 구역내 거주 인구는 95,537명(42,436 가구)

○ (토지소유) 사유지 2,660km² (70%)/ 국공유지 1,144km² (30%)

〈개발제한구역 주민현황〉

(2017년 기준)

총 계		지정당시거주자		5년 이상		5년 미만	
세대	주민	세대	주민	세대	주민	세대	주민
42,436	95,357	4,032	9,309	16,593	40,762	25,842	54,595

나. 그간의 제도개선

- ◆ (1차 제도개선) '99년 DJ정부 대선공약에 이행을 중소도시권 해제 등 구역조정, 토지 매수청구제도 도입 등 각종 제도도입
- ◆ (2차 제도개선) '08년 수도권 서민 주거난 해소, 동남권 산업용지 공급 등을 위해 해제총량 확대 등
- ◆ ('09년 이후 규제완화) 전통사찰 증축규제완화, 공장 등에 대한 보전부담금 완화, 여가시설 허용 등 주민 및 기업불편 해소

1

제1차 제도개선('99)

-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先 환경평가 및 도시계획 - 後 해제」 방식으로 조정
- 춘천·전주권 등 7대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하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지역(보전·생산녹지, 공원 등)으로 지정
 -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은 구역을 유지하되,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보전가치 등을 감안하여 부분적인 조정
- 다만, 집단취락, 산업단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은 우선 해제하고, 존치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주민생활 불편완화 대책 강구

《 1차 제도개선 요약 》

유 형	대 상	개 선 방 안
구 역 조 정	중소 도시권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통영, 제주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후 전면 해제 - 환경양호지역은 보전용도지역으로 지정
	대도 시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 개발제한구역 존치 - 조정가능지역 선별 후 일부 구역조정 - 해제지역은 친환경·저밀도로 선계획-후개발
	우선 해제	대규모취락, 경계선 관통취락, 산업단지, 목적소멸지역 - 개발제한구역 해제 - 해제지역은 친환경·저밀도로 정비 -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등 공영개발
제 도 도 입	- 법령 제정(00.1.28) · 관리계획제도, 토지매수청구제도, 주민지원제도, 훼손부담금제도 등	

《 권역별 1차 해제총량 부여현황 》

구 분	계(km ²)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GB면적	4,294.0	1,566.8	597.1	536.5	441.1	554.7	283.6	314.2
해제 총량	342.8	124.5	54.3	31.5	31.3	45.8	29.2	26.2

2

제2차 제도개선('08)

□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

- 최대 188km²* 추가해제를 허용하되 광역도시계획에 해제가능지역 위치표시 없이 해제가능 총량만 부여

《 권역별 1차 해제 잔여총량 및 2차 추가해제총량 》

구 분	계(km ²)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1차 잔여분	120.2	26.4	18.5	14.1	18.9	10.6	16.9	14.8
2차 추가분	188.7	114.5	26.3	9.4	8.6	13.7	8.8	7.4

* 추가총량 : ① 1차 권역별로 부여된 해제총량의 10~30% (98.9km²) + ②부산 강서 물류도시(10km²) + ③보금자리주택(78.8km²) + ④경인운하(1km²)

- 공영개발 원칙 하에 공공기관과 민간(50% 미만출자) 공동의 SPC(특수 목적법인) 설립도 인정하여 민간참여 허용

□ 존치지역 관리강화

- (보전부담금) 공공시설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폐지, 부과대상을 당초 형질 변경면적에서 개발행위 전체(형질변경 및 건축행위)로 확대
- (이행강제금) 불법 훼손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 신설, 이행강제금 도입 등을 통해 제재 실효성 개선

□ 훼손지 복구제도 도입

- 해제면적의 10~20% 상당의 주변 훼손지 복구 의무화, 훼손지 없는 경우 해제면적의 공시지가 10%를 보전부담금으로 부과

□ '09년 이후 주요 제도개선 내용

- 전통사찰의 증축면적 확대(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 종전 대지면적의 30%)
- 허용되는 여가시설 종류 확대(농구장, 야영장,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
-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확대(200㎡ → 300㎡)
-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내 토지소유자가 훼손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창고 설치를 허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의 지자체 위임
 - 중·소규모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되, 국토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필요시 중도위 심의를 받게 하는 등 안전장치 마련
-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완화
- 훼손지 정비사업의 구역요건, 내용 및 방법 마련
 - 개정법률('15.12.29 공포, '16. 3.30 시행)에서 훼손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구체적 내용 마련
- 훼손지 정비사업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규정
 - 훼손지 정비사업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종류에 도시공원 및 녹지, 물류창고, 기존 건축물 등을 규정함

□ '17년 주요 제도개선 내용

○ 토지분할 허가기준 마련('17.7월)

- 개발제한구역 허가 세부기준에 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토지분할 허가시 적정성 여부 검토

○ 개발제한구역 내 공설수목장림 조성 허용('17.7월)

- 장례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도정시설 허용('17.7월)

- 해당 시·군·구의 일반지역에 도정시설(미곡종합처리장)이 없는 경우에 1,000㎡ 이하의 도정시설 허용

○ 이행강제금 산정에 따른 상한규정 삭제('17.7월)

- 이행강제금 산정 결과,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천만원을 징수하도록 한 상한규정 삭제(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제한 근거 마련('17.8월)

- 보전·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일정 기간 동안 시장·군수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무원 배치 의무화('17.8월)

-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 배치 근거규정을 법률에 규정, 전담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구역도 체계적 관리

○ 시·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직접 시정명령 권한 등 부여('17.8월)

-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시·도지사에게 확대하여 불법 행위 예방을 효율적이며 일관되고 신속하게 수행

□ '18년 주요 제도개선 내용

-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18.2월)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류창고 높이를 완화(8m → 10m)*하고,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허용('18.2월)
 -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인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버스 차고지에도 부대시설로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 허용('18.12월)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한 노인요양병원(기존 건축물)*을 증축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
- GB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야영장' 설치주체 확대('18.12월)
 - GB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인 '야영장'의 설치 주체를 공공기관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
- 주택 이축 요건인 '철거일'기준 명확화('18.12월)
 - 현행 공익사업에 따른 이축 요건인 '철거일'을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신고일'*로 명시
- 장사시설의 '수목장림'을 '자연장지'로 전환·설치 허용('18.12월)
 - 허용범위를 수목장림외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로 확대
- 개발제한구역 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 설치면적 제한('18.12월)

□ '19년 주요 제도개선 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확대(19.5월)
 -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방안'*에 따라 GB 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규모 확대
 - 여가·체험 등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에 필요한 실습교육장,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허용
- 서바이벌 게임시설의 설치 범위 등 규정(19.5월)
 - 설치자격을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로 하고 시설 폐지시 즉시 원상복구토록 규정
- 야영장의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규정(19.5월)
 - 부대시설은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 부대시설로 하되, 건축 연면적은 200㎡ 이하로 규정
- GB 환원기간 연장에 따른 세부내용 정비(19.10월)
 - 환원기간이 추가로 1년간 연장되는 불가피한 경우를 천재지변, 매장문화재 조사의 경우로 정함
- 생활체육시설 심의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생활 SOC 설치절차 간소화(19.10월)
-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상당'의 이전·설치 허용(19.10월)
-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정비(19.10월)
 - 이축 및 이주단지의 조성에 적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에서 발생 하는 혼란 해소

2. 개발제한구역 주요 정책

1

지정 및 해제

- ☐ GB 해제는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집단취락, 소규모 단절토지(3만㎡미만), 경계선 관통대지(1천㎡이하)의 경우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 가능(GB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GB 해제지침은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관련된 해제요건으로 ①해제 총량, ②사업의 공익성, ③공영개발, ④환경평가등급 등을 제시
- ☐ (해제 총량) 1·2차 제도개선('99년, '08년)에 따라 권역별 광역도시계획에 지자체별 GB 해제총량을 설정(지침 2-1)
- ☐ (사업의 공익성) 공공주택건설, 사회복지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GB해제 추진(지침 3-4-1)
- ☐ (공영 개발) GB는 해제 후 우려되는 난개발 방지 및 지가 상승으로 인한 우발이익 환수를 위해 공영개발이 원칙, 민간은 SPC에 일부 출자(2/3미만)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허용(지침 3-5-1(1))
- ☐ (환경평가등급) GB 해제는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 선정이 원칙(지침 3-2-1(2))
 - * GB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전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99년에 GB를 1~5등급으로 분류, 현재 업데이트 중
- ☐ (해제기준 면적) 난개발 방지·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20만㎡ 이상의 규모가 원칙(지침 3-2-1(3))
 - 다만, 기존 시가지 등과 결합하여 개발하거나 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시가지 인접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등은 20만㎡미만도 가능
- ☐ (공원·녹지 확보) 친환경적 개발 유도를 위해 사업 성격(주택단지: 20%이상, 기타 목적: 15%이상)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 의무(지침 3-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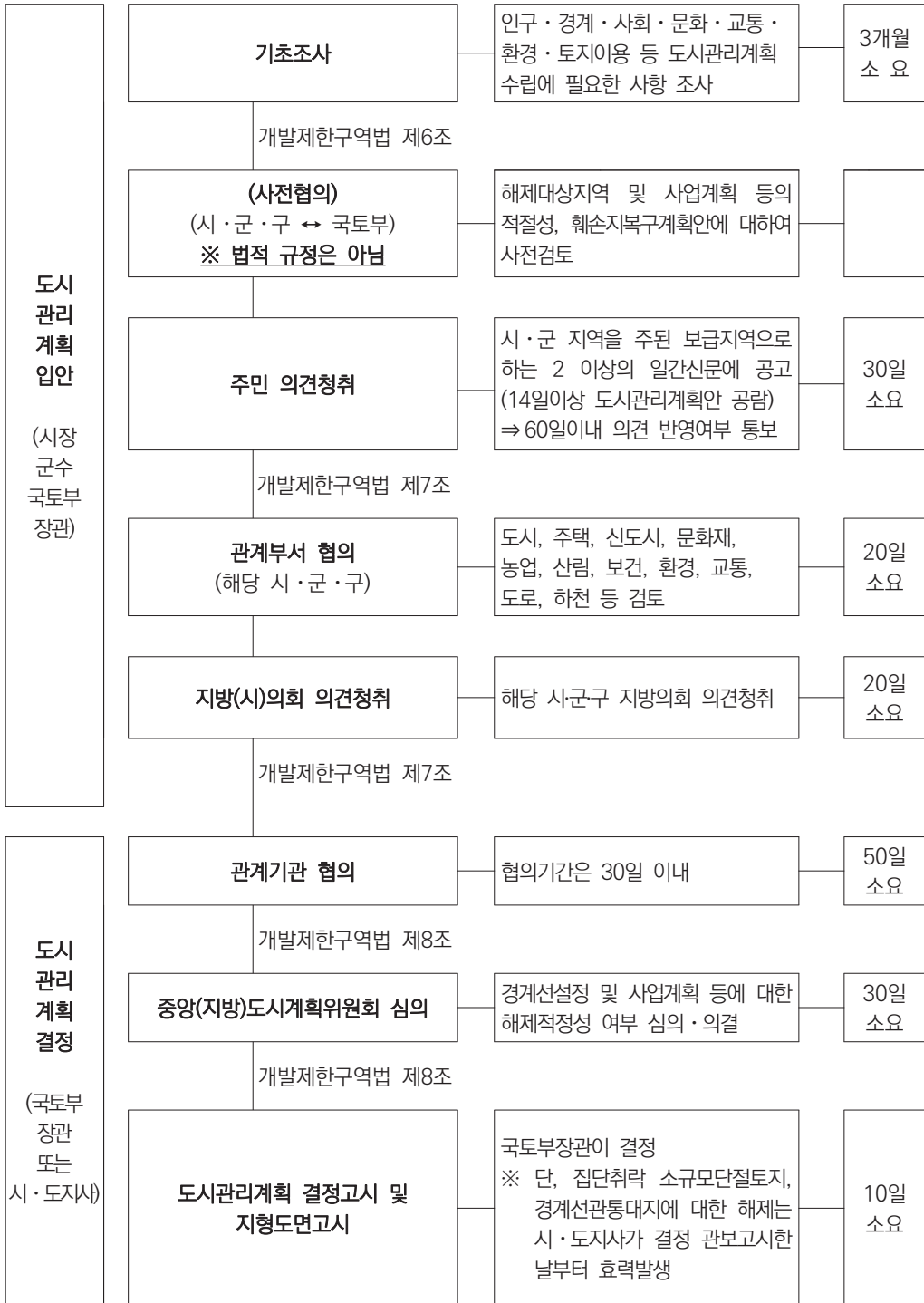
- (임대주택 건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시 임대주택 건설비율(35%) 확보 의무화(지침 3-5-1-(3))
 - 다만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최초 공급공고일 이후 6개월 간 매각되지 않을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 가능
- (중소기업 전용용지 확보) GB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 조성시 GB 내 중소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전용단지 조성을 의무화(지침 3-5-1(5))

《 권역별 GB 지정·해제 현황 및 해제총량 》

(‘19.12월말기준, 단위 : km²)

구 분	당초지정 (‘70년대)	해제면적 (‘00~‘19.12)	현재 지정 (‘19.12)
계	5,397.11	1,559.840	3,837.270
대도시권	4,294.02	456.750	3,837.270
수도권	1,566.80	163.974	1,402.826
서울	167.92	17.675	150.245
인천	96.80	9.007	87.793
경기	1,302.08	137.293	1,164.787
부산권	597.09	183.759	413.331
부산	424.60	173.108	251.492
경남	172.49	10.651	161.839
대구권	536.50	20.561	515.939
광주권	554.73	39.729	515.001
대전권	441.10	16.757	424.343
울산권	283.60	14.421	269.179
창원권	314.20	17.549	296.651
중소도시권	1,103.09	1,103.09	

《 GB 지정 및 해제 절차 》



《 GB 내 취락지구 및 해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

구분	GB 취락지구	GB해제 취락지구
해당법령	개발제한구역법 제15조, 시행령 25조, 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5조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해제지침 3-3-3
주택호수	10호 이상(호수밀도 : 10호 이상 / 1만㎡)	<u>20호 이상(호수밀도 : 10~20호 이상 / 1만㎡) 선</u> <u>올리는 100호 이상</u>
주택호수 산정기준	① GB지정 당시부터 ‘대’인 토지와 GB 지정 당시부터 GB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 1호로 산정 ② GB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垞)’인 토지로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 중 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분할이 가능한 필지 수만큼 주택 1호로 산정 ③ GB 지정 당시부터 GB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동거하는 기혼자녀를 분가 시키기 위하여 건축한 다세대주택은 다 합쳐서 주택 1호로 산정, 그 밖의 공동주택은 1가구를 주택 1호로 산정 ④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주택 1호로 산정	①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기준일(주민공람 공고일)당시 GB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 ② GB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垞)’인 토지로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 및 주택 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이던 토지는 주택 1호로 산정 ③ GB 지정 당시부터 있던 다세대주택은 주택 1호로, 공동주택은 가구당 1호로, 무허가주택은 건물동수에 관계없이 주된 건축물만을 주택 1호로 산정 ④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주택 1호로 산정
취락지구 지정 가능면적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호) ÷ 호수밀도(5~10호/1만㎡) + 경계선의 정형화를 위하여 기본면적의 30% 범위에서 <u>가산하는 면적</u> +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호) ÷ 호수밀도(10~20호/1만㎡) + 대규모 나대지 등의 1천㎡ 초과부분의 면적 +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2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 **(개요)**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보전·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5년 단위로 7대권역별 관리계획 제도를 운영
- **(수립권자)**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포함하는 경우 공동으로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
 - **(계획내용)** 관리목표·기본방향, 토지이용·보전, 시설물 설치계획(도시계획 시설, 건축 3천㎡이상, 형질변경 1만㎡이상), 주민지원사업, 불법행위 단속 계획 등 구역관리 전반에 대한 계획
 - **(수립절차)** ①시·군·구청장 신청→②시·도의 시설조정 및 입안→③국토부 사전협의→④주민의견 수렴 및 지도위 심의→⑤관리계획 승인신청→⑥중앙부처 협의→⑦중도위 심의→⑧장관 승인
 - **(입지시설)** 도로 등 공공시설, 공원·체육시설 등 여가시설, 국방시설 등
- **주요 내용**
-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등

《관리계획수립 대상 시설》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토지형질변경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시설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경우 관리계획 제외

○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

- 건축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토지형질변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 **(관리계획 추진현황)** 1차('02-'06), 2차('07-'11), 3차 관리계획('12-'16)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였고, 현재 4차 관리계획('17-'21) 수립준비 중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세부절차》

수 립 절 차	기 관	주요내용
①기초조사	시·군·구	시·군·구 초안 작성
②관리계획 시·군·구(안) 마련	시·군·구→시·도	초안 검토·수정
③의견조회	시·도→시·군·구	의견 조회 준비
④주민의견청취	시·군·구	의견수렴
⑤관리계획(안) 작성	시·도	주민의견을 포함하여 작성
⑥관리계획 사전협의	시·도→국토부	관리계획 사전검토
⑦관계기관협의	시·도→지방관서	지방행정관서에 의견조회
⑧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	입지타당성 등 심의
⑨관리계획 승인신청	시·도→국토부	관리계획(안) 승인신청
⑩입지시설 등에 대한 검토·조사	국토부	입지타당성 등에 대한 조사
⑪관계부처 협의	국토부	중앙행정기관 의견조회
⑫조치의견제출	시·도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⑬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입지타당성 등 심의·의결
⑭승인	국토부	관리계획 승인
⑮공고	시·도	승인내용 공고

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가능한 시설물

□ 개발제한제한구역내 허용 행위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 등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허가를 받는 경우 다음 일부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
 - 구역 관리에 도움이 되거나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

〈 허용 시설 〉

- ①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등 시설 설치가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
- ② 도로, 철도 등 **선형(線形)**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 통과가 불가피한 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 ③ 공항, 항만 등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④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 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 공장, 판매시설 등 GB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시설(기존 시설 증축은 가능), GB내 입지가 많았던 정부 공공청사('09년부터 입지 제한), 무분별한 입지와 용도변경이 우려되는 민간 소유 시설, GB외 일반지역에 확보 가능한 시설 등은 제외

-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 이축**을 위한 행위
-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등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의 벌채 및 토지의 분할, 모래 등 물건의 적치
-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또는 토지형질 변경** 행위

□ 개발제한구역 세부 허용 시설

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공공공지·녹지, 하천·운하, 등산로·산책로, 실외체육시설(축구장 등), 소규모 실내체육시설(800m² 이하), 골프장, 휴양림·산림욕장, 청소년수련시설,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 홍보시설, 수목장림, 방제시설 등

②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 철도, 궤도, 도로, 관개 및 발전용수로, 상·하수도, 공동구, 전기공급설비, 전기통신·방송시설, 송유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버스차고, 가스공급시설 등

③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 공항, 항만, 주차장, 학교, 지역공공시설*, 국가의 안전·보안업무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기상시설, 장사관련시설, 환경오염방지 시설,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동물보호시설, 문화재 관리 시설, 경찰훈련 시설, 택시차고지, 전세버스·화물차고지 등

* 보건소, 노인용양시설, 경찰파출소, 도서관(1,000m² 이하) 등

④ 국방·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교정시설, 대통령 경호훈련장 등

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의 및 생업을 위한 시설

- 동식물 관련 시설¹⁾(축사 등),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²⁾(창고, 지역 특산물가공판매장 등), 주택(300m² 이하), 근린생활시설³⁾(300m² 이하), 주민 공동이용시설⁴⁾(공동구판장 등), 공중화장실, 야영장 등

1) 축사(1,000m² 이하), 잠실,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300m² 이하), 작물재배사(500m² 이하), 온실, 퇴비사(300m² 이하) 등

2) 창고, 지역특산물가공판매장(300m², 마을공동은 1,000m² 이하), 관리용건축물 등

3)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세탁소, 의원, 탁구장, 당구장, 사진관, 목공소 등

4) 마을진입로, 주차장, 공동작업장, 복지회관, 공동구판장(1,000m² 이하), 간이급수용 양수장, 미곡종합처리장(2,000m² 이하), 농어촌체험마을시설(2,000m² 이하) 등

4.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구역의 보전 및 관리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징수(시·군·구에 위임)

- (대 상) ①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는 자,
②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훼손지를 복구하지 않는 자
- (용 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공원화사업, 인공조림 및 구역관리에 한하여 사용토록 제한(법 제26조)

《 보전부담금 징수현황 》

(단위 : 억원)

합계	2009 이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2,257	11,868	1,214	1,594	1,847	2,373	1,470	1,056	1,173

○ (산정방법)

- ①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훼손지를 복구하지 않는 자

당해 지역 개별공시지가가 평균치의 100분의 15 × 개발대상 토지면적(바다, 하천, 면적은 제외)

- ②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는 자

토지형질변경면적 및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

지가차액
(구역외 지목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부과율

※ 행위내용별 부과율

-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시설 : 면제
- 공원 등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 : 형질변경(면제), 건축물 바닥면적 2배(100%)
- 도로 등 공공용시설 : 형질변경(20%), 건축물 바닥면적 2배(100%)
- 공항 항만 및 지역 공공시설 등 : 형질변경에 대해서만 부과 (130%)
- 국방군사시설 : 형질변경 (10%) 건축물 바닥면적 2배 (70%)

5.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 도시환경보전 측면에서 **녹지축(綠地軸)** 유지가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여 국가가 관리 (LH 공사에 업무 위탁)

○ (재 원) 개발제한구역의 개발행위 등에 따른 부과·징수한 **보전부담금***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 시 개발행위자에게 부과

○ (현 황) '04년부터 '19년까지 총 7,580억원 1,856필지(27.7km²) 매입

《 연도별 토지매수 현황 》

연도	계	'10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필지	1,856	1,011	92	96	66	94	86	90	144	99	78
면적(천 m ²)	27,711	18,375	1,127	1,230	439	1,178	939	1,018	895	1,350	1,160
금액(억원)	7,580	3,361	398	298	302	571	484	510	597	547	512

○ (활 용) 매수한 토지는 **여가공간 조성, 도시농업, 산림경영대행, 공공사업 편입** 등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유지·관리

○ (원 칙) 우선 및 일반매수 대상 토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매수**

- 매수대상토지로 선정되었으나 당해 연도 예산부족으로 매수하지 못한 토지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매수

- 토지매수의 보전 및 관리가 곤란하거나 매입이 부적정한 토지는 매수대상에서 제외

○ (절차) 매수대상 토지는 **매수심의위원회를 거쳐 매수결정**하며, 감정평가, 매수협의 등을 거쳐 소유권이전 후 대금지급

○ (가격결정) 매입가격은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

6.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 생활편익사업 등('20년 610억원)

- ☐ (도입배경)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에 의해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지원사업 지원
- ☐ (추진체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하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70%~90%) 지원
- ☐ (지원유형) 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 및 연구·조사사업은 간접지원방식이고, 생활비용보조사업('09년 도입)은 현금을 직접지원

《 주민지원사업 내역 》

구 분	세 부 내 용
생활편익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구거 등
복지증진	마을회관, 어린이집·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소득증대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연구·조사	해제지역의 계획적 정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
생활비용보조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을 세대당 60만원 현금 지원

- ☐ (지원기준) 구역 면적, 부담금 징수실적 등을 평가하여 시·도별로 지원
- ☐ (성 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의 생활기반시설에 20년간 총 1조2,768억원을 투입하여 생활환경을 개선

(2) 환경문화사업('20년 271억원)

- ☐ (도입배경)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공간에 환경·문화* 사업을 추진하여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고 증가하는 여가수요에 대응
 - *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전통문화)
- ☐ (추진체계) 사업공모(14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를 받아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사업 선정
- ☐ (지원기준) 선정된 사업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국비 차등(70%~90%) 지원

- (성 과) 소득증대 등으로 증가하는 여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다양한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 유형별로는 누리길 873억원(36.3%), 여가녹지 837억원(34.8%), 경관 624억원(25.9%), 생활공원 71억원(3.0%)을 지원하여 여가공간 조성

(단위 : 억원)

구분		계		2001-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전수 금액	
		3,679 12,768		2,676 8,648		157 719		244 824		213 837		200 859		189 881	
생활 편의	소계	3,028 9,575		2,298 7,055		101 400		184 479		161 542		144 559		140 540	
	도로	1,476 5,499		1,188 4,200		43 197		53 223		67 286		75 341		50 252	
	상하수도	79 150		72 133		1 1		2 5		1 6		1 1		2 4	
	하천및교량	329 837		249 571		14 50		15 44		18 67		17 57		16 48	
	농배수로	665 1,000		533 760		32 66		40 69		29 63		9 14		22 28	
	공원·녹지	79 625		54 419		4 42		10 59		2 19		3 32		6 54	
	노후주택개량	73 12		- -		- -		36 6		14 2		13 2		10 2	
	LPG 소형탱크	48 94		- -		- -		21 34		12 19		8 26		7 15	
	기타	279 1,358		202 972		7 44		7 39		18 80		18 86		27 137	
복지 증진	소계	106 318		88 245		5 23		3 14		4 16		5 19		1 1	
	마을회관	86 253		72 193		4 20		2 6		4 16		3 17		1 1	
	어린이놀이터	20 65		16 52		1 3		1 8		- -		2 2		- -	
소득 증대	소계	71 219		50 149		5 16		3 14		4 11		5 13		4 16	
	공동작업장	61 171		41 105		4 12		3 14		4 11		5 13		4 16	
	자연생태마을	10 48		9 44		1 4		- -		- -		- -		- -	
환경 문화	소계	407 2,405		211 1,110		43 276		40 268		43 265		34 215		36 271	
	여가녹지	126 837		60 344		9 87		12 100		19 129		13 82		13 95	
	누리길	162 873		86 424		20 99		19 115		11 59		11 75		15 101	
	경관	105 624		51 271		14 90		9 53		13 77		10 58		8 75	
	전통문화	14 71		14 71		- -		- -		- -		- -			
연구조사		6 12		4 11		2 1		- -		- -		- -		- -	
생활공원		51 195		20 50		- -		13 45		- -		11 50		7 50	
생활비용		10 44 (7,172)		5 28 (5,272)		1 3 (529)		1 4 (516)		1 3 (431)		1 3 (424)		1 3	

* 생활비용보조는 연도별 1건으로 집계

7.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 사업 개념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물류창고 밀집지역이 확산에 따라 '17년까지 한시적으로 훼손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

* 훼손지 : '16.3.30 이전에 설치된 축사, 동식물 관련 시설로서 건물이 해당 지번 토지면적의 20%(건폐율 20%) 이상인 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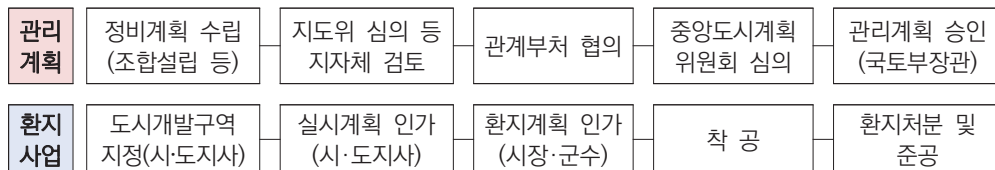
□ 훼손지 복구사업 개요

- (사업구역 선정기준) 최소 정비사업구역 면적은 **훼손지 1만㎡ 이상**
 -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훼손지가 아닌 토지를 구역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포함 가능하고, 흩어져 있는 훼손지도 사업구역에 포함 가능
- (사업 시행방법) GB 관리계획 수립 후 「도시개발법」의 환지방식 등을 활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 위탁·대행 가능
- (시설 설치) 창고, 도시공원 및 녹지, 기존 건축물(주택, 근생 등)
 - 창고 규모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높이 8m 이하

□ 사업 추진 절차

- 조합 설립 → 정비계획 수립 → 시·군·구에 신청 →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관계부처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관리계획 승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 실시계획 인가 → 착공 → 준공 → 환지처분 → 사업완료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 절차》



8. 도시공원·녹지 종류 및 현황

□ 목적

- 도시공원 :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
- 녹지 :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도시공원·녹지의 종류

- 도시공원은 그 기능과 주제에 따라 세분
 -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
 - 소공원 : 소규모의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묘지공원 :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도시농업공원** :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공원

○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세분

- **완충녹지** :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 도시공원·녹지·도시자연공원구역 현황 ('18.12.31 기준)

○ 개 요

(단위 : km², 천명, %, m²/인)

도시지역		공원면적			공원 결정율 (C/A)	1인당 공원면적	
면적(A)	인구(B)	결정(C)	조성(D)	조성률 (D/C)		결정 (C/B)	조성 (D/B)
17,788	47,596	926	480	51.8%	5.2%	19.5	10.1

(단위 : km², 천명, %, m²/인)

도시지역		녹지면적			녹지 결정율 (C/A)	1인당 녹지면적	
면적(A)	인구(B)	결정(C)	조성(D)	조성률 (D/C)		결정 (C/B)	조성 (D/B)
17,788	47,596	221	168	75.8%	1.2%	4.6	3.5

(단위 : km²)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도시자연공원구역	280.5	-	-	42.7	24.7	-	17.5	6.8	-
도시자연공원	135.2	88.0	7.6	-	0.6	-	8.5	-	-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시자연공원구역	27.0	5.9	44.6	20.8	1.0	42.0	2.2	45.3	-
도시자연공원	8.1	3.8	0.7	2.4	-	8.5	7.0	-	-

○ 국내 주요도시

(단위 : km²,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공원결정 개소	2,147	1,006	784	1,173	633	574	582
도시지역면적(A)	606	941	798	580	480	496	756
공원조성면적(B)	80	23	12	33	10	18	11
공원조성율(B/A)	13.2	2.4	1.5	5.7	2.1	3.6	1.5

○ 주요도시별 1인당 도시공원면적

(단위 : 천명, km², m²/인)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도시지역 인구	47,596	9,765	3,441	2,456	2,887	1,459	1,484	1,153
공원 조성 면적	480	80	23	12	33	10	18	11
1인당 공원면적	10.1	8.2	6.7	4.9	11.4	6.9	12.1	9.5

9. 도시공원·녹지 제도 및 정책

1

결정·지정 및 해제

- ☐ **(용어의 정의)** 도시공원·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같은 법에 따른 용도구역
- ☐ **(결정 및 해제)**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지정

2

공원녹지기본계획

- ☐ **(개요)** 10년을 단위로 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
 -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의 시장
 - **(수립절차)** ①기초조사→②주민·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공원위원회 자문→③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④수립, 공고·열람
- ☐ **(계획의 효력)**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함
- ☐ **(계획의 정비)**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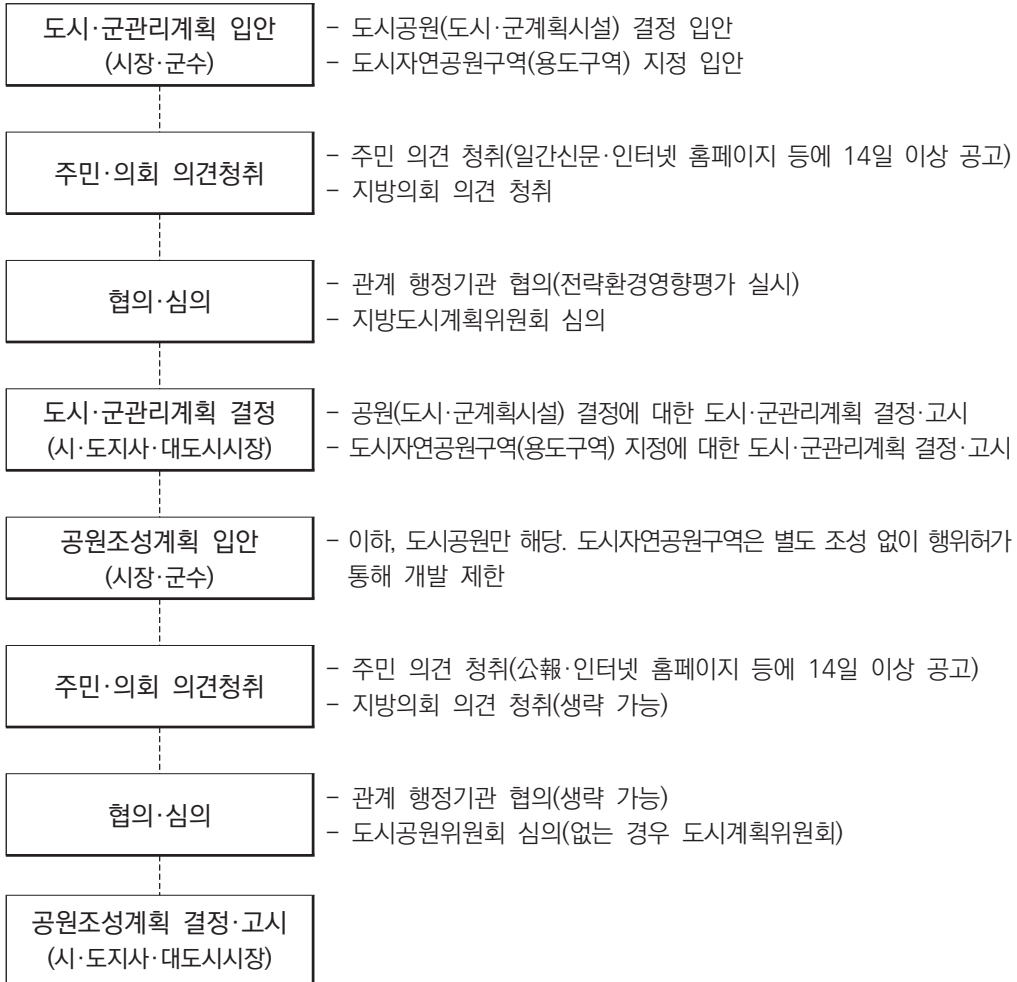
3

공원조성계획

- ☐ **(개요)** 도시공원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 공원조성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수립·입안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결정권자)**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 **(수립절차)**



□ **(계획의 효력)** 도시공원 결정 후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 실효

□ **(계획의 정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

《 도시공원 유형별 세부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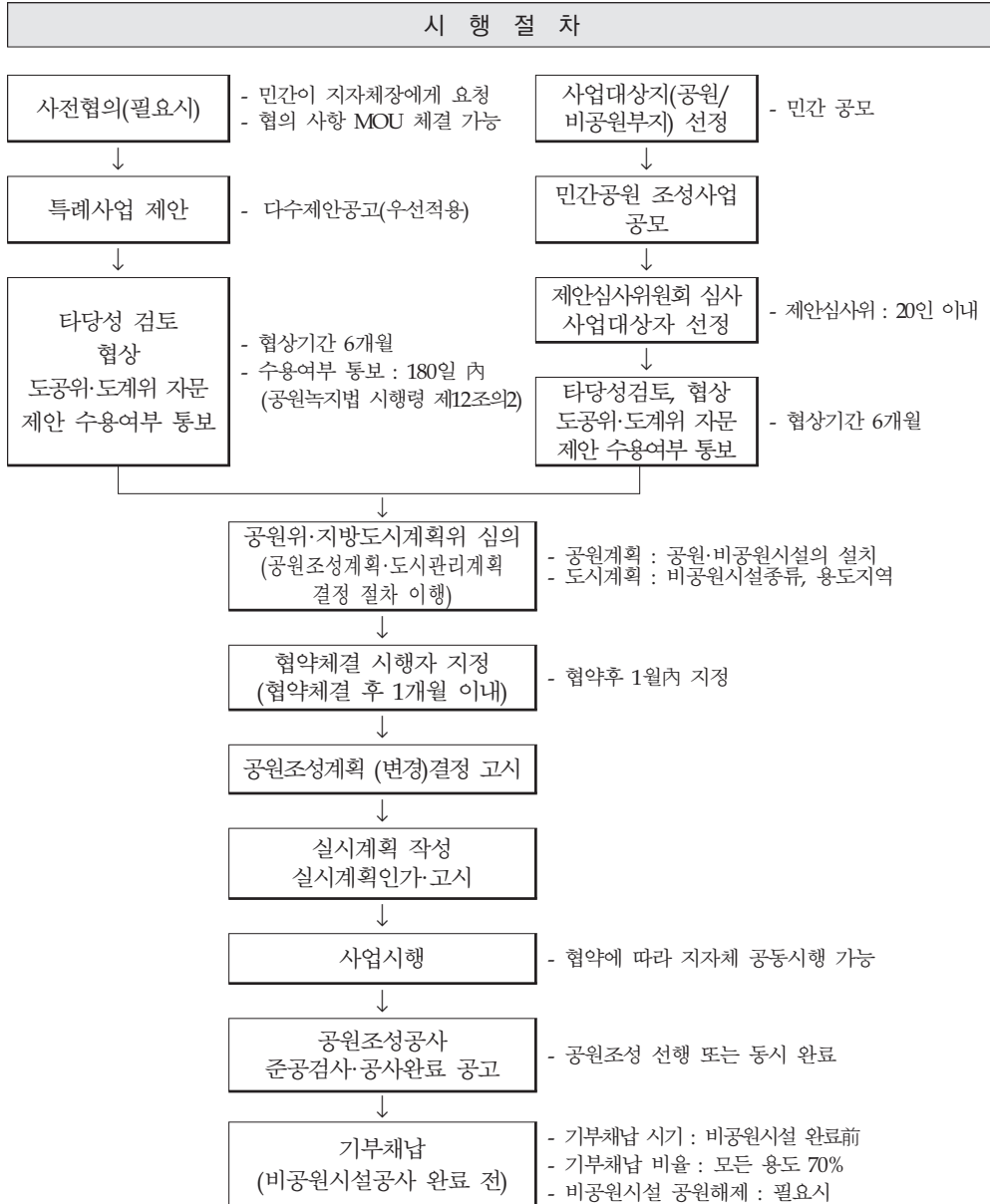
구 분 (설치목적)	규 모	공원시설 부지면적	어린이집 등을 합한 면적	공원시설의 건폐율
소공원 (소규모 토지 이용 휴식·정서함양)	제한없음	20%이하	제한없음	5%이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정서생활 향상)	1천5백㎡ 이상	60%이하	제한없음	5%이하
근린공원 (근린거주자의 휴양·정서함양)	1만㎡ 이상	40%이하	8%이하	3만㎡ 미만 : 20% 3만~10만㎡ : 15% 10만㎡ 이상 : 10%
역사공원 (역사장소 활용 휴식·교육)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20%이하
문화공원 (문화특징 활용 휴식·교육)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20%이하
수변공원 (수변공간 활용 여가·휴식)	제한없음	40%이하	제한없음	20%이하
묘지공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제공)	10만㎡ 이상	20%이상	제한없음	2%이하
체육공원 (체육활동 통한 신체·정신배양)	1만㎡ 이상	50%이하	제한없음	3만㎡ 미만 : 20% 3만~10만㎡ : 15% 10만㎡ 이상 : 10%
도시농업공원 (체육활동 통한 정서순화)	1만㎡ 이상	40%이하	제한없음	20%이하
조례로 정하는 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20%이하

4

민간공원

- (개 요)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이나 민간에서 설치하여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으므로, 민간에서 공원을 통한 수익 창출 가능
- (민간공원 추진)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음

- (민간공원 추진절차) ①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②실시계획의 인가→③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설치·관리
- (특례사업) 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 설치 후 공원에서 해제 가능
- (특례사업 추진절차)



5

생활공원 정비

- (개 요)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이용 활성화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해 '14년부터 추진 중
- (추진실적)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생활공원 51개소 대상지를 선정하여 195억원 지원

시도	개소 금액 (억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51 (195)	8	1	3	8	3	4	5	6	1	1	5	1	5
'14년 선정	20 (50)	2	1	2	3	1	-	2	4	1	1	2	-	1
'16년 선정	13 (45)	3	-	-	3	1	2	1	1	-	-	-	1	1
'18년 선정	11 (50)	2	-	1	2	-	1	2	-	-	-	1	-	2
'19년 선정	7 (50)	1	-	-	-	1	1	-	1	-	-	2	-	1

- (추진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에 일부분 기여코자 우선적으로 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10개소 내외, 시설비 50억원 지원)

2020 도시업무편람



V

Chapter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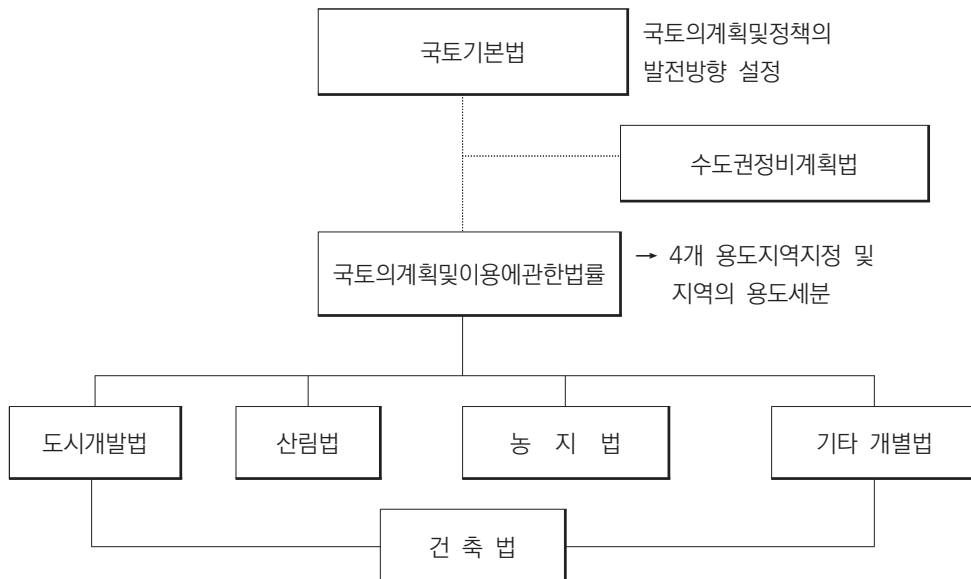
1. 국토공간 계획체계 283
2. 개별법상의 토지이용계획 · 284
3.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행위제한 286

1. 국토공간 계획체계

1) 공간계획 체계도



2) 국토이용관련법률 체계도



2. 개별법상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법률명	지역 · 지구 · 구역		
		기본구분	세구분	주된기능
지 역	제주도개발특별법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환경보전
군 사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군사목적
		대공방어협조구역		
	군용항공기지법	비행안전구역	제1~6구역	
		기지보호구역		
	해군기지법	해군기지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방어해면법	방어해면		
농 립 수 산	군용전기통신법	특별보호구역		용도규제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산림법	보전임지	생산임지 공익임지	
공업 및 에너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입지규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공장입지금지지역		
	전기사업법	물밀선로보호구역		시설관리
	원자력법	제한구역		
교통 통신	도로법	도로구역 접도구역		시설관리
	고속국도법	접도구역		
	철도법	철도선로인접지역		
	항공법	진입구역		
	항만법	항만구역 임항구역		
	어항법	어항구역		
	전기통신사업법	수저선로보호구역		

구 분	법률명	지역 · 지구 · 구역		
		기본구분	세구분	주된기능
자연환경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식물생태계보전지역 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특별보호구역	환경보전
		시·도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완충지역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자연공원법	공원구역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공원보호구역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팔당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수변구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조수보호구	특별보호지구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특정도서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호소수질관리법	호소수질보전구역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규제지역		
	해양오염방지법	특별관리해역		
	폐기물관리법	폐기물매립지		
하천관리	하천법	하천구역 연안구역		환경보전및 시설관리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교육문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		특수목적
	전통사찰보호법	전통사찰보존구역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재해기타	건축법	재해위험구역		특수목적
	소방법	화재경계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위험지구 경계구역		
	재난관리법	특별재난지역 경계구역		

3.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행위제한

1) 수도권정비의 개요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 도모

→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차등 규제 시행

-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 적용

〈수도권정비권역 현황〉

(2016.12.31 현재)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1,851km ² (11.8% / 100%)	2,093km ² (17.7%)	5,928km ² (50.0%)	3,831km ² (32.3%)
25,590천명 (49.5% / 100%)	19,171천명 (74.9%)	5,266천명 (20.6%)	1,153천명 (4.5%)
행 정 구 역	서울,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인천·남양주·시흥(일부) (16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김포, 화성,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인천·남양주·시흥·용인·안성(일부) (14시, 1군)	이천, 광주, 가평, 양평, 여주, 남양주·용인·안성(일부) (6시, 2군)
지 정 목 적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전
지 정 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의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과밀억제 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인구는 '16.12.3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며, 외국인인 제외

2) 권역별 행위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대 학	4년제 대학 · 교육대학	신설 : 금지 이전 : 심의후 권역내 가능 * 서울안으로 이전은 금지	신설 : 금지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 에서의 이전은 가능	신설 : 금지 이전 : 금지
	소규모 대학	신설 : 금지 이전 : 심의후 가능 * 서울안으로 이전은 금지	신설 : 심의후 가능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 에서의 이전은 가능	신설 : 심의후 가능 이전 : 권역내 가능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신설 : 가능(대학원대학 이외 경우 서울은 금지) 이전 : 가능 * 서울안으로 이전은 금지	신설 : 가능 이전 : 권역내,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신설 : 심의후 가능 이전 : 권역내 가능 (산업대학 신설·이전불가)
대형건축물 (판매 15천㎡, 업무등 25천㎡)		- 과밀부담금 부과 (서울시에 한함. 단, 금융중심 지내 금융업소, 산업단지내 R&D시설은 면제)	- 규제 없음	- 금지 (단, 오염총량제 시행 지역은 허용)
공공청사(1천㎡)		- 신축, 증축 용도변경 : 심의 * 비수도권 법인의 수도권 이전을 위한 신축은 금지	- 신축, 증축 용도변경 : 심의 * 비수도권 법인의 수도권 이전을 위한 신축은 금지	- 신축, 증축 용도변경 : 심의 * 비수도권 법인의 수도권 이전을 위한 신축은 금지
연수시설(3만㎡)		- 금지	- '94.4.30 이전 기존시설 증축 : 20%이내 허용 - 신축, 증축 심의후 허용	- 오충제시행지역에서 수도권 심의를 거쳐 신, 증축 허용 - '94.4.30이전 기존시설 면적의 10% 증축 허용
공 장		공장총량 규제 (3년 단위로 공장 총량을 설정·고시)		
공업지역 지정		- 위치변경만 허용	-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된 공업지역 허용	-
택지조성		- 100만㎡이상 심의후 허용	- 100만㎡이상 심의후 허용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 도시지역 : 10만㎡ 이상 심의 · 비도시지역 : 10만㎡~50만㎡ 심의후 허용 <오염총량제 미시행지역> · 3만~6만㎡이하 심의후 허용
도시/지역개발		- 100만㎡이상 심의후 허용	- 100만㎡이상 심의후 허용	〃
공업용지조성		- 30만㎡이상 심의후 허용	- 30만㎡이상 심의후 허용	- 3만~6만㎡이하 심의후 허용
관광지조성		- 10만㎡이상 심의후 허용	- 10만㎡이상 심의후 허용	- 3만~6만㎡이하 심의후 허용 (단,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은 3만㎡이상 심의후 허용)

3) 과밀억제권역내 행위제한(법 제7조, 영 제10조 및 제11조)

구 분		행 위 제 한
대학	4년제 대학 · 교육대학	- 신설 : 금지 - 이전 : 심의후 가능 (서울시안으로 이전은 금지)
	소규모 대학	- 신설 : 금지 - 이전 : 심의후 가능 (서울시안으로 이전은 금지)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 신설 : 가능(전문·산업대학은 서울시안 신설 금지) - 이전 : 가능 (서울시안으로 이전은 금지)
	(증 원)	- 총량규제 · 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 이내 소규모대학(첨단학과는 100인 이내)의 증원은 심의후 허용 ·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전국증가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 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형건축물(15,000 ~ 25,000㎡ 이상)		- 과밀부담금 부과(서울특별시 지역에 한함) · 지자체 출자 건축물, 벤처기업집적시설 제외
공장(연면적 500㎡ 이상)		- 총량으로 규제 (개별입지규제는 산업집적활성화에 의함)
공공청사 (연면적 1,000㎡ 이상)		- 신축 :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심의후 허용 - 증축·용도변경(매입·임차) :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후 허용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공공법인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는 심의 없이 신·증축, 용도 변경 가능 ** 서울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
연수시설 (연면적 30,000㎡ 이상)		- 금지
공업지역지정		- 기존면적 범위 내에서 위치변경만 심의 후 허용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 100만㎡, 공업용지 30만㎡, 관광지10만㎡ 이상은 심의후 허용
종전대지 규제		- 1만㎡ 이상(공업지역은 2만㎡ 이상)의 종전대지에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시 사전에 그 이용계획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

4) 성장관리권역내 행위제한(법 제8조, 영 제12조)

구 분		행 위 제 한
대학	4년제 대학 • 교육대학	- 신설 : 금지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소규모 대학	- 신설 : 심의후 가능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전문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 신설 : 가능 - 이전 : 권역내 또는 타권역에서의 이전은 가능
	(증 원)	- 총량규제 • 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이내 소규모대학(첨단학과는 100인이내)의 증원은 심의후 허용 •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전국증가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형건축물(15,000 ~ 25,000㎡이상)		- 규제 없음
공장(연면적 500㎡이상)		- 총량으로 규제(개별규제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함)
공공청사 (연면적 1,000㎡이상)		- 신축 :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심의후 허용 - 증축·용도변경(매입·임차) :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후 허용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공공법인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는 심의 없이 신·증축, 용도변경 가능
연수시설 (연면적 30,000㎡이상)		- 신축 : 심의후 허용 - 이전 : 동일규모로 성장관리권역내 및 타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이전은 심의없이 허용 - '94.4.30 이전 기존시설 증축 : 20%이내 허용
공업지역		-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30만㎡이상의 공업지역 지정은 심의후 허용
대규모개발사업		- 택지 100만㎡, 공업용지 30만㎡, 관광지10만㎡이상은 심의후 허용

5) 자연보전권역내 행위제한(법 제9조, 영 제13조, 제14조)

구 분		행 위 제 한
대학	4년제 대학 • 교육대학	- 신설 : 금지 - 이전 : 금지
	소규모 대학	- 신설 : 심의후 가능 - 이전 : 권역내 가능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 신설 : 심의후 가능 - 이전 : 권역내 가능
	(증 원)	- 총량규제 • 대학·교육대학 및 입학정원 50인 이내 소규모대학 (첨단학과는 100인 이내)의 증원은 심의후 허용 •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전국증가 10%이내 허용, 10%초과는 심의후 허용 •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전체에서 매년 300인 이내 허용(첨단분야 제외), 300인 초과는 심의후 허용
대형건축물 (15,000~25,000이상)		- 금지. 단,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은 허용
공장 (연면적 500㎡이상)		- 수도권 총량으로 규제(개별규제는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함)
공공청사 (연면적 1,000㎡이상)		- 신축 :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로서 심의후 허용 - 증축·용도변경(매입·임차) :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심의후 허용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및 공공법인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는 심의 없이 신·증축, 용도변경 가능
연수시설 (연면적 30,000㎡이상)		-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의 신·증축, 용도변경은 심의후 허용 - '94.4.30 이전 기존시설 증축 : 10%이내 허용
개발사업		- 공업용지조성사업 • 3만㎡미만은 허용, 6만㎡까지는 심의후 허용, 6만㎡초과는 금지 - 관광지조성사업 •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 3만㎡이상 심의후 허용, • 오염총량제 미시행지역 : 3만㎡미만은 허용, 6만㎡까지는 심의후 허용, 6만㎡초과는 금지 - 택지조성사업 • 오염총량제 시행지역 : 도시지역(녹지제외)은 10만㎡이상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사업시행시 심의후 허용,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업시행시 심의후 허용 • 오염총량제 미시행지역 : 3만㎡미만은 허용, 6만㎡까지는 심의후 허용, 6만㎡초과는 금지

2020 도시업무편람



VI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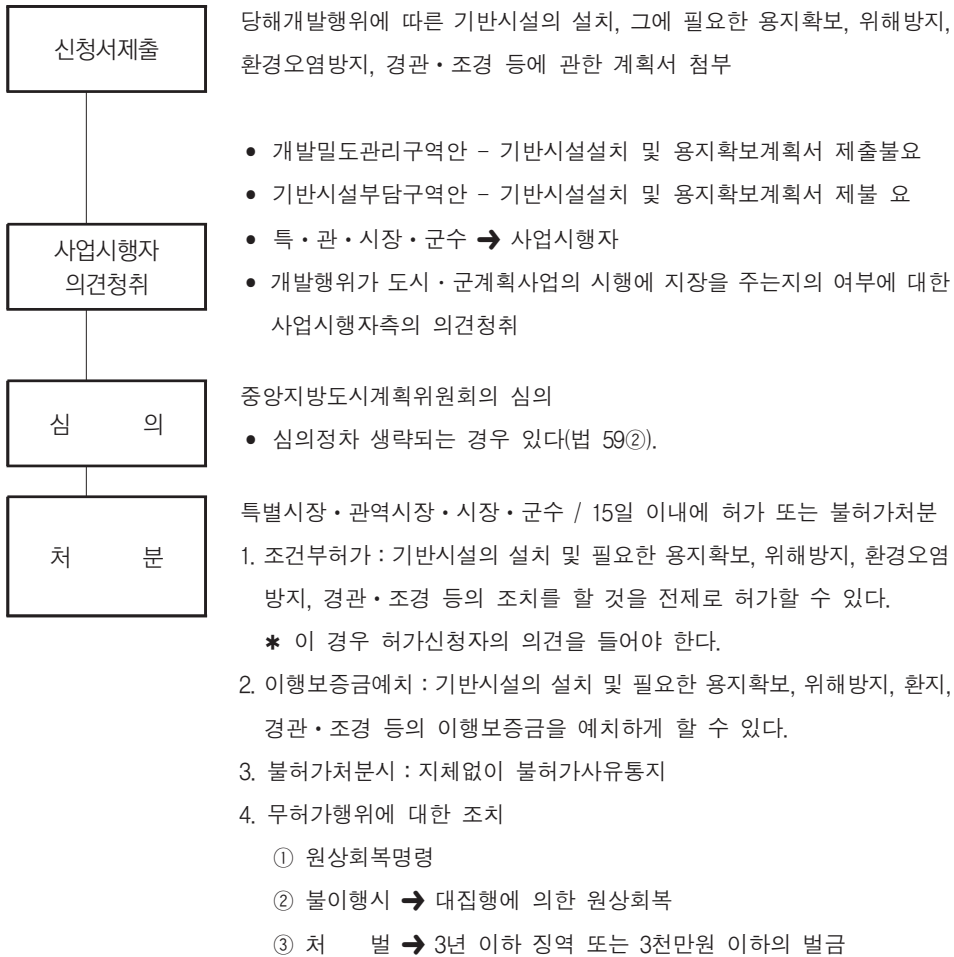
기타 참고자료

1. 기타 참고자료 293

1. 기타 참고자료

가. 개발행위 허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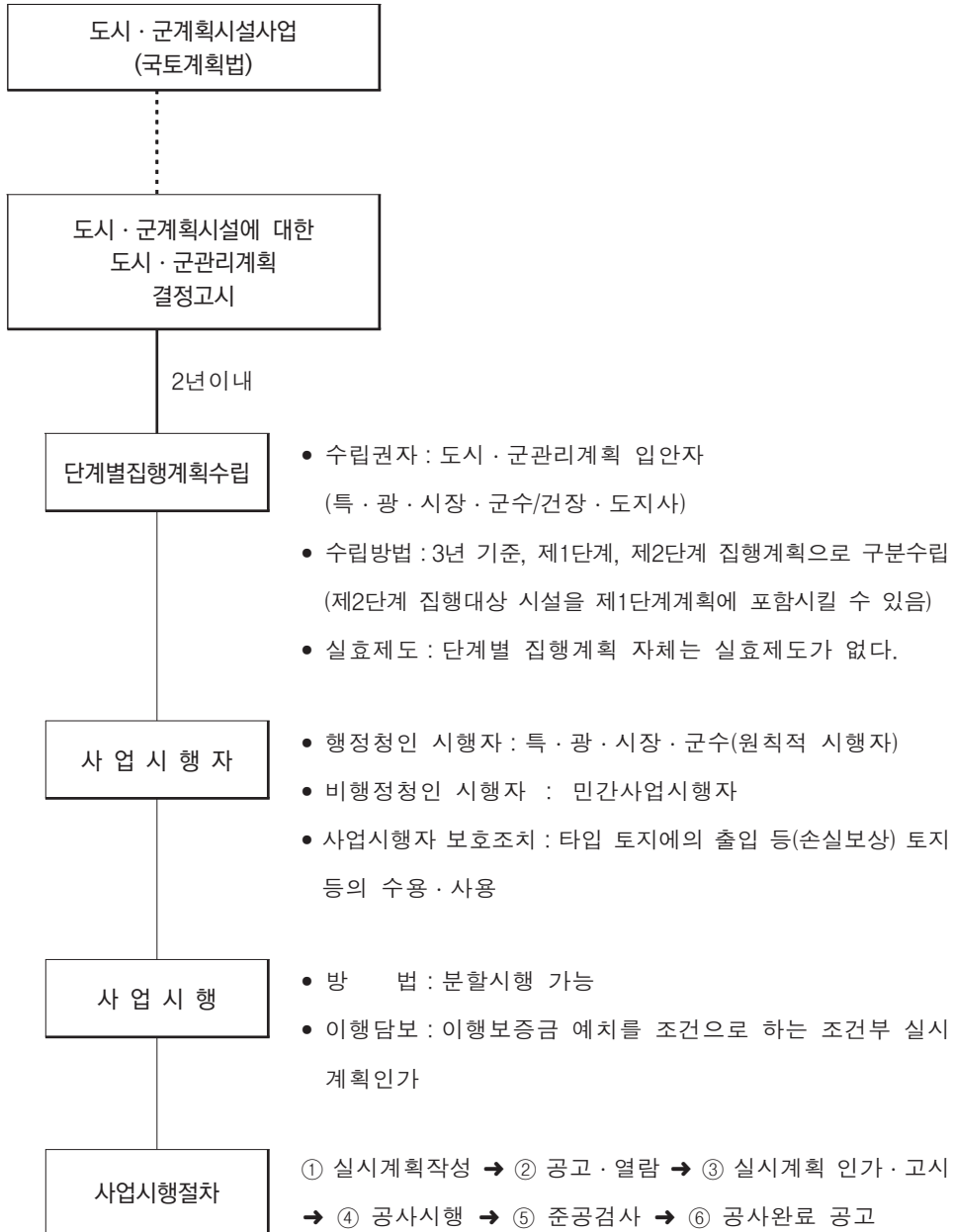
* 개발행위허가절차도



* 개발허가절차상 의견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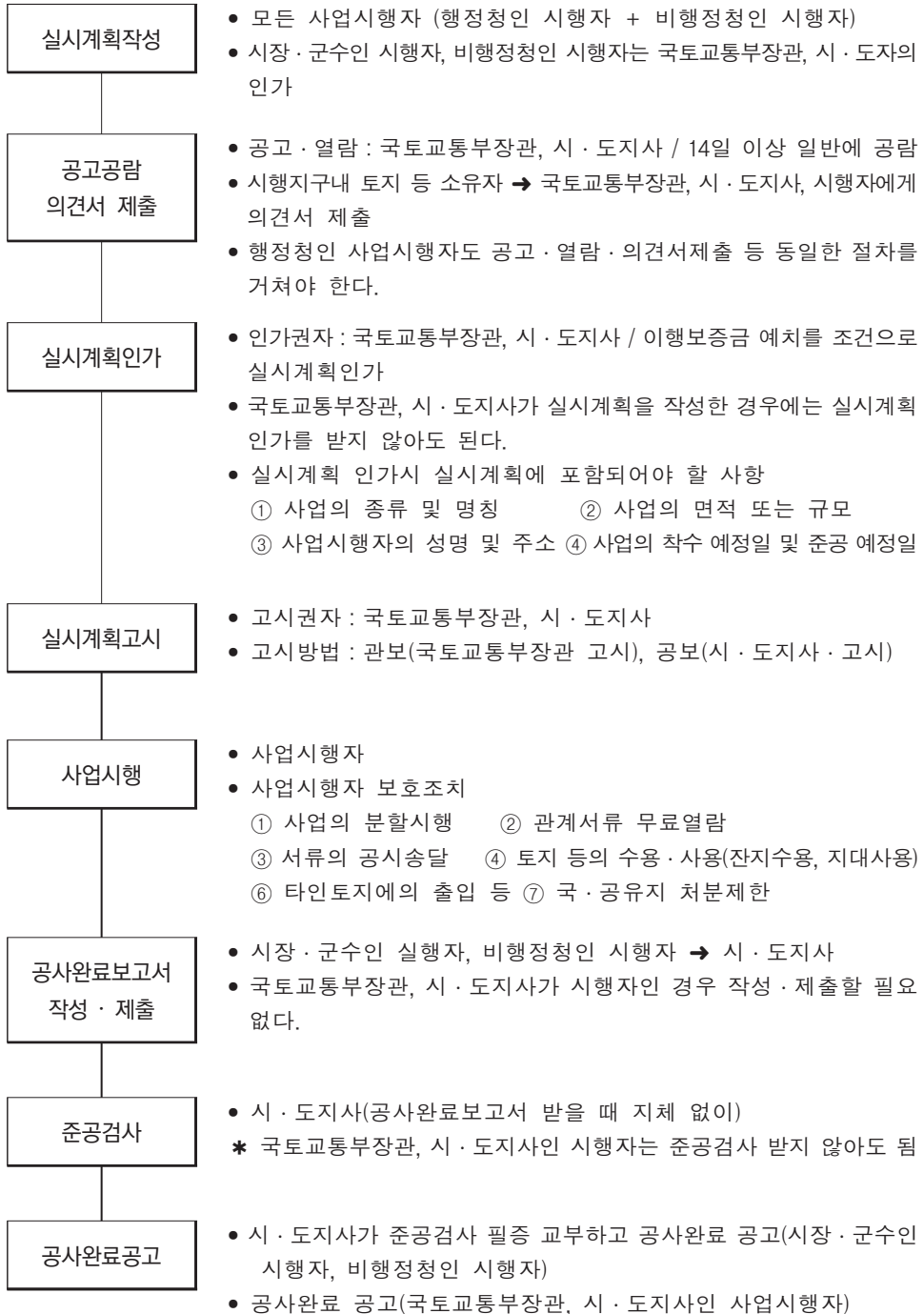
- 허가처분시 → 사업시행자의 의견청취
- 조건부허가처분시 → 개발행위 신청자의 의견청취

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진행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법 특례인정 : 사업인정고시특례, 재경신청기간의 특례

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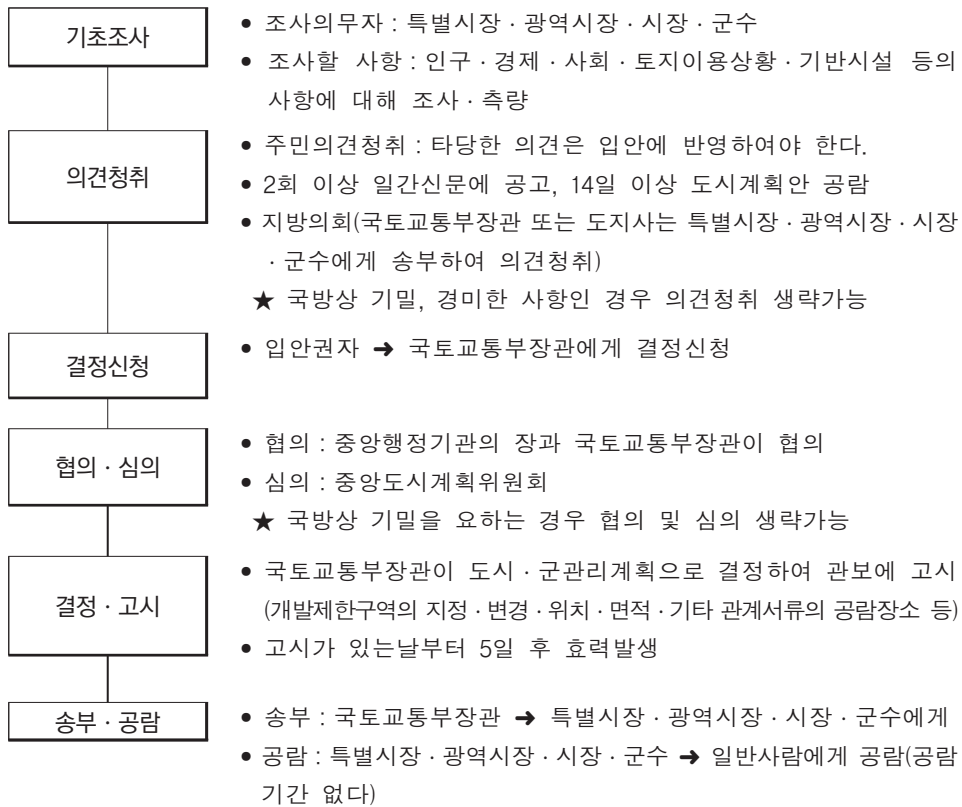
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 절차

○ 입안권자

- 원칙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예외 : ① 국토교통부장관(국가계획과 관련) ② 도지사(광역도시계획과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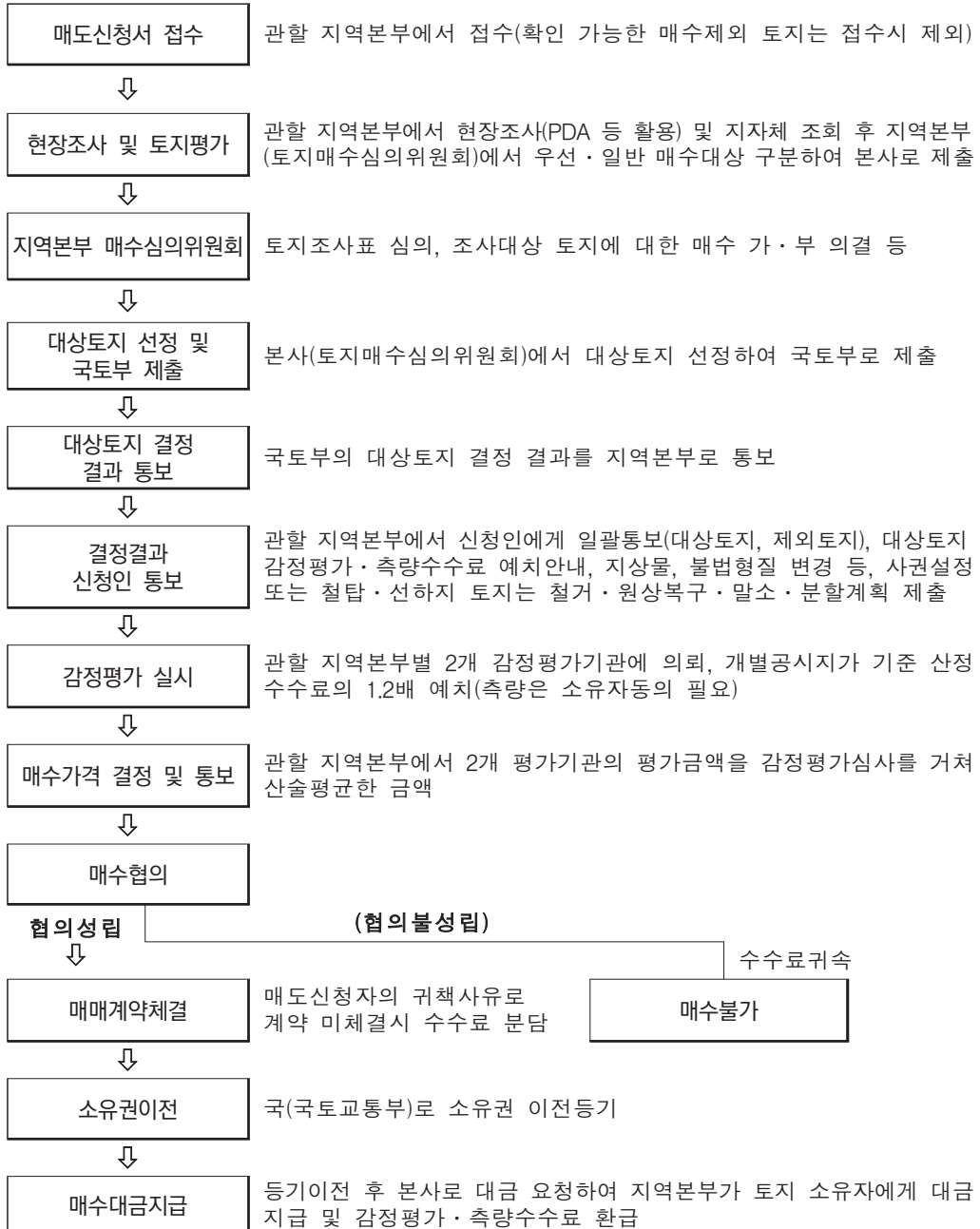
○ 입안·결정절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절차와 동일하다.



- * 입안결정절차상 특징
1. 공청회 및 승인절차가 필요 없다.
 2. 공람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
 3.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 국방상 기밀·경미한 사항인 경우 생략가능
 4. 협의·심의 :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 생략가능

마. 개발제한구역 토지 협의매수 절차(한국토지주택공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GB 토지매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시행

2020년 도시 업무 편람

2020년 7월 일 인쇄

2020년 7월 일 발행

발 행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편 찬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과

☎ (044) 201-3711